2005년 1월호(제103호)
ISSN 1226-2269 1

월 · 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

현안분석

-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 규모별 임금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 우리나라 소득세의 계층별 부담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소고
-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기획

최근 독일의 세제개편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국, 부시 "연금개혁 위한 세금인상 없다" 외

정책흐름

종합투자계획 추진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II편

KIP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월 · 간
1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이천오년 일월호

CONTENTS

권두칼럼	2	경제발전과 대학교육 / 권선주
현안분석	6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 김현숙
	35	규모별 임금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 김형준
	46	우리나라 소득세의 계층별 부담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소고 / 성명재
	66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 / 전병목
기획	82	최근 독일의 세제개편 / 김유찬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102	미국, 부시 "연금개혁 위한 세금인상 없다" 외
정책흐름	111	종합투자계획 추진
	125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확정
	126	'04년 3/4분기 말 현재 총대외채무 · 대외채권 현황(잠정)
	129	재정운용의 성과와 향후과제
	134	현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
재정통계	137	부가가치세 Ⅱ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48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

• 2005년 1월 15일 발행 • 제103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라 7859 •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 전화 (02)2186-2130~3 • 월간

경제발전과 대학교육

권선주 / 창원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우리 경제는 여러 해 동안 1만달러 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고, 실업률 걱정은커녕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반으로 낮아졌는데도 세수입은 넘쳐나고, 총선거를 앞둔 여당은 여유만만하기만 하다. 꿈이었다. 그러나 이 꿈은 실현될 수 있다. 대학교육이 바로 해답이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오늘날 세상을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술로 나누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15%는 기술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고, 50%는 이런 기술을 생산과 소비에 채택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는 자국 내에서 혁신을 할 수도 없으며 외국기술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 기술적으로 고립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집단 구분은 유동적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대만과 이스라엘과 같이 중간그룹에서 벗어나 상위그룹에 막 진입하였다. 이런 상승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경제발전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 문제였다. 한편, 후진국에서는 자본의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후진국이 선진국을 추격하여 경제성장의 수렴현상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다. 그러나 기술은 자본에 비해 그러한 수렴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은 최신의 기술을 가진 지역이 더 높은 혁신을 하는데 최적지역으로 일종의 규모의 경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 아이디어의 재결합으로부터 나오므로 혁신의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은 대학보다 주로 기업에서 기업가 정신에 의지하여 이루어졌다. 지난해 서울대의 연구비가 2,400억원인 데 비하여, 내년 삼성전자의 R&D 투자액이 9조원인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에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인력개발의 역할을 한다. 한 나라의 성공적 경제발전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유능한 인력이고 이는 기업 성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지식이나 노하우 전파의 95%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동함에 따라 일어난다고 한다. 오늘날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적 자본이 핵심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은 인생의 전학습과정에서 첫 번째 정류장에 불과하다.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공계 대학 인력공급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세계 경쟁 속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유능한 숙련근로자가 필요하다. 이런 인력개발이 모든 대학이 해야 할 일이다.

둘째, 대학교육은 관련산업에 승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연구비, 등록금, 국고지원금 등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그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외국학생 유치가 서비스 부분 중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수출산

업이 되고 있다. 대학교육은 이제 세계적인 성장산업으로 사람들은 더 나은 수입과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 대학교육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여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도 세계 일류대학의 육성을 통하여 유학생을 중요한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부수적으로 대학교육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실업률 하락, 복지비용의 절약, 범죄의 감소 등 사회 · 경제적 이익도 발생한다.

셋째, 신지식의 창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한다. 경제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신산업의 출현을 가져올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신지식이 상품화되면 완전고용, 자본축적, 이윤증대, 재투자가 일어나게 된다. 연구활동으로부터 새로운 기업이 생성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부가 창조되고, 결국 경제는 확대된다. 연구가 경제발전의 근본 추동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각국에서 대학교육을 신경제의 하부구조로 하는 이유이다. 실리콘 밸리는 컴퓨터칩을 만드는 기업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연구중심 대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작금에 진행되는 세계화는 이러한 대학교육의 경제발전에서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적 동기에 충실하고, 고등교육의 실질적 · 기술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지난해 KAIST가 노벨상 수상자인 외국인 총장을 영입한 것은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대학의 업적은 응용연구의 성과물로 평가된다. 이런 경향은 과학이나 기술과 같이 이익이 나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인문학을 포함하여 기초적 이론연구 분야와 긴장관계를 조성하며 또한 소수의 유명 연구대학과 다수의 중하류 대학 간의 차이를 확대시키고 있다. 공공재로서 교육은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과거 당위성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수익자부담 원칙과 교육제도의 탈규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제학에서 인적 자본의 경제발전 기여에 대한 연구가 20여 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한편 최근의 한 연구는, 실질적 기술을 측정한다면 인적 자본은 경제발전에 강력한 설명변수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기존 연구에서 교육기간의 길이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불분명한데 그 이유는 인적 자본 이론이 잘못된 것으로, 교육은 선별기능에 불과하여 더 나은 자질을 가진 사람을 골라내는 기능만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설명은 경제학자들이 틀린 것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장 자체는 생산능력 향상을 가져오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교육받은 경력은 상대적으로 측정이 쉽지만 인적 자본의 부정확한 변수이다. 필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체득의 직접적 척도로, 일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핵심능력, 바꾸어 말하면 현실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바로 이것이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핵심능력 1%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2.5% 상승시키고 일인당 GDP는 1.5%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어서 20%대인 OECD 평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2000년 고등교육 부분 교육비 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인 GDP의 1.3%에 비하여 2.6%로 두 배나 된다. 이미 적지 않은 지출이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 개인의 대학교육 비용부담과 국가의 대학교육 지원재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수의 증가,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갖춘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KDI

현안분석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김 현 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규모별 임금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김 형 준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리나라 소득세의 계층별 부담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소고

성 명 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

전 병 목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김 현 숙 전문연구위원(hskim@kipf.re.kr)

Ⅰ. 서 론

여성의 노동공급은 개인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여성이 포함된 가구원의 구성이나 가구의 경제적 · 비경제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가, 자녀를 대신 돌보아 줄 탁아모가 있는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 · 후반에 이르는 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자녀의 보육 및 교육비용이 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구성한다. 노동공급함수모형으로는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과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별되는 다항선택모형 두 가지를 이용한다. 자녀의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내생적인 설명변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의 두 모형에 통제함수접근법(control function approach)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자녀의 나이별, 여성의 취업형태별로 보육비용이 여성의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및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한다.

기존의 보육비용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시장 참여의 이항선택모형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보육비용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적인 2SLS 기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다.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가, 자녀를 대신 돌보아 줄 탁아모가 있는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 · 후반에 이르는 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법만을 사용했을 뿐 통제함수접근법을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자녀의 보육비용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연구가 없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자녀보육비용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체가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가이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여성노동공급 현황[1)]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덴마크나 캐나다의 73.6%, 60.7%에 비해서는 낮으나,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약간 높으며, OECD 회원국들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인 49.0%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표 Ⅱ-1〉 참조).

〈표 Ⅱ-1〉 OECD 회원국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2002년)

(단위: 천명, %)

국가명	15세 이상 총여성인구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	여성 경제 활동참가율	국가명	15세 이상 총여성인구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	여성 경제 활동참가율
한국	19,042	9,466	49.7	일본	56,330	27,320	48.5
호주	7,969	4,389	55.1	룩셈부르크	186	79	42.3
오스트리아	3,528	1,766	50.1	멕시코	36,133	13,953	38.6
벨기에	4,385	1,895	43.2	뉴질랜드	1,578	900	57.0
캐나다	12,685	7,700	60.7	폴란드	16,259	7,907	48.6
덴마크	1,814	1,334	73.6	포르투갈	4,554	2,461	54.0
독일	36,192	17,704	48.9	슬로바키아	2,270	1,196	52.7
그리스	4,679	1,765	37.7	터키	23,395	6,297	26.9
헝가리	4,062	1,859	45.8				

자료: ILO, LABORSTA Labour Statistics Database.

1) 여성노동공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신 본원의 원종학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과거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보면([그림 Ⅱ-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미혼여성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경기호황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기혼여성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나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에는 기혼여성보다 급격하게 하강했다가 1999년 이후 다시 급상승함으로써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경기의 변화에 민감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1]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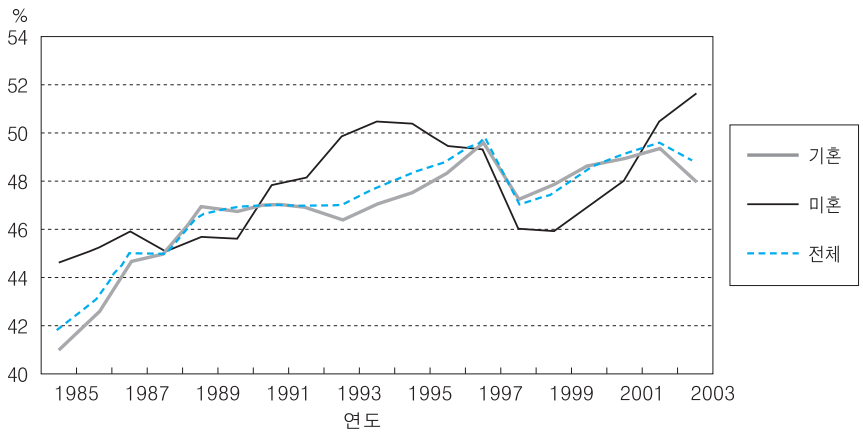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Ⅱ-2]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20대 중반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줄었다가 30대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M자형 노동공급곡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대 후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00년에 들어서면서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인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난 20년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①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이 줄어든 것과, ② 1980년대까지 경제적 호황이 이어지면서 1990년대 들

기혼여성은 보육대상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률로 살펴보아도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보육대상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보육대상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보다 약간씩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어 여성노동력 활용의 요구가 증대된 점, ③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확보, 보육기관 및 시설의 확충, 모성보호 관련법과 같은 자녀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점, ④ 노동공급자인 여성 자신이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시 소득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력 단절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Ⅱ-2]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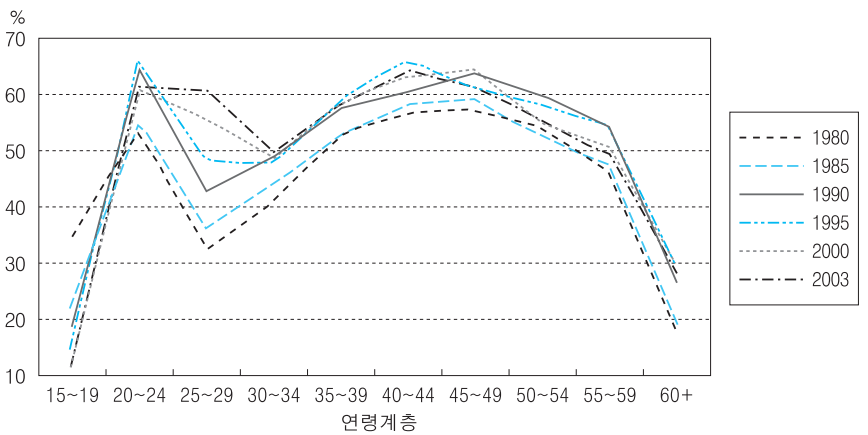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녀보육이 기혼여성 취업의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기혼여성의 보육대상 자녀 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 상태의 차이에 의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보육대상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나타낸 〈표 Ⅱ-2〉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기혼여성은 보육대상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률로 살펴보아도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보육대상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보육대상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보다 약간씩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1세 미만 자녀의 존재 유무는 다른 연령층의 자녀와 비교할 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1세 미만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43.1%, 1세 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17.1%)의 격차는 26.0%로서 3~5세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3~5세 자녀가 있을 경우 43.3%, 3~5세 자녀가 없을 경우 33.5%)의 격차인 9.8%보다 훨씬 크다. 이로부터 어린 자녀의 존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이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의 한계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얻는 임금의 한계가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만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비용 역시 임금의 한계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표 Ⅱ-2〉 보육대상 아동 존재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2000년)

(단위: 천명, %)

	실 업 률	경제활동참가율
5세 이하 있음	3.7	29.7
5세 이하 없음	3	45.5
3~5세 있음	3.9	33.5
3~5세 없음	3	43.3
2세 이하 있음	3.5	23.1
2세 이하 없음	3.1	44.7
1~5세 있음	3.8	31
1~5세 없음	3	44.6
1세 미만 있음	3.5	17.1
1세 미만 없음	3.1	43.1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2003.

1세 미만 자녀의 존재 유무는 다른 연령층의 자녀와 비교할 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1세 미만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26.0%로서 3~5세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인 9.8%보다 훨씬 크다.

Ⅲ.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비용

1.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모형

자녀를 보육하는 대표적인 기혼여성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기혼여성의 효용극대화 모형은 다음과 같다.

$$\max U = U(C,\ t_l,\ Q_{care})$$
$$s.t.$$
$$Q_{care} = Q_{care}\ (t_m,\ t_i,\ :\ Z)$$
$$Q'_{care1} > 0,\ Q'_{care2} > 0,\ Q''_{care1} < 0,\ Q''_{care2} < 0$$
$$C + P_{cc}t_i \leq wt_w + V$$
$$t_m + t_w + t_l = 1$$
$$t_m + t_i < 1$$

대표적인 기혼여성은 일반재화에 대한 소비 C, 여가시간 t_l, 자녀보육 Q_{care}로부터 효용을 얻으며 자녀보육은 어머니가 자녀보육에 투여하는 시간 t_m, 시설에서 자녀를 보육하는 시간 t_i, 어린 자녀의 수나 자녀의 나이 등과 같은 변수인 Z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기혼여성은 자신의 재화에 대한 소비와 시간당 자녀의 보육비용인 P_{cc}와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시간을 곱한 자녀의 보육비용을 자신의 예산제약하에 지출하게 된다.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임금을 받게 되므로 기혼여성의 예산제약은 자신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가 여부에 따라 타가구원 소득 V나 본인의 소득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 소득이 된다.

기혼여성의 시간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시간, 근로시간, 여가시간으로 나누어진다. 마지막 제약식은 자녀를 어머니 자신이 보육하는 시간과 시설에 보내는 시간의 합이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단위시간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간제약식은 기혼여성이 자신의 근로시간 t_w만큼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다는 가정 즉 $t_w = t_i$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기혼여성의 여가시간 $t_l > 0$ 조건을 충족시킨다. 제약하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으로

부터 다음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frac{U_l}{U_c} = w = \frac{U_Q}{U_c}(Q_{care1} - Q_{care2}) + P_{cc}$$

위 식에서 첫 번째 등식은 여가와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의 상대적인 비율이 시장에서 얻는 임금과 같은 수준에서 여가시간과 근로시간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등식은 자신이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얻게 되는 편익과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얻는 편익간의 차이에 자녀를 돌봄으로써 얻는 효용과 재화의 소비로 인한 효용간의 상대비율을 곱한 값과 시장에서의 자녀보육의 시간당 비용을 더한 값이 임금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자신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시간과 보육시설에 보내는 시간을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를 기혼여성 자신이 직접 돌봄에 따라 얻는 편익이 보육시설에 자녀의 보육을 위탁하는 경우보다 클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보육비용이 낮아야 위 1계 조건의 균형식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보육에 기혼여성 자신이 투여하는 시간당 편익이 클수록 보육료의 시장가격이 낮아야 균형을 이루게 된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별 기혼여성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교육수준, 연령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를 높여 오히려 경제활동참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임금 직종에 종사할 기회가 많아져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여성의 연령을 포함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이 연령에 따라 M곡선을 띤다는 사실을 감안하려는 것이다. 즉 출산 이전과 아이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이후의 높은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집중된 시기의 낮은 참여율을 연령변수를 통해 반영한다[2].

기혼여성이 속한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기혼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타가구원의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2세 이하의 자녀 유무, 3~5세 자녀 유무, 6~18세 자녀 유무, 기혼여성 자신이 가구주인지 여부, 부모와의 동거 여부, 서울거주 여부를 포함하였다. 타가구원 소득은 가계 전체소득 중 기혼여성 본인의 임금을 제외한 것으로 타가구원의 소득이 높으면 가계 전체의 소득효과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된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의 수는 보살핌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2)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혹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률은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 M자 곡선을 나타내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역 U자형의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III-1]과 이에 대한 설명을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를 높여 오히려 경제활동참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임금 직종에 종사할 기회가 많아져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까지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변수로서 도입된다.

이와 더불어 집중적인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만2세 이하의 영아나 3~5세의 유아를 가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2세 이하, 3~5세의 영유아 존재 유무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였으며, 6세에서 성인이 되기 전의 청소년인 18세 사이의 자녀 유무도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5세 이하의 자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의 존재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구주인 기혼여성은 전통적인 가사노동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 의무도 일차적으로 지게 되므로 노동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 본인의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는 노인을 보필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방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린 자녀를 보살펴 주는 탁아의 임무를 기혼여성의 부모가 대행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서울에 사는지 여부는 여성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거나 높은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보육과 관련된 변수로서는 보육시설[3]에 자녀를 보내는지 여부와 탁아모[4]의 존재 유무, 보육비용, 탁아모 지불비용을 들 수 있다. 어린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자녀를 대신 돌보아 줄 탁아모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시설이나 탁아모의 존재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비와 탁아모 비용의 크기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식의 설명변수로 보육비용을 이용할 때 보육비용이 외생적인 설명변수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보육료의 시장가격을 변수로 이용

3) 보육시설은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보충학습 학원, 예체능 학원, 기타 개인레슨 등을 포함한다.
4) 탁아모는 자녀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거 혹은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 동거 혹은 비동거하는 타인을 말한다.

할 수 있다면 이를 외생적인 변수로 고려하여 설명변수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는 자료가 가계의 보육비 지출이라면 보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이나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외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가계의 보육비 지출을 변수로 사용하므로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있는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항선택모형에서 내생적인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가 있으면 일반적인 프로빗(probit)모형이나 로짓(logit)모형으로 일치 추정치(consistent estimators)를 구할 수 없으며,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지 않는 한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있는 연립방정식모형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2SLS기법을 이용한다 해도 추정치의 일치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내생성이 있는 연속적인 설명변수인 보육비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선택모형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제함수접근법(control function approach)을 이용해야 한다. 통제함수접근법은 Wooldridge(2003), Lewbel(2004) 등이 소개한 것으로 현재 내생성을 지닌 연속적 설명변수를 가진 이항선택모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통제함수접근법은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이항선택모형에 있을 경우, 그 변수를 설명하는 다른 외생변수에 회귀추정한 잔차항을 이항선택모형에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은 통제함수접근법과 표본선택모형을 결합하여 2단계 노동공급함수 추정을 시도한다.

두 번째 모형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모형을 전일제/시간제/미취업의 세 가지로 나누어 여성의 가사부담과 이를 위한 시간배분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형태는 남성과는 달리 기혼여성이 가사와 양육에 상당한 시간을 배분하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실증분석

가. 분석자료의 특성

두 모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자료(1998~2002년)를 이용하였다. 모형 I 과 모형 II의 횡단면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의 5개년도 자료를 풀링(pooling)하였다. 모형에 이용한 변수들과 변수의 기본값들은 〈표 III-1〉과 같다.

내생성이 있는 연속적인 설명변수인 보육비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선택모형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제함수접근법(control function approach)을 이용해야 한다. 통제함수접근법은 현재 내생성을 지닌 연속적 설명변수를 가진 이항선택모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표 Ⅲ-1〉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자녀보육변수 값(노동패널 1998~2002)

	기 혼 여 성			
	전체표본	노동시장참여	노동시장참여& 보육시설이용	노동시장비참여& 보육시설이용
관측치수	23,215	9,195	3,228	4,664
2세 이하 자녀 유무	0.122 (0.328)	0.073 (0.260)	0.126 (0.332)	0.255 (0.436)
3~5세 자녀 유무	0.141 (0.348)	0.110 (0.314)	0.234 (0.423)	0.344 (0.475)
6~18세 자녀 유무	0.446 (0.497)	0.505 (0.500)	0.828 (0.377)	0.700 (0.458)
가구원 소득(원)	1,782,728 (2,052,347)	1,931,762 (2,040,981)	2,334,089 (2,626,213)	2,108,976 (2,070,003)
타가구원 소득(원)	1,572,688 (2,136,052)	1,370,824 (1,775,002)	1,710,798 (2,157,166)	2,108,976 (2,070,003)
교육연수	9.066 (4.623)	9.548 (4.118)	11.270 (3.284)	10.515 (4.242)
연령	46.916 (15.289)	44.413 (10.950)	38.650 (7.734)	39.832 (15.769)
서울거주 여부	0.240 (0.427)	0.222 (0.416)	0.231 (0.422)	0.232 (0.422)
부모동거 여부	0.159 (0.365)	0.128 (0.334)	0.146 (0.353)	0.193 (0.395)
가구주 여부	0.124 (0.330)	0.140 (0.347)	0.063 (0.243)	0.032 (0.175)
초등3년 이하 자녀수	1.019 (0.812)	0.897 (0.800)	1.472 (0.558)	1.561 (0.591)

〈표 Ⅲ-1〉의 계속

	기혼여성			
	전체표본	노동시장참여	노동시장참여& 보육시설이용	노동시장비참여& 보육시설이용
고용과 보육변수				
노동시장참여	0.405 (0.491)			
주당 근로시간(시간)	21.19 (29.40)	52.29 (22.45)	50.88 (21.11)	
시간당 임금(원)	3,517 (10,665.1)	3,535.92 (10,747.8)	4,268.59 (11,688.1)	
자녀 1인당 보육비용(만원)	10.580 (15.426)	11.179 (16.593)	11.148 (16.546)	10.157 (14.362)
2세 이하 자녀 보육비용(만원)	1.512 (5.659)	4.351 (9.906)	5.385 (10.767)	0.858 (3.315)
3~5세 자녀 보육비용(만원)	9.608 (8.349)	10.960 (7.684)	11.420 (7.501)	9.736 (8.561)
6~18세 자녀 보육비용(만원)	11.553 (17.757)	11.727 (20.694)	12.077 (20.899)	12.130 (15.386)
시간당 자녀 보육비용(만원)	0.208 (0.393)	0.220 (0.384)	0.234 (0.393)	0.230 (0.421)
2세 이하 시간당 자녀보육비용(만원)	0.167 (0.274)	0.139 (0.175)	0.141 (0.175)	0.223 (0.393)
3~5세 시간당 자녀 보육비용(만원)	0.154 (0.178)	0.130 (0.132)	0.137 (0.132)	0.166 (0.199)
6~18세 시간당 자녀 교육 비용(만원)	0.560 (0.660)	0.550 (0.705)	0.556 (0.705)	0.575 (0.632)
가구당 탁아모 비용 (만원)	0.640 (7.421)	1.194 (9.654)	3.384 (17.194)	0.716 (9.971)
탁아모(더미)	0.033 (0.178)	0.046 (0.210)	0.078 (0.269)	0.031 (0.174)

주: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노동패널 1998~2002 pooling

전체 여성 중 미혼여성을 제외한 기혼여성의 15세 이상 기혼여성 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자수를 연령별로 그려보면 역 U자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출산연령 근처에 있는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감소하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노동패널자료에 기초하여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다. 이는 [그림 Ⅱ-2]의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M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여성 중 미혼여성을 제외한 기혼여성의 15세 이상 기혼여성 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자수를 연령별로 그려보면 역 U자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출산연령 근처에 있는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감소하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 20대 중후반까지 높은 참가율을 보이다 30대 이후 약간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혼여성은 기혼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혼과 미혼여성을 합한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림 Ⅱ-2]와 마찬가지로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미혼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과 연이은 출산을 통해 M자형의 저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1]의 M자형 곡선의 저점에 해당하는 연령은 30대 초반으로 [그림 Ⅱ-2]의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2000년 혹은 2003년의 저점을 형성하는 연령과 유사하다. 따라서 노동패널상의 기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시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 연령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노동패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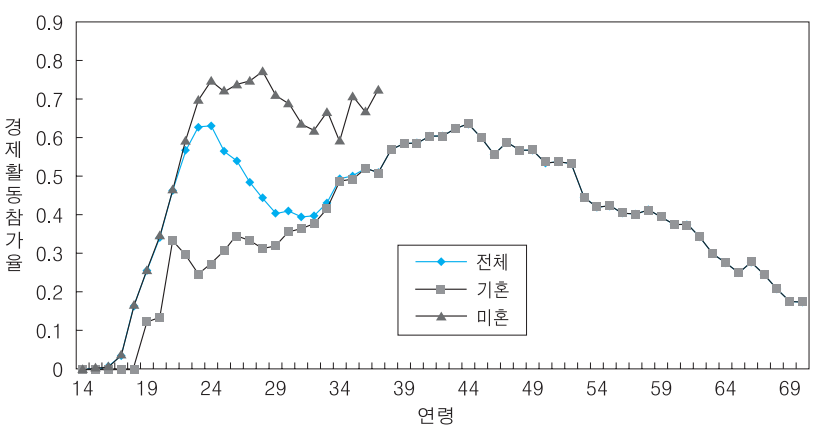

나. 자녀보육비용 회귀식과 변수의 내생성

프로빗모형이나 로짓모형같이 설명변수가 0 혹은 1의 값을 갖는 모형에서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존재할 때에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2SLS 추정치를 사용하여 일치추정치를 구할 수 없고, 내생적인 변수를 외생적인 설명변수에 회귀시킨 잔차항을 첨가하여 내생성 여부를 검사하고 내생성을 통제하여 프로빗모형 혹은 로짓모형을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 가구의 총지출 등과 상관관계가 크므로 변수의 외생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OLS 회귀식을 구성하여 그 잔차항을 노동시장참여식에 첨가하여 변수가 외생적인지 여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 지출 회귀식의 추정결과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자녀보육비용의 추정식(OLS)

	계 수	(t값)
2세 이하 자녀 유무	-0.096**	(-8.47)
3~5세 자녀 유무	-0.044**	(-4.60)
6~18세 자녀 유무	0.093**	(8.26)
가구소득	0.0002**	(8.93)
어머니 학력	0.012**	(8.40)
어머니 연령	0.003**	(5.50)
서울거주 여부	0.014	(1.64)
가구주	-0.039	(-1.95)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004	(-0.54)
부모동거 여부	0.024*	(2.10)
탁아모 유무	-0.032**	(-2.62)
상수	-0.102**	(-3.20)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6~18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시간당 보육 혹은 교육비용은 매우 큰 반면, 5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는 시간당 보육비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전체소득이 높고,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육비용 지출이 증가하며,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보육비 지출이 감소하고, 탁아모가 있는 경우에도 보육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Ⅲ-2〉에서 알 수 있듯이 6~18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시간당 보육 혹은 교육비용은 매우 큰 반면, 5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는 시간당 보육비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Ⅲ-1〉의 노동패널자료에 대한 기본통계치의 자녀보육비용을 확인해도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가구원 전체소득이 높고,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육비용 지출이 증가하며,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육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보육비 지출이 감소하고, 탁아모가 있는 경우에도 보육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아모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탁아모 지불비용의 평균값이 매우 낮고 표준편차는 큰 편이어서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5]. 대신 탁아모의 이용과 보육시설 이용, 탁아모의 이용과 보육비용 간의 대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탁아모 이용 여부를 보육비용에 대한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보육비용의 외생성 검정을 위해 위의 OLS 회귀식으로부터 교란항의 잔차를 구하여 노동시장참여식의 변수로 사용하게 된다.

다. 표본선택모형에 따른 횡단면 실증분석(모형 Ⅰ)

표본선택모형인 모형 Ⅰ의 1단계인 노동시장참여식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보육비용이 내생적인가의 여부이다. 이는 $\hat{v}_2$의 계수값이 0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또한 $\hat{v}_2$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육비용의 계수값과 표준오차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1단계 노동시장 참여식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탁아모 비용의 평균값이 매우 낮은 것은 동거하는 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할 경우 개인에 따라 탁아모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용돈 정도의 수준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그 표준편차가 큰 것은 동시에 공식적인 탁아모 고용을 통해 높은 탁아모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혼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탁아모 비용을 보육비용에 포함할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계의 보육비용변수 자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식적인 보육과 비공식적인 탁아모 이용 간의 대체성을 포착하기 어려워 탁아모 비용을 보육비용에 가산하지는 않았다.

〈표 Ⅲ-3〉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식(프로빗)

	내생변수취급(통제함수접근법)		외생변수 취급	
	계 수	(z 값)	계 수	(z 값)
2세 이하 자녀 유무	−0.400**	(−5.40)	−0.383**	(−5.29)
3~5세 자녀 유무	−0.160**	(−2.59)	−0.154*	(−2.50)
6~18세 자녀 유무	0.022	(0.29)	−0.001	(−0.02)
타가구원 소득	−0.0004**	(−4.18)	−0.0004**	(−4.15)
어머니 학력	0.019	(1.90)	0.016	(1.71)
어머니 연령	0.791**	(2.96)	0.786**	(2.96)
어머니 연령^2	−0.023*	(−2.49)	−0.023*	(−2.49)
어머니 연령^3	0.0003*	(2.20)	0.0003*	(2.19)
어머니 연령^4	−1.51e−06*	(−2.07)	−1.49e−6*	(−2.06)
서울거주 여부	−0.063	(−1.16)	−0.071	(−1.32)
부모동거 여부	0.159*	(2.20)	0.154*	(2.14)
가구주	0.410**	(3.44)	0.419**	(3.53)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062	(−1.23)	−0.060	(−1.19)
시간당 보육비용	−0.241	(−0.81)	0.071	(0.77)
$\hat{v}_2$(보육비용 잔차)	0.290	(1.11)	−	
상수	−9.971**	(−3.60)	−9.913**	(−3.60)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시간당 보육비용은 잔차항을 포함한 경우, 그 계수값이 유의성이 없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고, 보육비용의 잔차인 $\hat{v}_2$의 계수는 0이 아니나 그 유의성도 낮다. 반면 자녀보육비용을 외생변수라고 가정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의적인 양(+)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다. 두 모형에서 보육비용의 부호는 서로 반대로 나타나나 유의성은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hausman 검정 결과 $X^2(10)=1.23$으로 보육비용을 외생변수로 간주하고 사용한 경우와 통제함수접근법 사이에 계수값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5세 이하의 자녀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강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6세 이상의 자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본인을 제외한 타가구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상당히 유의하게 기혼여성은 취업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계소득이 높으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참여로 인한 부가적인 가계소득 대신 가사, 육아, 여가 등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령은 4차함수 형태로 가정할 경우 일정한 나이까지는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형

여성의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령은 4차함수 형태로 가정할 경우 일정한 나이까지는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효과가 노동시장참여에 주는 순수한 효과만을 살펴보면 기혼여성은 30대 후반에 가장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효과가 노동시장참여에 주는 순수한 효과만을 살펴보면 기혼여성은 30대 후반에 가장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가구주이면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담하기에 노동시장참여 확률이 매우 높으며, 비유의적이기는 하나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비서울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노동시장참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수도 유의성은 떨어지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의 결과로부터는 자녀의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시간당 보육비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별로 분류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자녀의 보육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4〉 자녀연령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식(통제함수접근법)

	자녀 2세 이하		자녀 3~5세		자녀 6~18세	
	계 수	(z값)	계 수	(z값)	계 수	(z값)
타가구원 소득	−0.0007	(−0.84)	−0.0001	(−0.44)	−0.0006**	(−3.21)
어머니 학력	0.079	(1.07)	0.057**	(2.84)	−0.004	(−0.25)
어머니 연령	0.988	(0.17)	0.882	(1.28)	1.109	(1.48)
어머니 연령^2	−0.040	(−0.16)	−0.029	(−1.20)	−0.031	(−1.29)
어머니 연령^3	0.0008	(0.18)	0.0004	(1.19)	0.0004	(1.13)
어머니 연령^4	−5.94e−06	(−0.21)	−2.48e−06	(−1.23)	−1.77e−06	(−1.05)
서울거주 여부	0.172	(0.48)	−0.001	(−0.01)	−0.045	(−0.50)
부모동거 여부	0.869	(0.87)	0.195	(1.39)	0.167	(1.34)
가구주	2.679	(0.28)	0.185	(0.67)	0.512*	(2.19)
초등3학년이하 자녀수	0.208	(0.68)	−0.109	(−1.41)	−0.211**	(−3.14)
보육비용	−3.986*	(−2.05)	−3.040**	(−4.80)	0.166	(0.77)
$\hat{v}_2$	4.293**	(2.58)	2.101**	(3.82)	−0.070	(−0.39)
상수	−10.466	(−0.19)	−10.475	(−1.48)	−13.671	(−1.63)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전체표본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계수값들의 유의성은 떨어진다. 타가구원 소득은 6세 이상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만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타가구원 소득의 유의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5세 이하 자녀의 존재 그 자체가 노동시장참여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가적인 변수인 타가구원 소득은 별반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6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순수한 자녀의 존재로 인한 노동시장참여율 결정력이 떨어지고 그 외의 변수 중 타가구원 소득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오직 3~5세의 자녀가 있을 때에만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비용의 경우는 2세 이하와 3~5세의 경우에 전체표본을 이용한 경우와 달리 음(−)의 유의한 계수값을 보여 5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당 보육비용이 클수록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6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육비용의 계수값이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직접 보육하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녀보육비용의 증가에 따른 한계비효용이 크기 때문에 보살핌이 덜 필요한 자녀를 둔 경우에 비해 보육비용이 노동시장참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본선택모형의 2단계인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함수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표본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편의가 유의한가이다. 둘째, 노동공급시간 함수식에서 피설명변수인 시간당 임금이 총연간임금소득/총연간노동시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교란항 u_i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당 로그임금 변수를 대체할 외생적인 도구변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자녀의 보육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외생적인 설명변수인가 여부이다.

첫 번째 문제인 표본의 선택성이 편의를 주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참여식에 대한 추정치와 이 추정치를 고려한 2단계 노동공급함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의 선택성을 고려한 부분인 $\hat{\lambda}$에 대한 t값 혹은 F test를 통해 표본의 편의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유의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Cogan(1980)이 언급한 경력변수로 인한 과소추정문제나 Mroz(1985)가 제기한 표본편의에 대한 고려는 노동공급함수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그 시간당 임금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세 이하의 자녀 유무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타가구원 소득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수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6세 이상의 자녀의 존재는 오히려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분석의 핵심이 되는 보육비용의 회귀식에서 도출된 보육비용의 예측치는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보육비용이 여성의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보육비용이 노동공급시간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났다.

분석의 핵심이 되는 보육비용의 회귀식에서 도출된 보육비용의 예측치(fitted value)는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표Ⅲ−3〉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육비용이 여성의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보육비용이 노동공급시간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5〉 노동공급함수에 대한 회귀식(2단계)

	도구변수법		OLS		외생변수취급	
	계 수	t 값	계 수	t 값	계 수	t 값
log(시간당 임금)도구변수 : 서울거주 여부	−2.502	(−0.64)	3.763**	(36.01)	2.301	(0.85)
$\hat{\lambda}$	−52.085	(−1.29)	1.153	(0.07)	−67.782	(−1.60)
2세 이하 자녀 유무	−7.230**	(−2.66)	−5.361**	(−2.70)	−0.459	(−0.21)
3~5세 자녀 유무	−2.148	(−1.32)	−1.177	(−1.02)	−2.032	(−1.73)
6~18세 자녀 유무	3.824*	(2.47)	3.085*	(2.55)	2.418	(1.83)
타가구원 소득	−0.012*	(−1.99)	−0.003	(−1.42)	−0.00002	(−0.00)
어머니 학력	−0.117	(−0.17)	−0.934**	(−6.25)	−0.518	(−1.21)
어머니 연령	2.244**	(2.83)	2.733**	(5.00)	−0.414	(−0.45)
어머니 연령^2	−0.024**	(−2.85)	−0.030**	(−5.25)	0.0024	(0.25)
가구주	9.861	(1.17)	−2.855	(−1.39)	−2.270	(−0.81)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5.738**	(−2.53)	−7.609**	(−5.25)	4.612	(1.51)
$\widehat{\text{보육비용}}$	−39.799**	(−3.16)	−22.129**	(−4.97)		
보육비용					−1.796	(−0.70)
상수	24.815	(0.70)	−16.220	(−0.89)	62.470	(1.64)

adj. R^2 =0.316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두 번째 문제인 로그임금 변수의 내생성은 〈표 Ⅲ-5〉의 OLS와 도구변수법의 추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이 지방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지만 주당 근로시간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서울거주 더미변수를 로그 시간당 임금의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OLS 결과와 다르다. OLS 회귀분석에서는 로그 시간당 임금이 노동공급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나머지 변수들은 그 부호가 정성적으로는 도구변수법 (IV)에 의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의 내생성을 무시하고 OLS 모형을 사용하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이 시간당 임금에 대해 양(+)의 탄력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임금이 증가할 때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내생성을 교정한 도구변수법을 이용하게 되면 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은 자신의 임금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6].

세 번째로 보육비용의 외생성에 대한 검증은 도구변수법과 보육비용을 외생변수로 사용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육비용을 외생변수로 취급하고 로그 시간당 임금 대신 서울거주 여부 더미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결과, 모든 변수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Hausman 검정의 결과 $X^2(9)=3461.1$로 보육비용을 내생변수로 처리한 경우와 계수값이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보육비용이 근로시간의 설명변수로서 외생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노동공급의 설명변수인 로그 시간당 임금과 보육비 지출이 모두 내생적인 변수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도구변수법과 2SLS를 이용하여 교정한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을 통해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간당 임금은 여성의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녀의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자녀의 나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세 이하 자녀의 경우는 보육비용의 증가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6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음(-)의 계수값을 보이기는 하나,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로그 시간당 임금은 5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6) IV와 OLS 계수들 간의 차이가 체계적인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Hausman test를 시행한 결과 $X^2(11)=2.32$로 두 회귀추정식의 계수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H_0)을 기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로그 시간당 임금과 교육수준은 도구변수법을 사용한 경우 그 계수의 유의성과 부호가 변화하였다. 비록 전체 변수들의 계수가 체계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로그 시간당 임금의 내생성을 교정한 도구변수법을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량이 임금의 변화에 유의적이지 않음을 보인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참여에 가족구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살핌이 필요한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혼여성이 전일제로 시장에 참여하는 확률이 현저히 감소한다.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는 나이 어린 자녀에 비해 기혼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율을 비유의적으로나마 증가시킨다.

있는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선택의 편의에 대한 교정항인 λ의 계수값과 t값을 관측한 결과 자녀의 전 연령에 걸쳐 표본선택의 편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7].

라. 전일제와 시간제의 다항로짓모형 실증분석(모형 II)

실증분석의 자료는 위 모형 I 의 경우와 같이 1998~2002년의 5개년도에 걸친 노동패널자료이다. 노동패널의 전일제와 시간제의 비율은 노동시간과도 관련이 있지만 정규직/비정규직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의 평균 주당 총노동시간은 34.45시간이며, 전일제는 53.17시간으로 주당 총노동시간이 시간제가 약 20시간 정도 더 적다. 그러나 노동시장참여율인 39.6%비해 시간제와 전일제를 합한 참여율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 1999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노동시장참여 인원을 시간제와 전일제로 나누어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8].

시간제와 전일제의 고용형태를 피설명변수로 사용하고 〈표 III-3〉의 노동시장참여식에서 이용한 설명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항로짓모형을 회귀분석한 추정결과는 〈표 III-6〉과 같다. 먼저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참여에 가족구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의 경우 보살핌이 필요한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혼여성이 전일제로 시장에 참여하는 확률이 현저히 감소한다.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는 나이 어린 자녀에 비해 기혼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율을 비유의적으로나마 증가시킨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수도 기혼여성의

7) 본문에 자녀연령별 보육비용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지면상 수록하지 않았다. 단 자녀연령별 근로시간의 보육비용 탄력성은 IV장에 수록하였다.

8) 노동패널자료에는 개별문항으로 본인이 미취업상태인지, 취업을 했다면 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 표시하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에 대한 답변에 의거하여 다항로짓모형을 구성하였고, 이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를 다 합쳐 전체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율과 비교해 보면 전일제와 시간제를 합친 취업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고용형태 중 전일제나 시간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노동패널상의 서로 다른 문항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참여율을 계산하는 것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다.

전일제 노동참여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기혼여성 자신의 소득이 가계의 1차적인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일제 노동을 선호하게 된다. 타가구원의 소득 역시 전일제 노동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는 증가하며 연령은 4차함수로 추정할 때 노동시장참여 모형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30대 후반에 전일제 참여가 정점을 이루게 된다. 통제함수접근법을 다항선택모형에 이용한 위의 분석에서 보육비용이 크면 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t{v}_2$ 역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보육비용이 외생적인 변수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시간제 노동의 경우 가족관련 변수들은 전일제와 비슷한 영향을 미치지만 계수들의 유의성은 작다. 2세 이하의 경우는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으나, 3~5세 자녀가 있으면 기혼여성의 시간제 노동시장참여율은 감소하나 그 유의성은 떨어진다. 즉 집중적인 양육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유아가 있는 기혼여성은 전일제 노동은 매우 꺼리나 시간제 노동시장참여는 전일제 노동참여만큼 저조하지는 않다. 6세 이상의 자녀 존재는 유의적으로 시간제 노동참여율을 증가시킨다. 보육비용 변수는 전일제 노동참여에 비해 시간제 노동참여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다. 타가구원 소득은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기혼여성은 가계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가적인 소득보다는 여가나 자녀보육을 선호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개별특성 중 교육수준은 시간제 노동참여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수경(2003)과 일치하는 결론으로 시간제 노동은 교육수준과 큰 관계가 없는 단순노동 형태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시간제 노동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이 가구주인지 여부는 시간제 노동참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보육비용은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완화가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Ⅲ-6〉 기혼여성의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시장참여(다항로짓 : 통제함수접근법)

	시 간 제		전 일 제	
	계 수	(z값)	계 수	(z값)
2세 이하 자녀 유무	−0.697*	(−2.17)	−0.572**	(−3.25)
3~5세 자녀 유무	−0.189	(−0.77)	−0.329*	(−2.27)
6~18세 자녀 유무	0.718*	(2.17)	0.254	(1.37)
타가구원 소득	−0.006**	(−5.57)	−0.002**	(−4.57)
어머니 학력	0.024	(0.57)	0.188**	(7.64)
어머니 연령	3.013	(1.38)	2.176*	(2.39)
어머니 연령^2	−0.107	(−1.33)	−0.075*	(−2.27)
어머니 연령^3	0.002	(1.29)	0.001*	(2.17)
어머니 연령^4	−9.39e−06	(−1.27)	−6.17e−06*	(−2.09)
서울거주 여부	0.458*	(2.25)	0.113	(0.93)
부모동거 여부	−0.205	(−0.63)	0.111	(0.64)
가구주	−0.647	(−1.06)	0.504*	(2.04)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015	(−0.07)	−0.275*	(−2.28)
보육비용	−3.569**	(−3.37)	−4.207**	(−6.55)
$\hat{v}_2$	4.005**	(4.03)	4.277**	(7.37)
상수	−33.474	(−1.54)	−25.662**	(−2.83)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혼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참여는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변수, 교육수준, 보육관련 변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만 시간제 노동시장참여는 위의 변수들에 다소 둔감하게 반응한다. 기혼여성의 경우 시간제 노동과 미취업 간에 뚜렷한 선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영유아의 존재도 시간제 노동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으로 단절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시간제 노동은 단절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의 보육비용은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완화가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 노동시장참여는 영유아의 존재와 보육비용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 비율이 높아지므로 질 높은 여성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양육부담과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전일제의 경우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증가하며,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시간제 모두 남편을 중심으로 한 타가구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며, 중·저소득층의 고학력 여성들이 전일제 시장에 참여하여 가계의 생계비를 벌거나 2차적인 수입원인 경우에는 자녀의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Ⅳ. 정부의 자녀보육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1. 여성노동공급의 보육비용 탄력성

Ⅲ장의 회귀분석의 결과로부터 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표본선택모형의 1단계 노동시장참여식의 계수로부터 구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시간당 보육비용에 대한 탄력성은 다음의 〈표 Ⅳ-1〉로 요약할 수 있다.

〈표 Ⅳ-1〉 기혼여성 노동시장참여의 보육비용 탄력성

노동시장참여식 (프로빗)				시간제/전일제 (다항로짓)		
전체표본	2세 이하	3~5세	6~18세	미취업	시간제	전일제
−0.04 (−0.81)	−0.442* (−2.05)	−0.484** (−4.66)	0.064 (0.77)	0.094** (3.99)	−0.59** (−3.37)	−0.69** (−6.55)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 ) 안은 z값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보육비용의 전체표본 탄력성은 −0.04로서 비유의적인 음(−)의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세 이하와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 그 탄력성 수치는 각각 −0.44, −0.484로 다소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는 커져 보육시설의 이용비가 비싼 경우, 보육비용의 증가에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보육비용의 전체표본 탄력성은 -0.04로서 비유의적인 음(-)의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세 이하와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 각각 -0.44, -0.484로 다소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보육시설의 이용비가 비싼 경우, 보육비용의 증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의 보육을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의 보육을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9]. 2세 이하의 보육비용 탄력성이 3~5세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2세 이하 자녀의 보육은 보육비 외에 탁아모에 대한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회귀분석의 결과는 보육비용만을 포함한 것으로 2세 이하의 자녀에게 수반되는 총보육비용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탄력성이 3~5세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6세 이상의 자녀보육비용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시간투자의 한계가치가 자녀가 성장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며 특히 10세 이상의 자녀에게 필요한 보육 및 교육의 내용이나 질은 어머니가 수행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원 등의 시설에 자녀를 보냄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시간제와 전일제 참여의 다항로짓모형의 경우, 전일제의 보육비용 탄력성은 −0.69로 유의한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제 역시 탄력성이 −0.59로 보육비용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형태 모두 보육비용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전일제의 보육비용 탄력성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탄력성 수치 결과는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전일제의 경우가 시간제 노동의 경우보다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Jaumotte(200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본선택모형의 2단계인 노동공급에 대한 보육비용의 탄력성은 〈표 Ⅳ−2〉와 같다.

9) 이는 Jaumotte(2003)의 분석에서 자녀가 어릴수록 여성노동시장 참여의 탄력성이 크다는 OECD 국가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표 Ⅳ-2〉 기혼여성 노동공급시간의 보육비용 탄력성

노동공급시간			
전체표본	2세 이하	3~5세	6~18세
−0.102** (−3.16)	−0.312* (−2.22)	−0.119* (−2.04)	−0.127 (−1.73)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 ) 안은 z값

노동공급시간의 보육비용 탄력성은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5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만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노동공급시간의 보육비용 탄력성 수치는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보육비용 탄력성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즉 자녀의 보육비용은 여성의 취업결정에 보다 탄력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의 탄력성 추정수치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정부의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2세 이하의 자녀 혹은 3~5세 사이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6세 이상 특히 1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성이 이차적인 소득원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므로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은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집중되는 것이 여성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시간제나 전일제 모두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 부담이 노동시장참여에 유의적인 음(−)의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참여자에게 자녀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의 노동참여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일제 노동참여자에 대해 보육비용의 탄력성이 더 크므로 시간제와 전일제 중 전일제 취업모에게 자녀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노동시간에 대한 보육비용 탄력성도 2세 이하의 경우 크게 나타나고 3~5세의 경우도 −0.119로 나타나고 있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자녀보육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취업률이 증가하고, 노동시간도 증가하게 된다. 타가구원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2세 이하의 자녀 혹은 3~5세 사이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6세 이상 특히 1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성이 이차적인 소득원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므로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은 5세 이하 어린이에게 집중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자녀보육비용 보조금의 효과 : 모의실험

현재 정부는 2008년까지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자녀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04년에는 1층, 2층, 3층에게 각각 지원단가의 100%, 60%, 40%를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확대하여 2008년에는 1층부터 5층까지 각각 지원단가의 100%, 100%, 80%, 60%, 30%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5세 자녀의 경우 법정저소득층은 1층에 한하여 2004년 기준으로 131,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자녀보육료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자료 중 2001년과 2002년 표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노동패널 중 2001~2002년 두 해의 표본을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층별 분류를 시도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비 지원 단가를 산정하였다.

각 소득수준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2005년과 2008년 수준으로 확대될 때 자녀연령별로 기혼여성의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률과 주당 근로시간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2001년과 2002년 가구소득에 근거한 지원비율과 본문에서 구한 탄력성 수치를 통해 살펴본다. 소득계층 1과 2는 2001년과 2002년 각각의 기준을 사용하였고, 3, 4 ,5층은 2001년과 2002년 도시근로가구의 평균소득의 50%, 70%, 100%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각 소득계층과 자녀연령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 주당 근로시간, 시간제 및 전일제 참여율을 노동패널의 2001년과 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후 노동시장참여식, 노동공급시간, 시간제와 전일제의 다항로짓 회귀식으로부터 구한 탄력성 수치들을 이용하여 2005년과 2008년 지원계획을 실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노동공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표 Ⅳ-3〉 자녀보육료 보조금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자녀연령	소득 2층	소득 3층	소득 4층	소득 5층
2005년 지원기준	노동시장 참여	2세 이하	0.222→0.250	0.127→0.192	0.196→0.226	–
		3~5세	0.278→0.302	0.246→0.282	0.256→0.271	–
	주당 근로시간	2세 이하	12.079→13.135	7.437→10.131	9.589→10.633	–
		3~5세	15.964→16.496	12.425→14.142	11.181→11.646	–
	시간제	전연령	0.0345→0.0389	0.0452→0.0531	0.0549→0.0593	–
	전일제	전연령	0.1703→0.1755	0.1877→0.1969	0.1751→0.1803	–
2008년 지원기준	노동시장 참여	2세 이하	0.222→0.268	0.127→0.213	0.196→0.257	0.229→0.248
		3~5세	0.278→0.318	0.246→0.294	0.256→0.286	0.326→0.345
	주당 근로시간	2세 이하	12.079→13.839	7.437→11.030	9.589→11.678	10.151→10.744
		3~5세	15.964→16.851	12.425→14.715	11.181→12.110	15.566→15.913
	시간제	전연령	0.0345→0.0419	0.0452→0.0557	0.0549→0.0637	0.0527→0.0560
	전일제	전연령	0.1703→0.1789	0.1877→0.2000	0.1751→0.1854	0.2121→0.2160

〈표 Ⅳ-3〉으로부터 노동시장참여율, 주당 근로시간, 시간제 혹은 전일제 노동시장참여 비율은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면 일정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층에 변화가 없는 것은 소득1층의 경우에는 2002년에 이미 지원단가의 100%가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상의 시뮬레이션은 자녀보육료 보조금 혜택의 증가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나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과 행태(behaviour)를 향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미 도출된 탄력성에 의해 계산된 것이므로 그 의미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보육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예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는 근로시간보다는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탄력성이 다소 큰 점을 감안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전일제 취업 기혼여성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상 효율적일 수 있다.

Ⅴ. 결 론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노동시장참여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Ⅲ장에서 표본선택모형과 다항로짓모형에 통제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자녀보육비용 부담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여부, 근로시간, 전일제와 시간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Ⅳ장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시장참여의 탄력성은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일제와 시간제 참여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음(−)의 탄력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역시 5세 이하의 자녀에게서는 보육비용이 음(−)의 유의한 탄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여부 결정에 비해서 보육비용의 탄력성 크기는 다소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자녀보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노동공급에 대한 제약조건이 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정부가 보육료 지원사업을 2005년과 2008년 계획수준으로 확대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노동패널의 2001~2002년 자료를 이용할 때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는 근로시간보다는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탄력성이 다소 큰 점을 감안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전일제 취업 기혼여성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상 효율적일 수 있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확대 전후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시간 결정의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탄력성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KIPF

참고문헌

황수경,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1, 한국노동연구원, 2002.

황수경,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 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3.

황윤재 · 최강식,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비모수적 접근-」, 『계량경제학보』, 제10권, 제1호, 1999. pp 35~69.

Arellano M. and B. Honere, *Handbook of Econometrics*, Edited by J.J. Heckman and E. Leamer, Vol.5, Ch.53, 2001.

Blundeli and Walker, "Modelling the Joint Determination of Household Labour Supplies and Commodity Demands," *Economic Journal*, Vol. 92, pp. 351~364, 1982.

Chamberlain, Gary, *Handbook of Econometrics*, Edited by Z. Griliches and M.D. Intriligator, Vol.2, Ch.22, 1984.

Connelly, R.,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1), 1992, pp. 83~90.

Jaumotte 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76, OECD, 2003.

Killingsworth, M. R. and J. J. Heckman,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I, O. Ashenfelter and R. Layard (eds.), Amsterdam: North-Holland, 1986, pp. 102~204.

Lewbel, Arthur, "Simple Estimators For Hard Problems : Endogeneity in Discrete Choice Related Models", *Working Paper*, Boston College, 2004.

Wooldridge, Jeffrey,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004.

규모별 임금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김 형 준 전문연구위원(kim@kipf.re.kr)

Ⅰ. 들어가는 말

최근,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표 Ⅰ-1〉은 우리나라의 실업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도까지 3% 미만을 유지하던 실업률은 IMF를 겪으며 1998년도에는 7%대로 올라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3%대까지 하락은 하였으나 아직도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다. 게다가 2004년도에는 실업이 소폭이지만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 초반의 청년들에서 실업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져, 30대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실업률이 7.4%에 이르고 있다.

〈표 Ⅰ-1〉 실업률의 추이

(단위: %)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2	2.5	5.3	1.4	1.1	0.9	0.4
1993	2.9	6.3	1.8	1.2	1.0	0.4
1994	2.5	5.4	1.6	1.3	0.8	0.3
1995	2.1	4.3	1.4	1.1	0.9	0.4
1996	2.0	4.4	1.4	1.1	0.9	0.4
1997	2.6	5.3	1.9	1.5	1.2	0.8
1998	7.0	11.4	5.7	5.6	5.3	2.4
1999	6.3	10.1	5.3	5.2	5.1	2.3
2000	4.1	7.1	3.4	3.3	2.9	1.3
2001	3.8	7.0	3.0	2.8	2.6	1.1
2002	3.1	6.3	2.8	1.9	1.8	1.0
2003	3.4	7.4	2.9	2.1	2.0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자발적 실업이라 함은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취업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이 비자발적인 실업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자발적인 실업에 관한 것이다. 자발적인 실업은 일자리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자발적인 실업의 징후들은 여러 가지의 지표들에서도 나타난다. 무엇보다 중요한 징후는 실업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3)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도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20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현재의 고용인원 대비 부족한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인력부족률은 3%를 넘어섰다고 한다.

먼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마찰적인 실업이라고 불리는 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한다. 만약 매년 5%의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이렇게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일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일자리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자발적인 실업률은 5%일 것이다.

한편, 매년 일부의 취업 대기자들이 자신에게 제안된 일자리를 마다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또한 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유형의 자발적인 실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규모별 임금격차가 증가하면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표 Ⅰ-2〉와 〈표 Ⅰ-3〉은 우리나라의 종업원 규모별 임금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Ⅰ-3〉에서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의 평균임금과 대비하여 종업원 수가 10~29인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1993년도에는 86.2%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76.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평균임금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의 차이는 다시 근로자의 취업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마찰적인 실업이라고 불리는 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한다. 한편, 매년 일부의 취업 대기자들이 자신에게 제안된 일자리를 마다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또한 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표 Ⅰ-2〉 종업원 규모별 임금 추이

(단위: 천원)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2002	1,532.8	1,294.6	1,414.2	1,509.2	1,572.1	1,717.9	1,842.3
2001	1,393.1	1,209.4	1,281.1	1,368.4	1,455.5	1,547.8	1,673.0
2000	1,313.9	1,145.9	1,222.0	1,290.5	1,360.5	1,501.5	1,546.2
1999	1,210.8	1,051.9	1,135.3	1,173.6	1,246.0	1,303.7	1,411.9
1998	1,148.1		1,080.5	1,093.1	1,124.4	1,195.5	1,293.2
1997	1,131.6		1,083.3	1,077.9	1,111.4	1,180.9	1,256.6
1996	1,049.9		994.2	1,010.4	1,022.9	1,113.2	1,153.1
1995	927.9		875.6	874.2	930.3	994.7	1,017.0
1994	827.6		783.3	779.9	840.2	857.0	910.3
1993	757.0		709.7	716.9	765.7	788.3	823.6

자료: 노동부,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표 Ⅰ-3〉 종업원 규모별 임금 비율의 추이

(단위: %)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2002	83.2	70.3	76.8	81.9	85.3	93.2	100.0
2001	83.3	72.3	76.6	81.8	87.0	92.5	100.0
2000	85.0	74.1	79.0	83.5	88.0	97.1	100.0
1999	85.8	74.5	80.4	83.1	88.2	92.3	100.0
1998	88.8		83.5	84.5	86.9	92.4	100.0
1997	90.1		86.2	85.8	88.4	94.0	100.0
1996	91.1		86.2	87.6	88.7	96.5	100.0
1995	91.2		86.1	86.0	91.5	97.8	100.0
1994	90.9		86.0	85.7	92.3	94.1	100.0
1993	91.9		86.2	87.0	93.0	95.7	100.0

자료: 노동부,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본고와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나라의 전직률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이다. 〈표 Ⅰ-4〉는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규모간 전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는 1991년도에 종업원 규모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던 근로자가 1992년도에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할 확률이 94.5%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2년도에 종업원 규모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에 근무할 확률은 0.4%에 불과함을 나타내고 있다. 종업원의 규모가 다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표 Ⅰ-4〉 규모별 전직률

(단위: %)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실업자
1~4인	94.5	6.5	3.2	2.2	2.6	2.4	17.4
5~9인	1.4	80.7	2.7	1.1	1.1	0.8	8.1
10~49인	0.9	5.4	85.7	4.1	2.6	2.1	12.8
50~99인	0.2	0.5	1.5	84.9	2.0	0.9	4.3
100~299인	0.2	0.7	1.0	2.0	85.7	1.3	3.9
300인 이상	0.2	0.5	0.8	1.0	1.8	88.1	4.6
실업자	0.7	2.1	1.8	1.7	1.6	1.2	29.6
비경제활동인구	2.0	3.6	3.4	3.0	2.8	3.0	19.3

자료: 노동부,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규모별 임금격차가 크면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취업 대기자가 작은 규모의 사업체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다고 하자. 그 취업 대기자는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미래의 모든 임금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이 제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전직이 자유롭지 못하고 기업의 규모별 임금격차가 크다면, 이 취업 대기자는 다음 기에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이 제의를 거절할 수도 있다. 즉, 자발적인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규모별 임금격차가 크면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취업 대기자는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미래의 모든 임금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사업체로부터의 취업 제의를 거절할 수 있다.

Ⅱ. 단순 모형

여기에서는 기업의 규모별 임금격차가 커질 때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단순한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기서 다루는 모형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여기에서는 규모별 임금격차나 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모든 현실들은 과감히 추상함으로써 단순한 이론적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규모별 임금격차가 커질 때 자발적인 실업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에 대하여 살펴보자.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다. 본 모형에서는 대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는 두 기업만이 시장에 존재하며 노동의 수요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단순화를 위해 한 단위의 노동을 더 사용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W_{대}$원만큼 증가하여 대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은 $W_{대}$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소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은 $W_{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두 기업간 임금격차 D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qquad D \equiv (W_{대} - W_{소}) / W_{소}$$

또한 두 기업은 매년 각각 1단위의 노동을 신규로 채용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노동의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2단위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전선에 참여한다. 어떤 t기에 취업을 원하는 노동자의 수는 전기에 실업 상태에 있었던 U_{t-1}만큼의 노동자와 새로이 취업전선에 참여한 2단위만큼의 노동자를 합한 수치가 된다. 그리고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한 번 직장에 취직을 하면 전직을 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1]. 또한 노동자들은 영원히 산다고 가정하며[2], 모든 노동

1) 뒤에서 이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로 한다.
2) 뒤에서 이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로 한다.

자들이 다음 기의 소득을 현재 기의 가치로 환산할 때는 할인율(discount factor) δ를 적용한다.

기업들은 매기에 채용을 하는데 채용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기업이 동시에 채용공고를 낸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취업 대기자들은 이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를 하며 기업들은 자기의 기업에 응시한 취업 대기자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만큼의 취업 대기자에게 취업을 제의하게 된다. 취업 제의를 받은 취업 대기자는 어디에 취업할 것인지 또는 실업 상태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만큼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또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채용이나 응시에는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자신의 제의를 거절한 기업이나 취업 대기자에게는 같은 기에는 다시 똑같은 제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기업이 노동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노동자의 능력이다. 노동자들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차이는 θ라는 변수로 나타난다. 변수 θ는 노동자들이 처음 노동시장에 들어올 때 결정되며, [0,1]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포(uniform distribution)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기업들은 노동자의 능력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지는 못하며 단지 학교의 성적과 같은 취업자의 능력에 대한 신호(signal)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능력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높은 신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호가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확률적으로만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즉, 신호는 능력을 평균으로 하는 균등 분포 $U[0,2\theta]$에 따라 관찰된다. 그리고 이 신호는 매기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기업은 능력이 있는 노동자를 채용하려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찰한 신호(signal)가 노동자의 능력에 대한 유일한 척도이므로 신호가 좋은 응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이며, 신호가 좋은 순서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수만큼의 취업 대기자에게 취업 제의를 하게 된다.

취업을 원하는 취업 대기자는 응시에 따른 비용이 없으므로 항상 모든 채용공고에 응모를 하게 된다. 또한 취업 대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채용에 관한 제의(offer)를 받으면, 미래 수입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지 아니면 실업을 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어떤 취업 대기자가 대기업에 취업한다면, 이 취업 대기자는 매기에 $W_{대}$의 임금을 받으므로 이 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2) $\quad V_{대} = W_{대}/(1-\delta)$

취업을 원하는 취업 대기자는 응시에 따른 비용이 없으므로 항상 모든 채용공고에 응모를 하게 된다. 또한 취업 대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채용에 관한 제의(offer)를 받으면, 미래 수입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지 아니면 실업을 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소기업에 취업하였을 때의 현재가치를 구해보면 아래와 같다.

(3) $V_{소}=W_{소}/(1-\delta)$

이제 이 취업 대기자가 현재 기에 취업을 포기하고 실업을 선택하였다고 하자. 이 취업 대기자는 다음 기에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으며, 다음 기에도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실업의 현재가치는 이 취업 대기자가 느끼는 각 확률에 의존하게 된다. 이 취업 대기자가 다음 기에 채용 제의를 받지 못할 확률을 b라고 하고 다음 기에 채용 제의를 받을 상황 중에서 대기업으로 제의를 받을 확률을 a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 기에 대기업으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을 확률은 $(1-b)\times a$이고 소기업으로부터만 채용 제의를 받을 확률은$(1-b)\times(1-a)$이며 다음 기에도 실업 상태에 있을 확률은 b이다. 그러므로 다음 기에 취업할 확률을 고려하면 실업의 현재가치($V_{실업}$)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4) $$V_{실업} = \delta\times[(1-a)\times(1-b)\times V_{소} + a\times(1-b)\times V_{소} + b\times V_{U}]$$
$$= \delta\times(1-b)\times V_{소} + (1+a\times D)/(1-\delta\times b)$$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소기업의 그것보다 높다고 가정하고 있음으로 $V_{대} > V_{소}$가 성립한다. 또한 $V_{대} > V_{실업}$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소기업에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 대기자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으면 이 제의를 항상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V_{소}$와 $V_{실업}$ 중에서 어느 값이 큰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위의 식에서 $a \leq (1-\delta)/[\delta*D*(1-b)]$ 이면 $V_{소}\geq V_{실업}$이고, $a > (1-\delta)/[\delta*D*(1-b)]$ 이면 $V_{소}< V_{실업}$임을 알 수 있다. 즉, 다음 기에 대기업으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을 확률이 높거나(a↑), 기업의 규모간 임금격차가 크거나 (D↑), 또는 다음 기에 채용 제의를 받을 확률이 높은 ((1−b)↑) 경우에는 $V_{실업} > V_{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취업 대기자는 현재 기에 소기업에 취업을 하기 보다는 다음 기에 대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엿보기 위해 실업을 선택하게 된다.

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할인율인 δ=0.95를 사용하자. 2002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임금격차(D)는 약 0.2 정도이므로 어떤 취업 대기자가 다음 기에 취업을 할 확률이 70%이

며(b=0.3)이며 이 중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38%이면 이 취업 대기자는 이번 기에 소기업에 취업을 하느니 실업을 선택하게 된다. 1998년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임금격차(D)는 약 0.11 정도였으므로 다음 기에 취업을 할 확률이 70%라면 이 중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68%가 넘어야 실업을 선택하였다.

위의 모형에서 임금이 낮은 기업에 취직하기보다 실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전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대기자들은 지금 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평생 낮은 임금을 받을지 또는 1기 동안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다음 기에 대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엿볼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취업 대기자가 다음 기에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면, 이 취업 대기자는 현재 기에 소기업에 취업을 하느니 실업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이 취업 대기자가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 또는 소기업에 취업을 할지는 그 취업 대기자가 다음 기에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을 얼마나 높게 보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이제 취업 대기자들이 다음 기에 대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을 확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어떤 취업 대기자의 능력이 θ라고 하고 이 취업 대기자가 현재기에 실업을 선택하였다고 하자. 이 취업 대기자는 다음 기에 현재 기에서 실업을 선택한 취업 대기자와 다음 기에 새로이 구직 전선에 참여하는 취업 대기자와 경쟁을 하게 된다.

이때 다음 기에 대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을 수 있는가는 다음 기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호(signal)와 다른 경쟁자들의 신호에 의존하게 된다. 만약 이 취업 대기자가 능력이 있다면 그만큼 다음 기에 자신의 신호가 클 확률이 커지고 다음 기에 대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 취업 대기자의 능력 θ가 작다면 그만큼 다음 기에 자신의 신호가 클 확률이 작아지고 다음 기에 대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을 확률도 작아지게 된다. 즉, 다음 기에 대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을 확률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θ와 다른 경쟁자들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능력 θ인 취업 대기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 대기업과 소기업에 응시를 하였지만 대기업으로부터는 취업 제의를 받지 못하고 소기업으로부터만 취업 제의를 받았다고 하자. 이 취업 대기자가 소기업으로부터의 이 취업 제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음 기에 다시 한번 대기업에 응시하기 위해 실업을 선택할지는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와 다음 기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이 취업 대기자가 자신의 능력 θ는 큰데, 현재 기의 자신의 신호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한다면, 이 취업 대기자는 다음 기에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것이며, 그 결과로 현재 기에 소기업에 취업을 하느니 실업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에 이 취업 대기자가 자신의 능력 θ가 낮다면, 이 취업 대기자는 다음 기

능력 θ인 취업 대기자가 소기업으로부터의 취업 제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음 기에 다시 한번 대기업에 응시하기 위해 실업을 선택할지는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와 다음 기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에 따라 달라진다.

에도 자신의 신호가 높을 확률이 작으므로 대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높지 않으리라 판단할 것이며, 그 결과로 현재 기에 소기업으로부터의 취업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때 취업 대기자들이 위의 결정을 하는 데 기업의 규모별 임금격차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임금격차가 전혀 없다면, $V_{소} \geq V_{실업}$이 항상 성립하여 취업 대기자는 자신이 받은 취업 제의를 항상 수락할 것이며, 여기서 다루는 자발적인 실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규모별로 임금격차가 크면 취업 대기자들은 소기업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실업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앞의 식에서 보듯이 규모별 임금격차가 클수록 이런 가능성이 커져서 보다 많은 취업 대기자들이 실업을 선택하여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의 모형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몇 가지의 극단적인 가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런 가정들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우선 앞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영원히 산다고 가정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을 완화하여 일하는 기간이 유한하다고 하더라도 위의 결론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예상하는 취업기간이 몇 기밖에 안 된다면, 현재 기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실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예상 취업기간이 길면, 현재 기의 임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실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하겠다. 이는 청년의 경우 예상하는 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규모별 임금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적인 실업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하며, 최근의 청년실업의 증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다 하겠다.

둘째로, 모형에서는 전직의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였으나, 전직이 가능하더라도 일정한 조건만 만족되면 위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표 Ⅱ-1〉은 우리나라의 전직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보면, 전기에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다음 기에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옮아갈 확률은 7.30%인데 반해 실업 상태에 있던 근로자가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옮아갈 확률은 52.69%이다. 이 표에서와 같이 전직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앞서의 결론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표 Ⅱ-5〉 규모별 전직률

(단위: %)

		1991년		
		100인 이상	100인 미만	실업자
1992년	100인 이상	97.86	7.30	52.69
	100인 미만	1.00	91.34	10.49
	실업자	1.14	1.39	36.57

자료: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2.

물론 이번 기에 소기업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다음 기에 새로이 취업전선에 나서는 것이 자유롭다면 본고에서와 같은 자발적인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현재 기에 소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실업을 선택하는 것 사이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현재 기에 임금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가져오는 차이밖에는 없으므로 항상 소기업에라도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는 매기의 신호(signal) 사이의 상관관계가 여기에서의 가정보다 더 높다든가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Ⅲ. 정리하며

실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경기변동일 것이다. 최근의 실업률 증가는 기본적으로 최근의 소비감소와 그에 따른 경기의 침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의 변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실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업종 또는 일부의 중소기업에서 노동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은 경기의 변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상대적인 청년실업의 증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기변동 이외의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가 이러한 현상들을 만든 이유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규모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 자발적인 실업은 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업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임금수준이 낮은 분야에서는

규모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 자발적인 실업은 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업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임금수준이 낮은 분야에서는원하는 만큼의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여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원하는 만큼의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여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본고의 결론은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2.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2003

우리나라 소득세의 계층별 부담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소고

성 명 재 선임연구위원(sung@kipf.re.kr)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축소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97~98년의 경제위기 동안에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실업률 상승과 불완전 취업자 및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봉제 확산 및 IT 및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고액소득자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상대소득격차의 축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소득세 개편을 통한 소득재분배 문제가 관심을 모으면서 중산층과 서민층 보호를 위한 소득세 경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탈루소득 포착을 통한 과세의 형평 제고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 가운데에는 합리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발의의 목적이나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에서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공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200만명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가 절반 정도인 6백만명에 육박한다. 이미 대부분의 서민근로자들은 면세자로서 소득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소득세 경감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반면에 근로소득공제의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상대소득격차의 축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소득세 개편을 통한 소득재분배 문제가 관심을 모으면서 중산층과 서민층 보호를 위한 소득세 경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탈루소득 포착을 통한 과세의 형평 제고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확대는 과세자들의 과세소득금액을 낮춤으로써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증대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과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과 기능 등을 짚어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해 본다.

Ⅱ. 우리나라 소득세의 구조와 위상

1. 소득세의 구조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함께 가장 비중이 높은 세목으로,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세목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림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종합소득세가 소득세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세로 세분된다.

소득세는 징수방법에 따라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신고분 소득세는 종합소득세[1], 을종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로 구성되고, 원천분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구성된다. 세수 측면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의 네 가지 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이며 누진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 신고분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는 앞서 소개한 종합소득세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신고분 소득세로서의 종합소득세는 사실상 협의의 종합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업소득세(신고분)로 구성된다.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분리과세되고 있어 흔히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즉,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세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2]. 그러므로 법리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의 일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구별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림 Ⅱ-1]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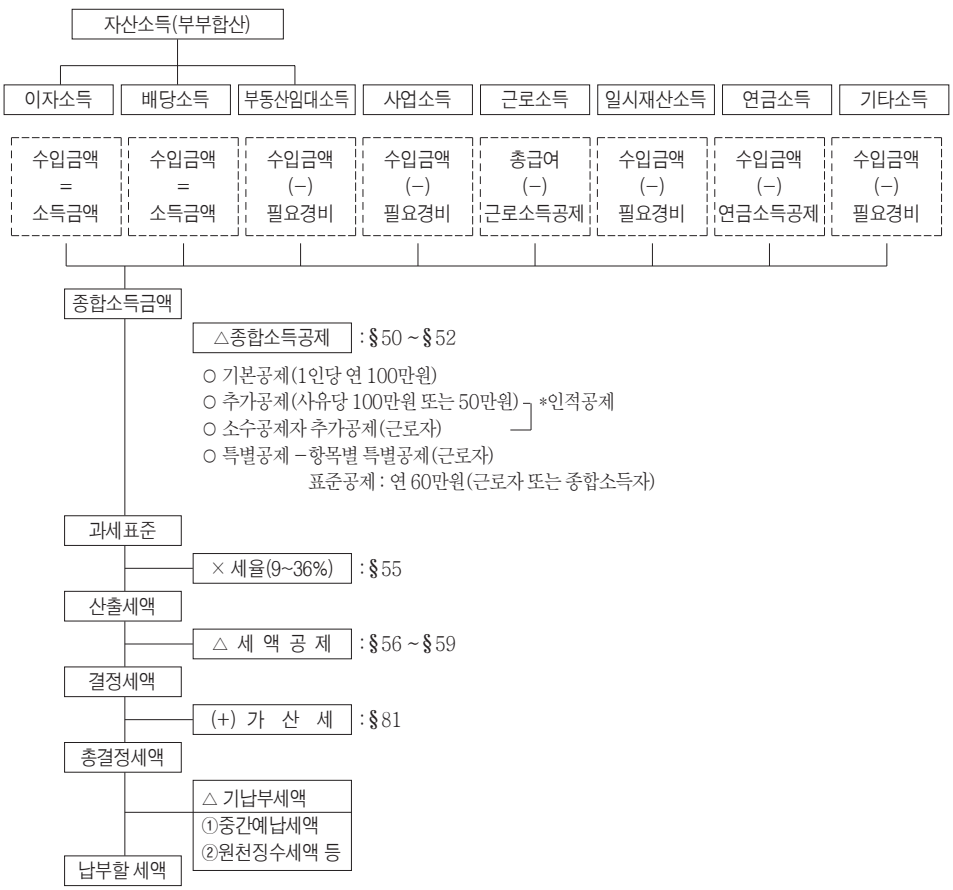

2) 성명재 · 전영준(1998)의 연구에 의하면 근로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세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므로 법리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의 일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구별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각종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에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세율구간(구분기준액: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별로 9%, 18%, 27%, 36%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후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에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로소득세는 사업소득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비하여 상당히 큰 규모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반면에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60만원 정액의 표준공제가 소득공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의 면세점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동일하다면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더 높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자영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과소보고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 수준이 근로소득자들보다 반드시 더 높다고는 볼 수 없다.

2. 소득세의 세수와 납세인원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부가가치세(2003년 세수: 33조 4천억원)와 법인세(25조 6천억원)에 이어 세수규모가 세 번째로 큰 기간세 중의 하나이다. 2003년에는 소득세의 세수가 약 20조 8천억원에 이르러 국세수입 114조 7천억원의 18.1%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의 세수비중이 낮은 편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총조세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에 미국(42%), 호주(37%), 영국(29%), 독일(25%), 프랑스(18%) 등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소득세의 비중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약 21%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표 Ⅱ-1〉 개인소득세의 총조세수입 비율

(단위: %)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미국	39.1	37.8	37.7	36.3	40.5	40.7	42.4
호주	44.0	45.2	43.0	40.6	42.6	43.3	36.7
일본	24.3	24.7	26.8	21.4	19.2	18.5	20.6
한국	11.5	13.4	18.5	19.2	18.8	15.6	14.6
프랑스	11.6	11.5	11.8	11.3	17.2	17.4	18.0
독일	29.6	28.7	27.6	27.5	25.0	25.1	25.3
영국	29.4	26.0	27.1	27.1	27.3	28.7	29.2

원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통계 국제비교』, 2003.
자료: 전병목·원종학(2003)에서 재인용

전술하였듯이 소득세의 세수는 대부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부터 징수된다. 2003년 현재 근로소득세는 8조 4천억원이 징수되어 소득세 전체의 40.2%를 차지하였다. 종합소득세는 4조 2천억원으로 비중이 20.4%에 이르렀다. 두 소득세의 세수를 합하면 전체 소득세 세수의 60.7%로 약 2/3에 육박한다.

단일 세목으로 세수규모가 가장 큰 것은 부가가치세이다. 그렇지만 납세인원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단연 부가가치세를 압도한다. 근로소득세의 납세인원은 2002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202만명에 이른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납세인원이 약 416만명이다. 두 가지 소득세만 하더라도 납세인원이 약 1,600만명에 이르러 전 인구의 1/3 수준이다.

이처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세수규모와 납세인원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기간세임을 보여준다.

〈표 Ⅱ-2〉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 추이

(단위: 천명,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납세의무자	10,212	10,212	9,276	9,390	11,102	11,555	12,017
과세자	6,958 (68.1)	6,944 (68.0)	6,269 (61.6)	5,520 (58.8)	5,934 (53.4)	6,446 (55.8)	6,187 (51.5)

주: ( ) 안은 과세자 비율임.

소득세의 세수는 대부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부터 징수된다. 2003년 현재 근로소득세는 8조 4천억원이 징수되어 소득세 전체의 40.2%를 차지하였다. 종합소득세는 4조 2천억원으로 비중이 20.4%에 이르렀다. 두 소득세의 세수를 합하면 전체 소득세 세수의 60.7%로 약 2/3에 육박한다.

〈표 Ⅱ-3〉 종합소득세 과세인원 비율 및 1인당 결정세액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납세인원(A)		3,657,253	3,437,818	3,495,183	3,407,662	3,480,371	3,808,476	4,160,795
확정신고인원(B)		1,247,442	1,299,442	1,225,614	1,342,153	1,616,244	1,782,369	2,010,363
확정신고비율(B/A)		34.1	37.8	35.1	39.4	46.4	46.8	48.3
결정세액(C)		3,669,079	4,080,024	3,015,607	3,557,819	4,803,125	5,537,259	5,745,486
1인당 세액	(C/A)	1,003,234	1,186,806	862,789	1,044,065	1,380,061	1,453,930	1,380,863
	(C/B)	2,941,282	3,139,828	2,460,487	2,650,830	2,971,782	3,106,685	2,857,93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Ⅲ.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부담구조

1. 가구유형별 · 소득계층별 가구소득 분포

도시가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약 3,641만원(2003년 현재)으로 근로자 가구의 3,484만원보다 4.5%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계층별 소득평균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이 조금 더 높다. 다만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에는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자영업자 가구의 10분위 소득평균이 근로자 가구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역전된 모습이다. 아마도 이는 경제위기 이후 연봉제의 확산과 함께 금융 및 정보산업 등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억대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던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1〉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가구기준 추정치)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로자	1995	9,178	13,403	15,740	17,739	19,942	22,195	24,957	28,386	33,053	44,795	22,479
	1996	10,243	14,658	17,250	19,802	22,367	24,982	28,037	31,602	36,719	51,091	25,371
	1997	6,792	13,274	17,104	20,136	22,909	25,759	29,110	33,211	39,170	54,484	25,082
	1998	4,979	9,930	13,799	16,793	19,704	22,625	25,762	29,857	35,414	51,381	21,671
	1999	9,453	13,757	16,635	19,140	21,748	24,547	27,822	31,965	37,914	54,087	25,173
	2000	10,206	15,166	18,206	21,166	24,261	27,477	31,218	35,880	42,785	64,498	27,985
	2001	11,171	16,339	19,311	22,314	25,226	28,579	32,552	37,852	45,010	65,226	29,662
	2002	11,343	16,754	20,315	23,976	27,127	31,043	35,106	40,684	48,946	69,315	31,509
	2003	11,974	18,436	22,736	26,072	29,904	33,456	38,043	43,790	51,735	78,318	34,836
자영자	1995	9,953	13,318	15,654	17,775	19,954	22,248	24,747	28,347	33,241	46,251	24,104
	1996	10,388	14,809	17,274	19,754	22,378	25,082	28,156	31,914	37,174	51,899	26,494
	1997	8,742	13,627	17,109	20,185	23,024	25,570	28,974	32,992	38,813	57,058	28,756
	1998	6,341	10,433	13,736	16,891	19,875	22,379	25,800	29,464	35,390	51,589	25,551
	1999	9,869	13,965	16,724	19,060	21,747	24,459	27,752	32,239	37,759	53,842	26,754
	2000	10,850	15,040	18,326	21,099	24,231	27,340	31,058	36,118	42,817	62,598	30,972
	2001	12,188	16,284	19,475	22,319	25,368	28,619	32,516	37,724	44,895	65,170	31,678
	2002	12,201	16,653	20,449	23,936	27,229	30,948	35,125	40,836	48,681	72,307	34,722
	2003	12,397	18,901	22,714	26,140	29,729	33,428	37,940	43,760	52,829	74,170	36,406

주: 1.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직접 추정한 수치임.
2. 1~10은 소득분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은 최하위 10% 소득층, 10은 최상위 10% 소득층을 나타냄.

〈표 Ⅲ-2〉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대비 소득배수(가구기준 추정치)

(단위: 배)

		1	2	3	4	5	6	7	8	9	10
근로자	1995	0.41	0.60	0.70	0.79	0.89	0.99	1.11	1.26	1.47	1.99
	2000	0.36	0.54	0.65	0.76	0.87	0.98	1.12	1.28	1.53	2.30
	2003	0.34	0.53	0.65	0.75	0.86	0.96	1.09	1.26	1.48	2.25
자영자	1995	0.41	0.55	0.65	0.74	0.83	0.92	1.03	1.18	1.38	1.92
	2000	0.35	0.49	0.59	0.68	0.78	0.88	1.00	1.17	1.38	2.02
	2003	0.34	0.52	0.62	0.72	0.82	0.92	1.04	1.20	1.45	2.04

〈표 Ⅲ-2〉에서는 소득계층별 상대소득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유형별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각 소득분위별 평균소득의 배수(상대비)를 구하였다. 그 결과 1~9분위의 경우에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1996년에 1,021만명의 납세의무자 가운데 696만명이 과세되어 과세자 비율이 68.1%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 51.5%까지 축소되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인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1996년 확정신고 비율이 34.1%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48.3%로 높아졌다.

는 가구유형에 따른 상대소득배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6~7분위 사이에서는 상대소득비가 1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소득은 대체로 60% 부근(50~70% 사이)임을 유추할 수 있다. 10분위의 경우에는 상대소득비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위의 〈표 Ⅲ-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소득에 대비한 상대소득비를 볼 때 중소득층을 포함하여 9분위까지의 소득계층에서는 상대소득비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에는 상대소득비가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1~2분위 등의 저소득층에서는 상대소득비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변화로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과세자 비율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세미달자 또는 면세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근로·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전 국민의 1/3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세부담을 지는 과세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표 Ⅲ-3〉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2002년 현재 과세자 비율이 51.5%에 이를 정도로 낮다. 〈표 Ⅲ-4〉에서 보듯이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확정신고자 비율은 48.3%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과세미달자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2명 중 한 명 꼴로 세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면세자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1996년에 1,021만명의 납세의무자 가운데 696만명이 과세되어 과세자 비율이 68.1%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1년을 제외하고는 과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 51.5%까지 축소되었다. 이와 반대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인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1996년에는 확정신고 비율이 34.1%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48.3%로 높아졌다.

〈표 Ⅲ-3〉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계급별 과세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

		납세의무자	과세인원과 세액				
			계	1천만원 이하	1천만~4천만원	4천만~8천만원	8천만원~
1996	인원	10,212	6,958	5,322	1,579	50	7
	(비중1)	(100.0)	(68.1)	(52.1)	(15.5)	(0.5)	(0.1)
	[비중2]	–	[100.0]	[76.5]	[22.7]	[0.7]	[0.1]
	결정세액	–	4,838,016	962,742	3,101,606	481,228	292,440
	[비중]	–	[100.0]	[19.9]	[64.1]	[9.9]	[6.0]
1997	인원	10,212	6,944	5,187	1,690	60	7
	(비중1)	(100.0)	(68.0)	(50.8)	(16.5)	(0.6)	(0.1)
	[비중2]	–	[100.0]	[74.7]	[24.3]	[0.9]	[0.1]
	결정세액	–	5,010,597	940,259	3,261,936	571,582	236,820
	[비중]	–	[100.0]	[18.8]	[65.1]	[11.4]	[4.7]
1998	인원	9,276	6,269	4,802	1,410	49	8
	(비중1)	(100.0)	(67.6)	(51.8)	(15.2)	(0.5)	(0.1)
	[비중2]	–	[100.0]	[76.6]	[22.5]	[0.8]	[0.1]
	결정세액	–	4,347,155	849,406	2,639,249	466,642	391,858
	[비중]	–	[100.0]	[19.5]	[60.7]	[10.7]	[9.0]
1999	인원	9,390	5,520	4,142	1,306	57	15
	(비중1)	(100.0)	(58.8)	(44.1)	(13.9)	(0.6)	(0.2)
	[비중2]	–	[100.0]	[75.0]	[23.7]	[1.0]	[0.3]
	결정세액	–	4,337,214	758,088	2,363,264	565,628	650,234
	[비중]	–	[100.0]	[17.5]	[54.5]	[13.0]	[15.0]
2000	인원	11,102	5,934	4,056	1,767	90	21
	(비중1)	(100.0)	(53.4)	(36.5)	(15.9)	(0.8)	(0.2)
	[비중2]	–	[100.0]	[68.4]	[29.8]	[1.5]	[0.4]
	결정세액	–	6,077,019	833,331	3,417,356	890,699	935,633
	[비중]	–	[100.0]	[13.7]	[56.2]	[14.7]	[15.4]
2001	인원	11,555	6,446	4,236	2,079	110	21
	(비중1)	(100.0)	(55.8)	(36.7)	(18.0)	(1.0)	(0.2)
	[비중2]	–	[100.0]	[65.7]	[32.3]	[1.7]	[0.3]
	결정세액	–	7,146,091	897,328	4,195,446	1,051,014	1,002,303
	[비중]	–	[100.0]	[12.6]	[58.7]	[14.7]	[14.0]
2002	인원	12,017	6,187	4,083	1,949	127	28
	(비중1)	(100.0)	(51.5)	(34.0)	(16.2)	(1.1)	(0.2)
	[비중2]	–	[100.0]	[66.0]	[31.5]	[2.1]	[0.5]
	결정세액	–	6,933,422	747,714	3,849,146	1,140,186	1,196,376
	[비중]	–	[100.0]	[10.8]	[55.5]	[16.4]	[17.3]

주: 1. 1996년의 경우, 총납세의무자 데이터가 없어 1997년 자료를 이용
2. 인원 중 (비중1)은 과세구간별 납세의무자의 점유비를 나타냄.
3. 인원 중 [비중2]는 과세인원 중 과세구간별 납세의무자의 점유비를 나타냄.
4. 결정세액 중 [비중]은 결정세액 중 과세구간별 세액의 점유비를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자 비율이 낮아진 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비롯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의 폐지 등을 통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과 영수증 복권제,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과표양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2002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세액기준 소득계층		신고인원	소득금액		결정세액	
총납세자 대비	과세자 대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2,010,363	42,163,364	100.0	5,745,486	100.0
상위 4.8%	상위 10%	201,036	21,900,014	51.9	4,421,209	76.9
4.8~9.7%	10~20%	201,036	6,439,528	15.3	626,602	10.9
9.7~14.5%	20~30%	201,036	3,906,975	9.3	285,896	5.0
14.5~19.3%	30~40%	201,036	2,753,237	6.5	150,368	2.6
19.3~24.2%	40~50%	201,036	2,091,360	5.0	96,378	1.7
24.2~29.0%	50~60%	201,036	1,651,000	3.9	65,517	1.1
29.0~33.8%	60~70%	201,036	1,319,353	3.1	44,226	0.8
33.8~38.7%	70~80%	201,037	1,047,353	2.5	29,772	0.5
38.7~43.5%	80~90%	201,037	782,700	1.9	21,256	0.4
43.5~48.3%	90~100%	201,037	271,844	0.6	4,262	0.1

주: 1. 2002년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4,160,795명임.
2. ( ) 안은 총납세인원 대비 누적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자 비율이 낮아진 데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낮았던 데에 일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비롯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의 폐지 등을 통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과 영수증 복권제,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과표양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수준의 조정이 크지 않았던 점도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다.

〈표 Ⅲ-5〉 근로소득공제의 변천

(단위: 만원)

	1996	1997~1998	1999~2000	2001	2002~2003. 7	2003. 7~
구간별 공제율	~400: 전액 400~ : 30%	~500: 전액 500~ : 30%	~ 500: 전액 500~1500: 40% 1500~ : 10%	~500: 전액 500~1500: 40% 1500~4500: 10% 4500~ : 5%	~500: 전액 500~1500: 45% 1500~3000: 15% 3000~4500: 10% 4500~ : 5%	~500: 전액 500~1500: 50% 1500~3000: 15% 3000~4500: 10% 4500~ : 5%
공제한도 (상한)	800	900	1200	없음	없음	없음

주: 2003년 7월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500만~1,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표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됨. 경과조치로 2003년 소득은 공제율을 1000분의 475로 함.

3. 소득종류별 소득세 부담의 차이

종합소득세의 납세자는 대부분 자영사업자들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총납세인원 416만명 가운데 201만명이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머지 215만명은 대부분 과세미달자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결과, 총결정세액은 5조 7천억원이었으며, 이를 확정신고 인원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286만원 수준이다[3].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2002년 현재 총납세의무자가 1,202만명으로 종합소득세보다 납세인원이 훨씬 많다. 이 가운데 과세인원은 619만명으로 절반을 조금 상회한다.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의 결정세액이 6조 9천억원이므로 면세자까지 포함한 총납세자 1인당 세부담액은 58만원이고 과세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액은 112만원에 이른다.

근로소득세의 납세인원은 종합소득세의 약 3배이다. 그러나 총결정세액은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의 1.2배에 불과하다. 납세인원의 차이에 비해 결정세액의 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소득차이 때문이다. 자영사업자의 평균소득은 근로소득자보다 높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평균소득이 더 높은 자영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더 높은 것은 당연하다.

둘째, 양자 간의 소득공제의 차이도 하나의 요인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대부분 인적공제에 한정되어 있어 공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다. 즉, 종합소득세의 경우에

3) 2002년의 경우 과세미달자(약 215만명)까지 포함한 납세인원 1인당 결정세액은 약 138만원이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얼마 정도의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제의 소득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신고율, 소득공제 수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중 어느 쪽의 소득세 부담이 더 높은지는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는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함께 60만원 정액의 표준공제가 소득공제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외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근로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범위가 상당히 넓은 근로소득공제와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한 각종 특별공제가 허용됨으로써 면세점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사업소득세보다 소득공제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세 부담의 증가속도가 더디다.

물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숨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반면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 이는 사업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위의 두 가지 요인보다 효과가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에서 평균 세부담액이 더 작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얼마 정도의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제의 소득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신고율, 소득공제 수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중 어느 쪽의 소득세 부담이 더 높은지는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4].

4. 소득계층별 세부담 구조

전술하였듯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소득세로서 여러 가지 조세 가운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낮다는 점은 그만큼 두 소득세의 세부담 구조가 매우 누진적

4)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사이에 소득공제 체계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비용 개념과 소득을 창출하는 자본의 형태 차이(물적자본(사업소득자) 또는 인적자본(근로소득자)의 여부) 등과 같이 소득종류별 특성 차이로 인해 과세가 구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소득유형 간 소득포착률 차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도 소득유형별 소득공제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두 유형 간의 소득공제 차이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직한 성실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역차별의 소지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영사업자들의 성실신고도가 높아지면서 세제도 함께 개편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체계는 초과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세 과표가 증가할수록 소득세 부담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02년 현재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전체 1,200만명의 납세의무자 가운데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상[5]인 최상위소득자 2만 8천명(비중: 0.2%)의 납세자가 총결정세액 6조 9천억원 중 17.3%에 해당하는 약 1조 2천억원의 세금을 부담하였다. 과표소득이 4천만~8천만원 사이의 차상위 고소득 납세자 1.1%와, 1천만~4천만원 사이의 차차상위 납세자 16.2%는 각각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의 16.4%와 55.5%를 부담하였다. 결국 근로소득세 납세자 1,200만명 중 최상위 17.5%의 납세자(약 210만 4천명)가 근로소득세의 89.2%를 부담하였다. 흔히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대중세로서 근로소득세가 일컬어지지만 세수의 거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세 납세자 중 약 1/6에 불과한 소수의 고소득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근로소득세의 세부담 구조가 누진적임을 시사해 준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보다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 2002년 현재 416만명의 납세의무자 가운데 최상위 4.8%의 납세자(약 20만 1천명)가 부담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전체의 7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상위 4.8%와 차차상위 4.8%의 납세자는 각각 종합소득세의 10.9%와 5.0%를 부담하였다. 이를 누적하면 종합소득세 최상위 14.5%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수의 92.5%를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세에 비해 좀더 낮은 비율의 납세인원이 좀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한 것이다. 그만큼 종합소득세의 누진구조가 근로소득세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누진구조는 2002년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다. 통계자료가 이용 가능한 1996년 이후 최근까지 그러한 추세는 대동소이하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인원이 가장 많고 대중세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 소득세는 소수의 최상위 소득자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상당수의 납세자들은 면세자로 분류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현행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체계가 최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득탈루 문제와 과세의 형평 문제를 비롯하여 세율 및 공제체계의 적정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소득공제 전의 소득은 대략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인원이 가장 많고 대중세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 소득세는 소수의 최상위 소득자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상당수의 납세자들은 면세자로 분류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Ⅳ.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1. 세부담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흔히 조세의 소득재분배 문제를 논함에 있어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양자는 개념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세부담이 누진적(역진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의 증가율이 세부담의 증가율보다 더 큰(작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라면 세부담 공제 후의 소득순서에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正(負)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게 된다[6].

세부담의 누진도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양자가 正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일반적인 함수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필자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하여, 소득세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 세수규모, 총소득재분배 효과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본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세 부과 전후의 상대소득격차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액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득세 총세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세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 × 세수규모[7]

---

6)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부담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세부담이 누진적이지만 세금 부과로 인해 부과 전후의 소득 서열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비록 소득세 부담이 누진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의 상대소득격차가 총소득보다 더 커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소득의 증가분보다 소득세의 증가분이 훨씬 더 클 경우에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7) 위의 식은 다음의 항등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출되었다. 즉,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총세수) × 총세수'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중 우변의 첫째항은 '소득세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관계는 정책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런데 우변의 두 변수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정책의지를 담은 선택변수(choice variable)로 변환하는 순간 상기의 항등식은 방정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위의 식은 소득세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선택변수로 하여 방정식화한 것이다.

일례로 세수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 과세대상의 범위나 세율체계 등을 개편하여 누진도를 강화하면 세금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게 되어 총소득재분배 효과는 증대된다.

소득세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8].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러나 높은 누진도가 반드시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흔히 소득세가 누진적일수록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소득세의 누진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규모가 작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2.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보다 작다(〈표 Ⅳ-1〉~〈표 Ⅳ-2〉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여년 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77(1998년)~4.46%(1988년) 정도이다[9].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3%대 중반대 정도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득세만을 분리하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만을 특정한 경우가 많지 않지만, 낮게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4% 내지 5%, 높게는 9% 수준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누진과세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소득공제가 과다하여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부담과의 형평 문제로 인해 지나치게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 것도 한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은 세부담의 누진도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세 규모(비중)가 작기 때문이다(〈표 Ⅱ-1〉 참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3.76%로 추정된다(〈표 Ⅳ-1〉 참조).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등과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수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모의실험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3.76% 정도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시나리오에 따라 4.03~6.33% 정도로 증대된다. 이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캐나다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 영국, 뉴질랜드 수준에 근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때 소득세수는 현재보다 26~100% 증대된다. 2003년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수가 12조 6천억원에 이르므로 이 정도의 세수증대 규모는 3.3조~12.6조원에 이를 만큼 큰 규모이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선

8)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ceteris paribus), 일반적으로 세금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부담의 누진도에 대한 (약)단조증가 함수(weakly monotonic increasing function)로 표현될 수 있다.
9) 최근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의 대부분은 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러나 높은 누진도가 반드시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아무리 소득세의 누진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규모가 작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표 Ⅳ-1〉 소득단계별 지니계수(도시가구)

	기준소득				소득재분배 효과			
	시장소득 (A)	총소득 (B)	가처분소득		이전소득	소득세	기여금	계
			소득세 후 (C)	소득세·기여금 후 (D)	B-A ((B-A)/A)	C-B ((C-B)/A)	D-C ((D-C)/A)	D-A ((D-A)/A)
1982	0.28689	0.28678	0.27683	0.28469	−0.00011 (−0.04%)	−0.00995 (−3.47%)	0.00786 (2.74%)	−0.00220 (−0.77%)
1983	0.28440	0.28270	0.27420	0.27134	−0.00170 (−0.60%)	−0.00850 (−2.99%)	−0.00286 (−1.01%)	−0.01306 (−4.59%)
1984	0.28097	0.28109	0.27175	0.26974	0.00012 (0.04%)	−0.00934 (−3.32%)	−0.00201 (−0.72%)	−0.01123 (−4.00%)
1985	0.27375	0.27563	0.26508	0.26268	0.00188 (0.69%)	−0.01055 (−3.85%)	−0.00240 (−0.88%)	−0.01107 (−4.04%)
1986	0.27544	0.27368	0.26354	0.26114	−0.00176 (−0.64%)	−0.01014 (−3.68%)	−0.00240 (−0.87%)	−0.01430 (−5.19%)
1987	0.28196	0.27986	0.26902	0.26726	−0.00210 (−0.74%)	−0.01084 (−3.84%)	−0.00176 (−0.62%)	−0.01470 (−5.21%)
1988	0.27242	0.27082	0.25866	0.25696	−0.00160 (−0.59%)	−0.01216 (−4.46%)	−0.00170 (−0.62%)	−0.01546 (−5.68%)
1989	0.27201	0.26957	0.25871	0.25734	−0.00244 (−0.90%)	−0.01086 (−3.99%)	−0.00137 (−0.50%)	−0.01467 (−5.39%)
1990	0.25433	0.25236	0.24301	0.24196	−0.00197 (−0.77%)	−0.00935 (−3.68%)	−0.00105 (−0.41%)	−0.01237 (−4.86%)
1991	0.24224	0.24189	0.23291	0.23237	−0.00035 (−0.14%)	−0.00898 (−3.71%)	−0.00054 (−0.22%)	−0.00987 (−4.07%)
1992	0.23897	0.24147	0.23090	0.23011	0.00250 (1.05%)	−0.01057 (−4.42%)	−0.00079 (−0.33%)	−0.00886 (−3.71%)
1993	0.24260	0.24242	0.23363	0.23298	−0.00018 (−0.07%)	−0.00879 (−3.62%)	−0.00065 (−0.27%)	−0.00962 (−3.97%)
1994	0.24205	0.24293	0.23409	0.23345	0.00088 (0.36%)	−0.00884 (−3.65%)	−0.00064 (−0.26%)	−0.00860 (−3.55%)
1995	0.24383	0.24280	0.23378	0.23293	−0.00103 (−0.42%)	−0.00902 (−3.70%)	−0.00085 (−0.35%)	−0.01090 (−4.47%)
1996	0.24711	0.24685	0.23820	0.23730	−0.00026 (−0.11%)	−0.00865 (−3.50%)	−0.00090 (−0.36%)	−0.00981 (−3.97%)
1997	0.28192	0.28102	0.27201	0.27187	−0.00090 (−0.32%)	−0.00901 (−3.20%)	−0.00014 (−0.05%)	−0.01005 (−3.56%)
1998	0.31374	0.31121	0.30251	0.30272	−0.00253 (−0.81%)	−0.00870 (−2.77%)	0.00021 (0.07%)	−0.01102 (−3.51%)
1999	0.26915	0.26726	0.25860	0.25741	−0.00189 (−0.70%)	−0.00866 (−3.22%)	−0.00119 (−0.44%)	−0.01174 (−4.36%)
2000	0.28281	0.27988	0.27068	0.27036	−0.00293 (−1.04%)	−0.00920 (−3.25%)	−0.00032 (−0.11%)	−0.01245 (−4.40%)
2001	0.27469	0.27222	0.26170	0.26065	−0.00247 (−0.90%)	−0.01052 (−3.83%)	−0.00105 (−0.38%)	−0.01404 (−5.11%)
2002	0.28352	0.27997	0.27044	0.26962	−0.00355 (−1.25%)	−0.00953 (−3.36%)	−0.00082 (−0.29%)	−0.01390 (−4.90%)
2003	0.28163	0.27747	0.26689	0.26556	−0.00416 (−1.48%)	−0.01058 (−3.76%)	−0.00133 (−0.47%)	−0.01607 (−5.71%)

주: 1. ( ) 안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변화율임.
2. 1982~2003년 사이에는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인해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피조사대상 가구의 범위가 변화하였으므로 각 연도의 분석결과가 동일한 가구범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람.

〈표 Ⅳ-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지니계수)

	기준연도	기준소득				재분배정책의 효과		
		시장소득 (A)	총소득 (B)	가처분소득		사회이전 소득 (B-A)/A	소득세·기여금 (C-B)/A	계 (C-A)/A
				소득세후	소득세·기여금후(C)			
미국	1995	0.511		–	0.424	−0.061 (−11.9%)	−0.026 (−5.1%)	−0.087 (−17.0%)
	1998	0.513		–	0.431	−0.057 (−11.1%)	−0.025 (−4.9%)	−0.082 (−16.0%)
	1999	0.513		–	0.433	−0.056 (−10.9%)	−0.024 (−4.7%)	−0.080 (−15.6%)
영국	1992	0.52	0.37	–	0.34	−0.15 (−28.8%)	−0.03 (−5.8%)	−0.18 (−34.6%)
	1994~1995	0.53	0.37	–	0.34	−0.16 (−30.2%)	−0.03 (−5.7%)	−0.19 (−35.8%)
	1999~2000	0.53	0.38	–	0.35	−0.15 (−28.3%)	−0.03 (−5.7%)	−0.18 (−34.0%)
	2000~2001	0.51	0.39	–	0.35	−0.12 (−23.5%)	−0.04 (−7.8%)	−0.16 (−31.4%)
	2001~2002	0.53	0.39	–	0.36	−0.14 (−26.4%)	−0.03 (−5.7%)	−0.17 (−32.1%)
일본	1996	0.4412	0.3721	–	0.3606	−0.0691 (−15.7%)	−0.0115 (−2.6%)	−0.0806 (−18.3%)
뉴질랜드	1996	0.609	0.495	–	0.456	−0.114 (−18.7%)	−0.039 (−6.4%)	−0.153 (−25.1%)
캐나다	1992	0.421	0.334	0.293	–	−0.128 (−30.4%)	−0.041 (−9.7%)	−0.169 (−40.1%)
	1995	0.425	0.339	0.296	–	−0.086 (−20.2%)	−0.043 (−10.1%)	−0.129 (−30.4%)
	1998	0.435	0.356	0.313	–	−0.079 (−18.2%)	−0.043 (−9.9%)	−0.122 (−28.0%)
	2000	0.424	0.354	0.314	–	−0.070 (−16.5%)	−0.040 (−9.4%)	−0.110 (−25.9%)
	2001	0.431	0.359	0.320	–	−0.072 (−16.7%)	−0.039 (−9.0%)	−0.111 (−25.8%)
호주	1999~2000	–	0.448	0.396	–	–	–	–

주: 1. ( ) 안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의 변화율(%)임.
2. 일본의 총소득 기준은 사회보장에 따른 재분배 후 소득을 말함. 다른 나라와 달리 시장소득에 사회이전소득을 합산한 다음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것임. 따라서 일본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사실상 조세만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보아야 함.

자료: 미국 – US Census Bureau(2002)
영국 – Harris(2000), Lakin(2003)
호주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1)
일본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2000)
뉴질랜드 – Statistics New Zealand(1999)
캐나다 – Statistics Canada(2003)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세법 개정은 세부담의 누진도는 낮추지만 세수증대를 통해 총체적으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킴을 알 수 있다. 즉,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이 정도의 세수증가 규모는 현실적·정치적으로 단기간 내에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수치상으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보다 약간 작은 듯이 보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소득세수 증대가 필요한 만큼 결코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표 Ⅳ-2〉 소득세 개편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시뮬레이션 결과(2003년 도시가계 기준)

	지니계수				가구당 평균 소득세	평균실효 소득세율	형평성 지수	
	시장소득 (A)	총소득 (B)	소득세후 (C)	B-C (B-C)/A			집중도	KPS 지수
현행	0.28163	0.27747	0.26689	−0.01058 (−3.76%)	1,353,107원	3.83%	0.53910	0.71761
①			0.26286	−0.01461 (−5.19%)	2,219,783원 [1.64배]	6.28%	0.49337	0.77231
②			0.25963	−0.01784 (−6.33%)	2,711,519원 [2.00배]	7.67%	0.49044	0.77579
③			0.26190	−0.01557 (−5.53%)	2,347,496원 [1.73배]	6.64%	0.49433	0.76895
④			0.26610	−0.01137 (−4.04%)	1,704,331원 [1.26배]	4.82%	0.49917	0.76306

주: 1. 장차 경제성장과 물가인상 등에 불구하고 소득공제 수준이나 공제비율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시킨다면 실질소득공제 수준은 하락할 것임. 상기의 예는 실질소득공제 수준 등이 조정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가상적인 소득세 부담 및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효과를 추정한 것임.
2. ( ) 안은 시장소득을 분모로 계산한 지니계수의 변화율
3. [ ] 안은 2003년 현재 평균 세부담 대비 소득세 부담 증감배수
4. 현행: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전액), 500만~1,500만원(47.5%), 1,500만~3,000만원(15%), 3,000만~4,500만원(10%), 4,500만원 초과(전액), 소득공제 한도(무제한)
세율: 9%, 18%, 27%, 36%
세율구간: 1,000만원 이하, 1,000만~4,000만원, 4,000만~8,000만원, 8,000만원 초과
①: 근로소득공제: 250만원 이하(전액), 250만~1,500만원(10%), 소득공제 한도(375만원). 세율: 10%, 20%, 30%, 40%
②: 근로소득공제는 ①과 동일. 세율: 12%, 24%, 36%, 48%
③: 근로소득공제와 세율은 ①과 동일. 세율구간: 1,500만원 이하, 1,5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원 초과
④: 근로소득공제는 ①과 동일. 세율구간: 1,500만원 이하, 1,5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원 초과
5. 집중도는 1에 가까울수록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0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에 집중됨을 의미함. KPS 지수는 1보다 작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커짐을 의미함.

위와 같이 개편할 경우 세부담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KPS 지수는 그 값이 커지고, 조세집중도는 작아짐으로써 세부담의 누진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세법 개정은 세부담의 누진도는 낮추지만 세수증대를 통해 총체적으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킴을 알 수 있다. 즉,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Ⅴ. 시사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누진도)는 조금 낮추더라도 소득세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면세자 비율을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실효세부담률을 높여야 달성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정치적으로 수용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수준을 묶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 과세의 저변 확대를 통한 면세자 비율의 축소가 바람직하다. 그 밖에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소득이 더 높으므로 과표양성화, 즉 탈루소득의 포착을 통해 소득세를 증대시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10].

이상에서 보듯이 수치상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진국 수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소득세 규모 증대가 필요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IPF

10) 일각에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부담 구조를 더욱 누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소득재분배의 구성요소 중 누진도만을 고려하고 소득세의 총세수규모라는 다른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소득세의 누진도를 높이더라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소득세 규모 증대가 필요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성명재 · 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8-02, 한국조세연구원, 1998.

전병목 · 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03-03, 한국조세연구원, 200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 1996~97, 1998.

_____, *Income Distribution*, 1997~98, 1999.

_____, *Income Distribution*, 1999~2000, 2001.

Harris, Tim,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1998~99," Economic Trends No. 557,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pril 2000, pp. 45~83.

Lakin, Caroline,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1999~2000," Economic Trends No. 569,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pril 2001, pp. 35~79,

_____,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0~200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2.

_____,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1~200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3.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nnual Report on Health and Welfare* 1999, Japan, 2000.
(http://www.mhlw.go.jp/search/mhlwe/wp/wp_hw/vol1/p1c2s2.html)

Statistics Canada, *Income in Canada*, 1998.

Statistics New Zealand, *New Zealand Now Incomes*, 1999.

U.S Census Bureau, *Money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999.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

전 병 목 전문연구위원(byungj@kipf.re.kr)

Ⅰ. 서 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응능세부담이라는 공평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유효수요의 창출과 같은 경제정책적 효과 외에도 중산층의 형성을 통한 정치 · 사회적 안정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경제발전에 따라 시장소득의 불평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어 조세정책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중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의 규모는 조세 부담규모와 제도의 누진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조세의 평균적 부담규모가 증가하거나 조세제도 자체의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능의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성명재 외(2003)는 소득세부담의 변화를 소득증가, 분포변화, 세법개정, 소득포착률 변화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를 소득재분배 효과의 요인분석으로 확장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이 향후 평균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조세제도 자체의 누진도 증가에 의존하여야 하는지의 정책판단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동 기능의 요인별 분석은 향후 조세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세 등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의 규모는 조세 부담규모와 제도의 누진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조세의 평균적 부담규모가 증가하거나 조세제도 자체의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동 기능의 요인별 분석은 향후 조세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제도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조세부담과 제도의 누진도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분해는 기존의 분석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향후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를 시도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Ⅱ. 소득재분배 효과의 분해

1. 이론적 배경[1)]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는 RS(The Reynolds-Smolensky)지수이다. 동 지수는 조세 부과 전 소득과 조세 부과 후 소득에 나타나는 불평등 지수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조세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소득재분배 효과라 정의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 지수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RS지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우선 지니계수의 기초가 되는 로렌쯔곡선을 이용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분해를 유도한다. 지니계수가 로렌쯔곡선의 적분함수이므로 쉽게 지니계수에 대한 분해로 변환할 수 있다. 우선 소득의 분포를 $Y=\{y_1, y_2, \cdots, y_i, , \cdots, y_n\}$이라 하고, 조세함수를 $T(y)$라고 하자. 한계세율이 1보다 작으므로$(0<t_m<1)$ 소득의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다.

- 총소득의 합: $Y=(\Sigma_{n=1}^{N} y_n)$
- 총 조세수입: $T=(\Sigma_{n=1}^{N} T(y_n))$
- 평균세율 : $t_a = T/Y=(\Sigma_{n=1}^{N} T(y_n))/(\Sigma_{n=1}^{N} y_n))$

이렇게 표기하면 i 번째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한 값을 알 수가 있다.

1) *The Index of Tax Redidstribution: Annex II*, OECD, 2003.의 내용을 정리, 수정.

- 총소득의 로렌쯔곡선 : $L_y(i) = (\Sigma_{n=1}^{i} y_n)/Y$
- 조세의 집중곡선 : $L_T(i) = (\Sigma_{n=1}^{i} T(y_n))/T$
- 순소득의 집중곡선 : $L_{Y-T}(i) = (\Sigma_{n=1}^{i} y_n - T(y_n))/(Y-T)$

마지막 식인 순소득의 집중곡선을 적당히 조작하면 총소득의 로렌쯔곡선과 순소득 및 조세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L_{(Y-T)}(i) - L_y(i) = [t_a/(1-t_a)] \times [L_y(i) - L_T(i)],\ t_a = T/Y$$

위의 수식에서 좌변은 i 번째 사람까지 평가한 순소득의 집중도에서 총소득의 집중도를 차감한 것으로 조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즉 조세로 인한 누적소득의 비율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우변 수식의 첫째 항은 순소득률에 대한 평균세율의 비율로 평균적인 세부담과 유사한 의미이다. 둘째 항은 i 번째 사람까지 평가한 총소득의 로렌쯔곡선에서 조세의 집중도를 차감한 것이다. 즉 총소득의 집중도와 조세의 집중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변수인 조세의 집중도가 그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조세의 집중도가 소득의 집중도에 비해 클 경우에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평균적인 세부담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세의 집중도가 소득의 집중도보다 높아야 세후 소득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진 소득분포하에서 조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평균적인 세부담 수준과 조세의 누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는 유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도의 누진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혹은 누진도를 증가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평균 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로렌쯔곡선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지니계수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총소득의 지니계수 : $G_{(Y)} = 1 - 2 \times \int_0^1 L_Y(p)\, dp$
- 순소득의 집중지수 : $G_{(Y-T)} = 1 - 2 \times \int_0^1 L_{(Y-T)}(p)\, dp$
- 조세의 집중지수 : $C_{(T)} = 1 - 2 \times \int_0^1 L_T(p)\, dp$

즉 지니계수는 로렌쯔곡선의 적분함수이므로 위에서 유도된 로렌쯔곡선 관계식을 모든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는 유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도의 누진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혹은 누진도를 증가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평균 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구성원(i)에 대해 더하여 정리하면 지니계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C_{(Y-T)} - G_{(Y)} = [t_a/(1-t_a)] \times [G_{(Y)} - C_{(T)}]$$

이때 좌변은 조세로 인한 경제단위의 소득불평등도 개선 정도, 즉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우변은 각각 평균적인 실소득 대비 조세부담 비율과 조세누진도와 소득 지니계수의 차이이다.

2. 실증분석

가. 자 료

실증분석은 『도시가계연보』 1993~2003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로 1인 가구, 읍면지역 거주가구, 농어가 등은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2002년 기준 농어촌 가구 약 8.99%, 1인 가구 16.09%[2]에 이르러 최대 25.08%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상당수가 농어촌 가구임을 고려할 때 동 자료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시된 수준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다.

2)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전체 가구는 15.06백만가구, 1인 가구는 2.42백만가구로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16.09%로 나타난다.

〈표 Ⅱ-1〉 전체 가구 대비 농어촌 가구 비중

(단위: 가구, %)

	일반 가구	농어업 종사 가구	비중	일반 인구	농어촌 지역 인구	비중
1995	12,958,181	1,605,225	12.39	44,553,710	5,198,290	11.67
2000	14,311,807	1,465,039	10.24	45,985,289	4,282,414	9.31
2001	14,834,242	1,431,404	9.65	47,342,828	4,167,684	8.80
2002	15,063,671	1,353,586	8.99	47,639,618	3,805,697	7.99

주: 일반 가구 및 인구의 경우 2000년까지는 총조사인구를 기준으로, 2001년 이후부터는 추계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통계청 통계DB KOSIS, 성명재 외(2003)에서 재인용

또한 조사자료 중 소득자료가 보고되지 않은 근로자외(자영업자, 실업자 등) 가구는 제외하고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성명재(2001), 성명재 외(2003) 등 이전의 연구에서는 근로자외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소득을 근로자 가구에서 나타나는 역소비함수 관계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소득추정은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추정결과의 설명력이 매우 낮아 예측을 위한 모형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3]. 설사 유의미한 소득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소득의 탈루가 심한 자영업자의 과세대상 소득의 파악이 쉽지 않다. 역소비함수 관계식을 이용하여 실제소득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과세대상 소득의 크기는 소득파악도에 대한 가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측된 소득자료를 조정 없이 이용할 경우 소득세 등 소득관련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전체 자료의 평균 60% 내외로 상당부분이 자영업자, 무직자 가구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 가구의 비중이 더욱 감소하여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분석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3) 박기백 · 김진(2004)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의 소비를 설명하기 위한 추정식의 설명력이 2003년의 경우 48.3%에 불과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던 소득불평등도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시장소득기준으로 2003년 지니계수는 0.3175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0.3209의 98.9%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어난 구조조정의 결과 생산성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Ⅱ-2〉 분석대상 자료

연 도	총 가구 수 (A)	근로자 가구 수 (B)	근로자 가구 비중 (B/A, %)
2003	7,849	4,770	57.44
2002	6,121	3,516	57.44
2001	6,349	3,691	58.14
2000	6,413	3,761	58.65
1999	5,597	3,285	58.69
1998	5,475	3,356	61.30
1997	5,344	3,432	64.22
1996	5,801	3,758	64.78
1995	5,864	3,877	66.12
1994	5,797	3,880	66.93
1993	8,928	5,878	65.84

나. 분석결과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이러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는 소득증가와 함께 세계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증가속도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던 소득불평등도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시장소득기준으로 2003년 지니계수는 0.3175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0.3209의 98.9%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어난 구조조정의 결과 생산성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Ⅱ-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추이(지니계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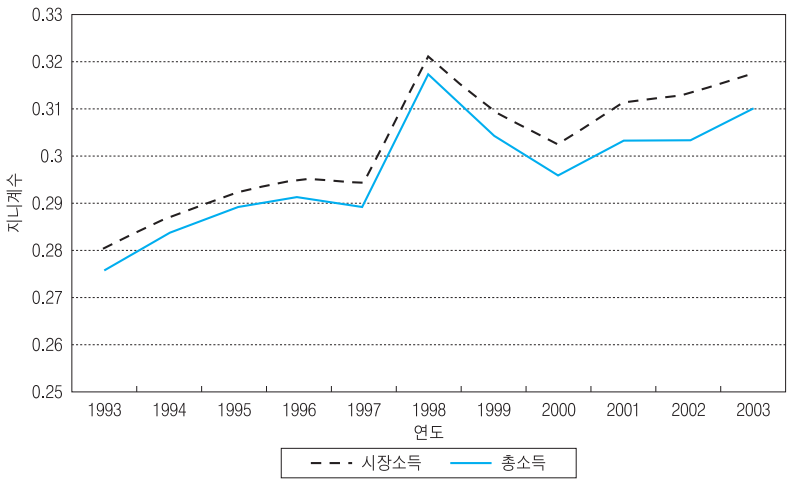

한편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정부의 이전소득은 전체적인 소득불평등도를 낮추어 주었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이전의 1%내외에서 2% 중반대로 높아졌다. 이는 악화된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등 정부의 노력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던 국민연금제도의 수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득재분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 정부 이전소득보다 2배 이상 높은 분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재정규모의 차이에도 기인하므로 두 정책의 상대적인 유효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는 1990년대 4% 이하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5% 이상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득불평등도의 평균증가율도 소득세 이전의 1.17%에서 세후 소득 기준으로는 1.03%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 효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소득불평등도 수준은 2003년 현재 0.2943으로 1993년 수준보다 높아졌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소득비례적인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재분배 효과는 소득세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제도의 특성상 기여단계보다는 지급단계에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정부의 이전소득은 전체적인 소득불평등도를 낮추어 주었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이전의 1%내외에서 2% 중반대로 높아졌다. 이는 악화된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등 정부의 노력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Ⅱ-3〉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 도	시장소득	총소득 (개선율)	소득세 후 소득 (개선율)	소득세, 재산세 등 후 소득 (개선율)	가처분 소득 (개선율)
1993	0.2805	0.2761(1.59)	0.2656(3.78)	0.2656(3.78)	0.2660(3.66)
1994	0.2871	0.2838(1.16)	0.2734(3.66)	0.2734(3.66)	0.2737(3.53)
1995	0.2921	0.2890(1.08)	0.2771(4.12)	0.2758(4.55)	0.2763(4.38)
1996	0.2952	0.2915(1.27)	0.2802(3.86)	0.2790(4.29)	0.2795(4.12)
1997	0.2944	0.2894(1.69)	0.2796(3.38)	0.2789(3.62)	0.2794(3.45)
1998	0.3209	0.3176(1.02)	0.3061(3.63)	0.3060(3.65)	0.3065(3.48)
1999	0.3096	0.3045(1.64)	0.2914(4.31)	0.2907(4.54)	0.2915(4.27)
2000	0.3026	0.2959(2.19)	0.2822(4.64)	0.2812(5.00)	0.2811(5.00)
2001	0.3113	0.3034(2.57)	0.2878(5.11)	0.2873(5.30)	0.2874(5.25)
2002	0.3131	0.3034(3.12)	0.2882(5.01)	0.2876(5.18)	0.2881(5.02)
2003	0.3175	0.3101(2.31)	0.2943(5.11)	0.2938(5.25)	0.2952(4.81)
증가율	1.24	1.17	1.03	1.01	1.05

주: 총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의 이전소득을 더한 것임. 소득세, 제산세 등은 소득세, 재산세 외 자동차세, 기타 직접세의 합이며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 재산세 등과 사회보장기여금(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차감한 소득

[그림 Ⅱ-2]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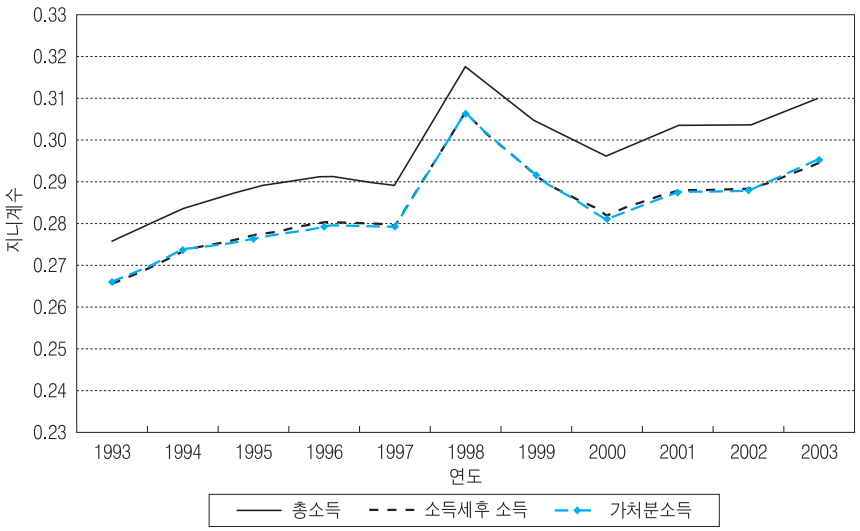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도의 누진도와 평균적인 세부담 수준으로 분해해 보면 1990년대 이후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는 주로 평균적인 세부담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의 누진도(총소득과 소득세의 지니계수 차이)는 1990년대 수준에서 변화하는 반면 평균적인 세부담은 꾸준히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를 높여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등 최근의 소득세제 개편은 제도의 누진도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기존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삭제한 2001년의 경우 소득세의 누진도, 즉 소득세 집중도와 소득 집중도의 차이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48.5%(2002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중상위계층의 소득세 누진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또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근로소득자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누진도 증가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4) 전병목(2004) 참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도의 누진도와 평균적인 세부담 수준으로 분해해 보면 1990년대 이후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는 주로 평균적인 세부담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의 누진도는 1990년대 수준에서 변화하는 반면 평균적인 세부담은 꾸준히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를 높여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3]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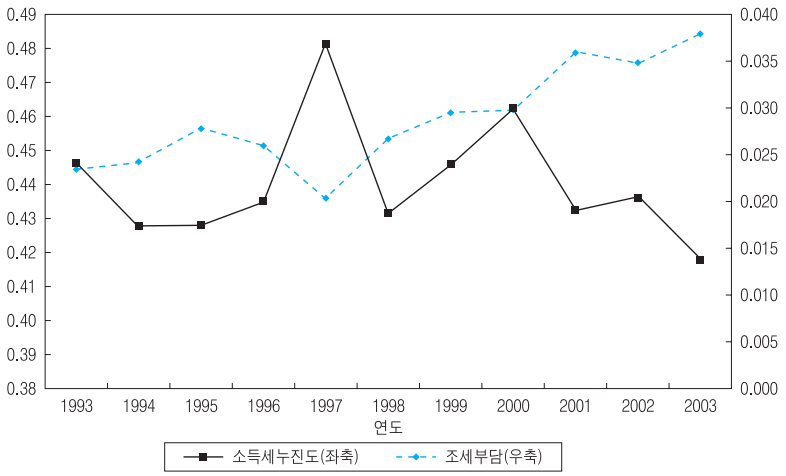

〈표 Ⅱ-4〉 소득재분배 효과의 분해

연 도	소 득 세			소득세, 재산세 등		
	재분배효과	누 진 도	세 부 담	재분배효과	누 진 도	세 부 담
1993	0.01044	0.44646	0.02338	0.01044	0.44646	0.02338
1994	0.01039	0.42791	0.02429	0.01039	0.42791	0.02429
1995	0.01191	0.42824	0.02781	0.01315	0.35861	0.03666
1996	0.01126	0.43483	0.02590	0.01250	0.34822	0.03591
1997	0.00980	0.48143	0.02035	0.01048	0.36791	0.02850
1998	0.01153	0.43144	0.02672	0.01158	0.31147	0.03719
1999	0.01313	0.44606	0.02945	0.01382	0.34650	0.03987
2000	0.01373	0.46248	0.02970	0.01479	0.35995	0.04110
2001	0.01552	0.43267	0.03586	0.01608	0.35674	0.04507
2002	0.01519	0.43647	0.03481	0.01571	0.36644	0.04287
2003	0.01584	0.41801	0.03789	0.01629	0.34249	0.04756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의 집중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집중도는 외환위기 이전 0.71 수준에서 1997년 0.77까지 상승하였다가 2003년 0.73으로 점차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결과는 완만한 상승추세에 있는 소득분포 불평등도와의 차이, 즉 누진도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Ⅱ-4] 소득세의 집중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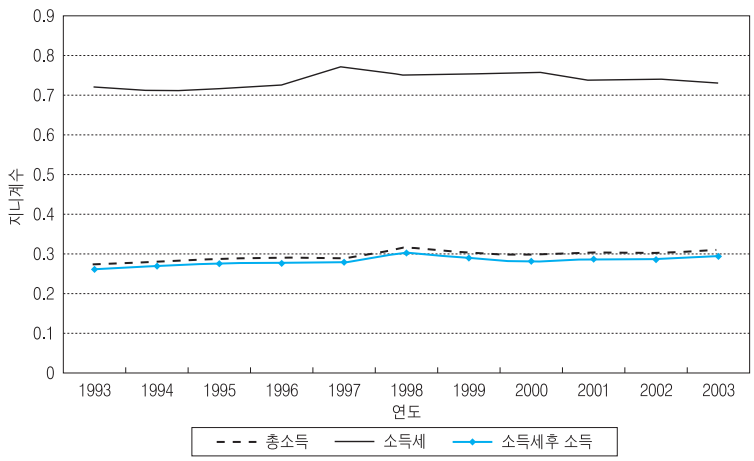

〈표 Ⅱ-5〉 각종 세목별 집중도 추이

연 도	소 득 세	소득세, 재산세 등	사회보장세
1993	0.72254	0.72254	0.28181
1994	0.71166	0.71166	0.29245
1995	0.71723	0.64760	0.29701
1996	0.72632	0.63972	0.29990
1997	0.77084	0.65732	0.30009
1998	0.74903	0.62906	0.33123
1999	0.75057	0.65101	0.31503
2000	0.75843	0.65590	0.30745
2001	0.73603	0.66010	0.31144
2002	0.73983	0.66980	0.30970
2003	0.72813	0.65261	0.30582
증가율	0.08	−1.01	0.82

소득세의 평균적인 세부담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소득세의 경기안정적 역할, 소득재분배 기능 등 소득세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증가보다는 바람직하다. 향후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누진도 강화보다는 평균적인 세부담 증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소득세의 평균적인 세부담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소득세의 경기안정적 역할, 소득재분배 기능 등 소득세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증가보다는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 소득세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누진도 강화보다는 평균적인 세부담 증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소득세와 기타세(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포함한 경우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는데 실질적인 조세제도의 누진도는 1990년대 초반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그림 Ⅱ-5] 소득세, 재산세 등의 재분배 효과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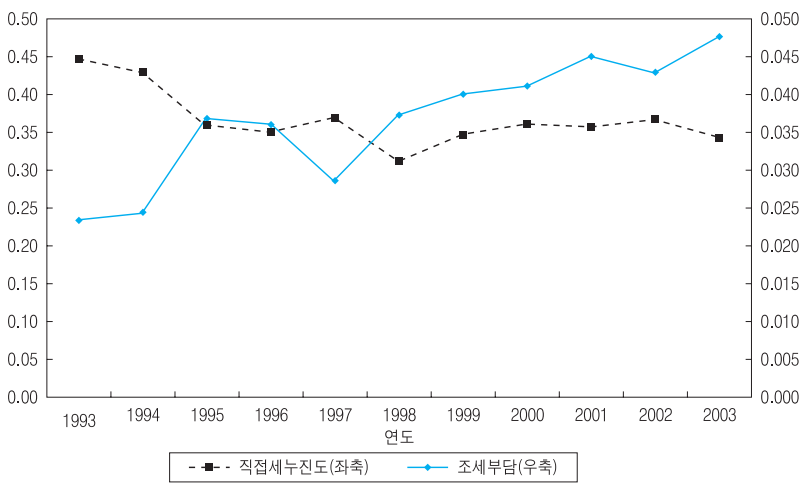

주: 소득세, 재산세 등은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의 합.

재분배 효과 변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평균적인 세부담 효과와 누진도의 상반된 변화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1999~2000년 기간 동안 누진도 및 세부담 모두 재분배 효과 변화방향과 동일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조세 누진도가 재분배 효과 변화의 반대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상대적 크기는 세부담 요인에 의한 것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 소득재분배 효과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연 도	소 득 세			소득세, 재산세 등		
	누 진 도	세 부 담	합 계	누 진 도	세 부 담	합 계
1995	0.5	99.5	100.0	−46.6	146.6	100.0
1996	−28.9	128.9	100.0	58.5	41.5	100.0
1997	−99.8	199.8	100.0	−37.7	137.7	100.0
1998	−49.6	149.6	100.0	−101.2	201.2	100.0
1999	24.9	75.1	100.0	60.9	39.1	100.0
2000	81.2	18.8	100.0	55.8	44.2	100.0
2001	−45.1	145.1	100.0	−10.1	110.1	100.0
2002	−43.1	143.1	100.0	−126.1	226.1	100.0
2003	−91.6	191.6	100.0	−148.1	248.1	100.0

Ⅲ. 시사점

소득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조세 ·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으로 완화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도의 누진도 강화를 통해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세부담 증가로 유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적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누진도 효과와 세부담 증가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즉 1990년대 3~4% 수준에 머물러 있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2000

정책방향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누진도 하락추세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단기적인 정책목표 등을 위해 시행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과세자 비율 감소, 누진도 하락 등의 문제가 야기됨을 고려할 때 세제개편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년대로 접어들면서 5% 이상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조세제도의 누진도 증가보다는 평균적인 세부담 증가에 있었다. 오히려 조세제도의 누진도는 2000년 이후 완화추세에 있어서 소득재분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근로소득자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누진도 증가가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공제제도 개편이 제도 누진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평균적인 세부담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소득세의 경기안정적 역할, 소득재분배 기능 등 소득세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증가보다는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누진도 강화보다는 평균적인 세부담 증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누진도 하락추세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단기적인 정책목표 등을 위해 시행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과세자 비율 감소, 누진도 하락 등의 문제가 야기됨을 고려할 때 세제개편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소득세 과표구간의 물가연동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여 매년 요구되는 세법 개정의 수요를 줄이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참고문헌

박기백 · 김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4.
성명재 · 박형수 · 전병목, 『조세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4.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의 고찰」, 『재정포럼』, 2004. 1.

OECD, *The Index of Tax Redidstribution: Annex II*, 2003.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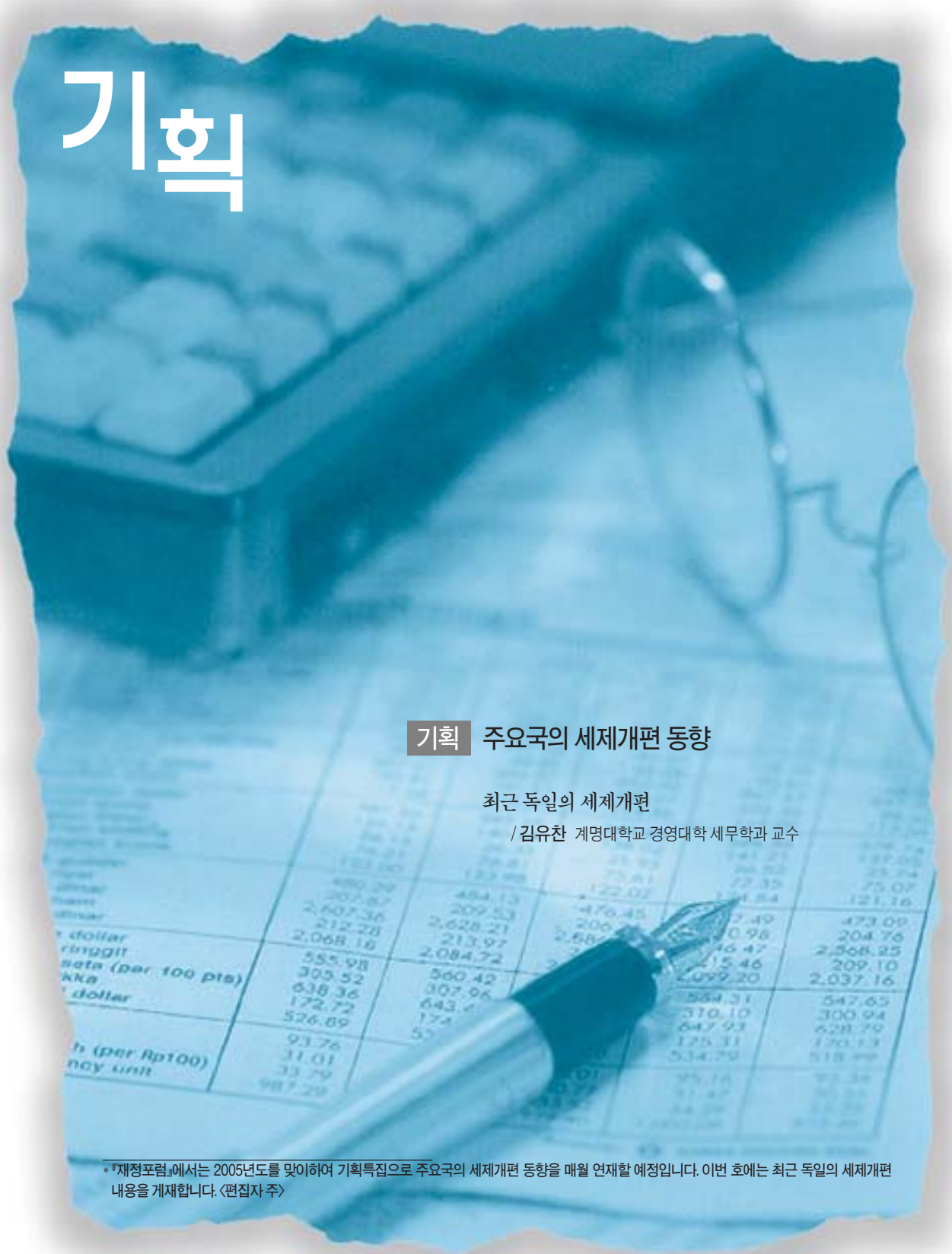

기획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최근 독일의 세제개편

/ 김유찬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교수

* 『재정포럼』에서는 2005년도를 맞이하여 기획특집으로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매월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는 최근 독일의 세제개편 내용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독일의 세제개편

김 유 찬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교수

Ⅰ. 서 론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있었던 독일의 세제개혁은 법인세 및 소득세 분야에서 매우 큰 폭의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를 넓히면서 세율을 인하하는 것, 법인세 체계를 완전전가제도에서 절반소득과세제도로 바꾼 것,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를 법인에게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도우면서 개인에게는 오히려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1].

이에 비하여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일어난 독일의 세제개편은 국제조세 분야의 제도 변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국제조세 분야의 제도 변화에는 EU 차원의 규범 변화로 인하여 독일이 선택의 대안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었다. 또 국제조세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03년 4월 11일의 조세감면제한법과 2003년 12월 19일의 조세감면제한법II는 독일의 국제조세규범의 여러 핵심적인 사항을 변경하였다[2]. 또 EU의 모자회사 지침과 이자 및 사용료소득 지침을 독일 국내세법에 수용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독일의 입법권자는 조세사면법을 제정하여 독일 거주자의 비합법적인 해외투자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면 과거사를 묻지 않고 거주자의 누진세율에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단행하였다[3]. 또 1999년 당초의 세제개혁상의 계획으로 법인세

1) 김유찬(2001)

2) 독일의 국제조세규범은 국제적인 차원의 그리고 EU 차원의 경제 · 사회적 변화, 규범체계의 변화와 법원의 판결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이에 반하는 것도 있다.

EU의 지침서를 통하여 EU 내에서 개별국가들의 회계기준이 조금은 가까워졌으나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유럽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회계기준이 EU의 경계를 넘어서 조화(Harmoniz-ation)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EU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향후로는 회계규범의 조화를 EU 차원에서가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추구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및 소득세율 인하의 마지막 단계 시행이 2005년에 예정되어 있다. 그 외에 입법권자들과 조세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만 되고 최종적으로 법안이 사라진 것으로는 상속증여세의 평가제도 문제를 들 수 있다[4]. 마지막으로 법인세와 영업세에서 손실공제의 한도를 제한한 것과 자동차세 및 담배세의 인상 등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우선 제II장에서 EU 차원의 세제 및 회계규범의 변화가 독일의 조세분야의 규범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므로 최근의 EU 차원에서의 논의 및 규범의 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III장에서는 독일의 세제변화를 개별 실정세법 순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본다. 특히 국세기본법에 새로 규정된 해외 관계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작성의무에 대하여 새로 마련된 시행령의 조문은 특별히 상세하게 취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 결론 및 정책시사점을 정리한다.

II. EU 차원의 세제 및 회계분야의 규범 변화

1. 연결납세와 관련한 IAS 규범의 채택

유럽연합은 결성 초기에서부터 개별국가의 회계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개별국가 회계분야의 조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57년의 유럽경제연합 설립조약에 있다. 당시 EU의 목표는 통일된 회계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의 결산서의 비교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에 있었고, EU의 제4차(개별기업의 회계), 제7차(연결회계) 및 제8차(외부감사) 회계규범에 대한 지침이 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EU의 지침서를 통하여 EU 내에서 개별국가들의 회계기준이 조금은 가까워졌으나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유럽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회계기준이 EU의 경계를 넘어서 조화(Harmoniz-ation)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EU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향후로는 회계규범의 조화를 EU 차원에서가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추구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회계

3) 이는 그러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25%의 완납적 원천징수제도를 병행하여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III장 1절 참조).
4) 연방재정법원은 과세 대상 재산별 평가체계의 불공평성과 가업 상속되는 사업재산에 대한 40% 공제의 수준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촉구하였다.

기준의 국제적인 조화는 유럽 및 독일기업의 국제 자본시장에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과 결산자료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 주며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당초 EU는 단일의 EU 회계제도를 실현시킬 계획이었으나 1999년을 기하여 IAS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의 국제기준 확립을 위한 노력이 범세계적인 회계기준 수렴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되었다[5].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조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으나 어느 정도까지 개별국가의 회계기준이 조화 혹은 통일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유럽과 독일의 회계기준의 국제화는 다시 2002년 3월 중순 EU집행위의 제안을 EU의회가 의결하며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 이에 따르면 모든 EU국가는 늦어도 2005년까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AS 기준 충족을 의무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개별 회원국가는 이를 넘어서서 개별기업의 회계에서, 혹은 자본시장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도 연결재무제표나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서 IAS 기준을 따를 것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독일 및 다른 EU의 개별국가들의 개별기업의 회계도 곧 IAS 기준에 따라 작성될 가능성이 많다[6].

2. 그룹기업과세에 관련한 EU의 대안과 논의

기업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이 분야 EU의 가장 최근 보고서인 1992년 Ruding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시한 안(draft)을 실현시키는 데 전혀 진척이 없다. Ruding위원회의 보고서는 개별회원국들의 법인세 제도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과세표준을 일치시키고 30%에서 40% 사이에 법인세율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01년 10월에 EU에서 기업과세와 관련하여 한 가지 Study자료(Company Taxation in the Internal Market)와 정책설명자료(Towards an Internal Market without tax obstacles－A strategy for providing companies with a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for their EU-wide activities)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EU위원회가 외부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준비한 것으로 이 study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선 현재의 회원국들 간에 존재하는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존재하는 과세상의 장벽을 내용적으로 확인하며, 역내시장에서 조세로 인하여 야

5) 많은 독일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자발적으로 독일회계기준뿐만 아니라 IAS 기준으로도 작성함으로써 IAS가 인정받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독일이 1998년에 회계기준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자본수입활성화법(KapAEG)을 제정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김유찬(2003).

6)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한 동인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이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대형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여러 해외 자회사의 실적을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려면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실적을 수정해야 하므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해외 자회사들이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작성된 실적들은 단순 합산이 가능하다. 그 외에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은 Global Player로서의 기업이미지를 부여한다는 점도 고려된다. 다른 한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IAS 기준에 따르면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적립금이나 소득유보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회계기준에서는 보수주의 원칙을 중요시 여기나 IAS에서는 Fair presentation을 더 상위의 Norm으로 보는 것이다.

EU 차원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가능한 4가지 대안으로 HST(Home State Taxation: 거주지국 기준 과세원칙), CCBT(Common Consolidated Base Taxation: 공동연결납세 기준 과세원칙), EUCIT(European Corporate Income Tax: 유럽통합법인세), Compulsory Harmonisation of Tax Base(CHTB: 과세표준산정기준의 통합)를 들 수 있다.

기되는 지속적인 왜곡현상을 줄이는 것과 관련한 정책적인 문제를 조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가. 현존하는 과세상 장벽의 경제적 효과

동 study에서 정리된 EU 내에 현존하는 과세상의 장벽을 기업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비교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높은 세부담: 예를 들어 국경을 넘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2) 개별국가의 조세제도 간의 비상응성(incompatibilities)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이중과세: 예를 들어 현재의 Parent-Subsidiary Directive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3) 국경을 넘어서는 기업구조조정의 경우에 추가적인 조세부담: 예를 들어 현재의 Merger Directive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4) EU의 개별국가 수대로의 다른 조세제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납세순응비용: 예를 들어 개별적 회계와 관련한 이전가격 설정의 어려움

이러한 과세장벽은 개별적인 조처로써 혹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 EU의 study자료는 회원국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해결책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나. 4가지 포괄적인 접근방법

동 자료는 EU 차원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가능한 4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HST(Home State Taxation: 거주지국 기준 과세원칙): 전체나 일부 회원국들이 합의하여 해외 operation이 있는 기업이 개별국가마다 그 해당 국가에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그 기업의 Home State의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
- CCBT(Common Consolidated Base Taxation: 공동연결납세 기준 과세원칙): 전체나 일부 회원국들이 해외 operation이 있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법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
- EUCIT(European Corporate Income Tax: 유럽통합법인세): EU 전체에서 통용되는 단일의 법인세법이 제안되는 것. 가장 단순한 경우 EU 전체에서 단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세수입

은 개별국가에 귀속

- Compulsory Harmonisation of Tax Base(CHTB: 과세표준산정기준의 통합): 현존하는 15개 국가의 개별 세법의 과세표준산정기준의 통합

이 4가지 대안은 모두 기업에게 그들의 EU-wide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단일의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CIT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안이 과세표준과 세수입을 회원국들 사이에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또 특별한 경우에 EUCIT를 제외하고는 회원국들이 스스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다. FA에 대한 EU 보고서의 입장

EU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은 모두 EU-wide 경제활동에 대하여 통합된 과세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보이며 국경을 넘어서는 손실상계처리는 완전하게 허용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유럽통합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안은 과세표준과 세수입을 회원국들 사이에 나누기 위하여 FA(Formulary Apportionment)와 같은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FA는 미국, 캐나다, 독일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용되며 ALP처럼 현재 국가들 사이에서 과세표준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OECD가 FA에 대하여 임의적(arbitrary)이며 시장상황을 무시하며, 기업의 개별적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탓에 기인한다.

EU 보고서는 이 4가지 포괄적 접근방식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전가격과세나 비용분할과 같은 문제가 제거된다는 것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에게 징세비용 및 납세순응비용을 줄여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EU위원회는 나아가서 소득의 분배가 미국에서처럼 판매액이나, 자산규모 그리고 지불임금액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보고서는 FA의 채택을 위해서는 분할요소를 포함하여 많은 세부사항이 더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험에서 볼 때 회원국들 사이에 과세소득의 분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이전가격과세의 문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FA가 기업을 위하여 순응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혁이라고 보여지나 이것이 세제경쟁을 야기하고 과세표준을 조작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FA하에서 이전가격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아서도 곤란하다[7].

ALP하에서는 개별국가들이 한계투자(marginal investment)를 유치하려고 경쟁하게 되며 그 투자로부터의 한계수익(marginal return)은 해당국가의 과세표준을 넓혀준다. 그에 비하여 FA하에서는 한계투자의 유치로 인한 혜택은 통합된 소득을 나누기로 한 기준(예를 들

7) Sunley(2002)

FA가 기업을 위하여 순응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혁이라고 보여지나 이것이 세제경쟁을 야기하고 과세표준을 조작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FA하에서는 한계투자의 유치로 인한 혜택은 통합된 소득을 나누기로 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개별국가들은 수익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활동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것이므로 이를 유치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어 창출된 부가가치)에 따라 나누어진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따라 나눈다고 하면 개별국가들은 수익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활동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것이므로 이를 유치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FA는 분할요소에 부가가치나 판매액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전가격과세의 문제를 제거할 수 없다. 법인세 징수행정이 기업의 본부가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는 세수극대화를 위하여 자국 내에서 가치창출이나 판매액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는 관계기업으로부터 원자재나 기타 구매에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관계기업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국이 동 기업을 감사하고 다른 국가들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면 이들 다른 국가들은 불리하게 된다.

그리고 EU 역내의 이전가격과세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EU 역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이전가격과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EU 역외의 국가들은 여전히 독립기업간 원칙에 의하여 이전가격과세 문제에 접근하므로 EU의 개별국가들은 국제거래와 관련하여서 독립기업간 과세원칙과 FA의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EU 역외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EU 역외의 국가가 그 관할권 내의 관계기업의 과세소득을 독립기업간 원칙을 근거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EU의 개별국가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양국간의 조세조약에 의거 대응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EU 역내의 과세소득이 FA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 EU 내 한 국가의 대응조정은 EU 내 다른 국가들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때 대응조정의 당사국 과세당국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과세소득의 조정이 적으므로 조약상대국과의 대응조정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해질 것이다.

Ⅲ. 최근 독일의 조세제도의 변화

1. 소득세법

가. 소득세율 인하

1999년 당초 세제개혁상의 계획으로 소득세율 인하의 마지막 단계 시행이 2005년으로 예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5%에서 42%로 낮아지고 최저세율은 16%에서 15%가 된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는 7,664유로로서 변화가 없다.

나. 조세사면법

2003년 말 독일의 입법권자는 조세사면법을 제정하여 독일 거주자의 비합법적인 해외투자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면 과거사를 묻지 않고 거주자의 누진세율에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단행하였다.

이 조세사면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과세연도에 해당되며 납세의무자는 2004년 내에 신고와 함께 10일 이내에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하여 25%(200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35%)를 납부하면 과거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과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하여 50억유로 정도의 세수유입을 추정하고 있다.

이 조세사면법은 국내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 투자된 자본을 독일 국내에 다시 돌아오게 유도하려는 정책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자본소득에 대한 이러한 25%의 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다. 따라서 다시 독일 내에서 개인납세자 차원에서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과세되며 납부된 25%의 세액은 공제된다. 당초에 이 25%의 과세를 이자 및 배당에 대한 25%의 완납적 원천징수제도로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이 조치가 병행되지 않음으로써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되게 되었다. 25%의 과세가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개인소득세율의 금융소득에 대한 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 외국세액공제의 제한(소득세법 제34c조)

소득세법에서는 제34c조의 외국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변화되었다. 독일 소득세법 제34c조는 외국에서 부과되고 납부되었으며 감면되지 않은 세액은 독일 국내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가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세액공제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독일 내 무제한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이 독일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외국의 과세소득은 독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산정되며 이에 대한 독일의 외국세액공제에도 제한이 있다. 제한된 범위를 넘는 이유로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이 공제의 한도가 이번의 세법개정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까지 소득세법 제34c조의 규정에서 공제의 한도는 전세계소득에 대한 독일의 소득세액에 외국소득이 전세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것이 된다. 즉, 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공제의 한도 = 전세계소득에 대한 독일의 소득세액 × 외국소득 / 전세계소득

여기에서 외국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되는 국가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그 소득이 그 나라에서 비과세되는지, 감면되는지, 과세되는지 혹은 탈세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 독일의 입법권자는 조세감면제한법을 통하여 동 공제한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동 변화는 실질적으로 공제한도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는 우선 해당되는 국가의 영역 안에서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하여 공제한도를 산정하는

조세사면법은 해외에 투자된 자본을 독일 국내에 다시 돌아오게 유도하려는 정책목표를 가진다. 그러나 해외자본소득에 대한 이러한 25%의 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다. 따라서 다시 독일 내에서 개인납세자 차원에서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과세되며 납부된 25%의 세액은 공제된다.

과정에서 외국소득으로 고려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34c조 1항 3절). 즉 수정된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수정된 공제의 한도 = 전세계소득에 대한 독일의 소득세액 × (외국소득 – 과세되지 않는 외국소득) / 전세계소득

과거 외국소득과 관련된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연방조세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외국소득의 발생과 직접 경제적으로 연관되는 경비에 대하여만 비용공제가 허용되었다(BFH, BStBl, II, 2000, 577쪽).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이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서 법개정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34c조 1항 4절에 이 내용을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소득의 발생과 경제적으로 연관이 되는 경비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경비를 더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의무자가 고수익 해외채권에 투자한 후 위험에 대비하여 해외은행으로부터 guarantee를 구하고 bank guarantee commission을 지불하는 경우 동 bank guarantee commission 과 이자의 경제적 연관성이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소득의 발생과 비용 사이에 경제적 연관성이 부정되었으나 향후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되었다. 이 또한 외국소득의 범주가 축소된 것으로 과거에는 이자 전체가 외국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bank guarantee commission의 비용연관성이 인정되면서 이자에서 bank guarantee commission을 제한 것이 외국소득이 된다[8].

라. EU의 모자회사 지침(Parent-Subsidiary Directive)의 국내법 수용

EU의 모자회사 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43b조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회사가 EU회원국의 모회사에게 지불하는 배당은 모회사가 법적 소재지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독일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배당이 독일 자회사에서 EU 내의 모회사가 유지하는 다른 EU회원국의 고정사업장에 지불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독일에 소재하는 모회사가 유지하는 다른 EU회원국 내의 고정사업장에게도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배제는 적용된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모회사 및 자회사의 회사형

8) Amann/Goettsche/Stockmann(2004)

태는 소득세법 부록2에 수록되어 있다. EU의 새로운 회사형태인 SE(Societas Europea: the European Company)와 SCE(the European Cooperative Society)도 여기에 수록된다. 또 EU의 신규 회원국들이 해당되는 법적인 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

원천징수의 배제가 허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지분소유한도는 20%이며 직접적인 지분소유만 해당이 되고 간접적인 지분소유나 파트너십을 통한 지분소유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 최소지분한도는 2009년에는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마. EU의 이자 및 사용료 지침(Interest and Royalty Directive)의 수용

EU의 이자 및 사용료 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새로운 조항 50g조를 도입하였다. 동 조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독일의 과세당국은 독일에 소재하는 회사가 다른 EU회원국의 관계회사에 지불하는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부과하지 않는다. 필요조건은 이 이자 등의 수취회사가 지불하는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혹은 제3의 회사가 두 회사에 모두 25% 이상의 직접지분을 가지는 경우이다. 동 조항은 특별한 경우 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해당되는 회사의 형태는 소득세법 부록 3과 3a에 수록된다.

2. 법인세법

가. 외국세액공제의 제한

위 소득세법의 동일한 내용이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법인세법 제26조 6항 1절).

나.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하여서 2003년부터 적용되는 독일 법인세법 제15조에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해외로부터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총액(gross)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본래 2001년 12월 20일의 세법개정에 들어 있는 내용이나 이는 법인세법 제8b조 의미의 해외의 피지배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최근까지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해외로부터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동 규정을 해외배당에 적용하지 않은 결과 개인기업이나 파트너십의 경우에 중간에 국내 피지배회사를 개입시킴으로써 해외배당을 이중과세방지조약의 규정을 이용하여 과세되지 않고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한 바 있었다.

다.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 rule)

2003년 12월 12일의 판례(Lankhorst-Hohorst GmbH)에서 유럽재판소(ECJ)는 독일 법인세법 제8a조가 EC treaty 4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독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가 EU 내의 외국 지분보유자의 부채를 통한 자금조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하여서 2003년부터 적용되는 독일 법인세법 제15조에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해외로부터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총액(gross)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제8b조 의미의 해외의 피지배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최근까지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해외로부터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달(debt-financing)이 독일 국내의 지분소유자에 비하여 차별되고 있다는 것이다[9].

새로운 독일 법인세법 제8a조에 의하면 지분을 25% 이상 가지는 지분소유자(중간에 파트너십이 개입되어도 동일함)나 그 특수관계인이 제공하는 대여금 혹은 특수관계인이나 지분소유자의 지불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지불되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지분보유자가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배당으로 간주된다[10].

이때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debt-equity-ratio 1.5:1의 safe haven으로서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대여금 수준
② 매년 maximum 250,000 EUR의 대여금
③ 6개월 미만의 단기 대여
④ 그리고 그 대여조건이 ALP에 합당한 경우이다.

파트너십을 중간에 개입하여 제8a조를 피하는 방법을 무력화시킨 것도 과거와 달라진 사안이다. 또 8a조 6항에 새로운 남용방지(anti-abuse) 조항을 도입하였다. 부채가 지분구매 목적으로 성립되고 부채의 공여자와 지분판매자가 지분소유자에게 대외조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지분관계 25% 기준 등)에 있으면 그 이자에 대하여 은닉배당이 적용된다.

이 과소자본규제와 관련하여 또 독일에서는 영업세법 9조 10항을 폐지하였다. 과거 동 조항은 과소자본규제로 인하여 법인소득에 합산되는 이자비용부인액에 대하여 영업세법상의 과세소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향후에는 영업세법상의 과세소득이 된다.

라. 손실이월공제의 제한

2004년부터 손실의 이월공제 조항에 제한을 둔다. 1백만유로까지의 손실은 그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서 모두 이익과 상계되지만 1백만유로를 넘어서는 손실 부분은 그 다음 과세연도의 1백만유로를 넘어서는 과세소득의 60%까지만 상계가 허용되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며 이후 계속되는 연도에서도 60% 제한 규정은 적용된다.

9) Gnuschke(2004)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과세당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위주로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기타 조항

해외배당의 5%를 불공제비용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과거는 해외배당에만 적용하였으나 향후 국내배당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8b조 5항). 이에 따라 양도차익과세와 관련하여 8b조 3항에도 향후 주식양도차익의 5%를 불공제비용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위 법인세 8b(5)조항의 남용방지를 위하여(배당을 유보함으로써 주식양도차익화 하는 경우)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3. 영업세

지금까지 영업세는 법인이나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과세소득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과세기반으로 하고 각 지자체별로 동 지자체에 귀속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과세기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징수율을 곱한 액수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각 지자체의 징수율은 0%에서 515%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300%에서 400% 사이의 징수율을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업세의 유효세율은 지자체별로 과세소득의 15% 내지 20% 정도였다.

이번의 세법개정으로 이 일괄적인 세율 5%는 3%로 낮아졌다. 따라서 영업세 부담이 40% 정도 감해진 것이다. 반면에 과거 영업세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었으나 향후 이를 더 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결국 영업세의 실질적인 세부담 수준은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이번의 세법개정은 각 지자체의 징수율 결정에서 최소 징수율 200%를 규정하였다. 이는 지자체 간의 사업체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분야에서 도입한 손실이월공제의 제한을 영업세 분야에서도 도입하였다.

4. 국세기본법

최근까지는 1983년에 제정된 재무성 시행령인 '다국적기업의 귀속소득의 세무감사와 관련한 행정원칙' 에 따라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무감사가 진행되었으며 동 시행령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OECD의 견해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연방재정법원의 2001년 10월 17일의 판결에 따라 법률제정권자는 증빙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증빙책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2003년 5월 16일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증빙자료와 관련한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동 개정에 의하여 삽입된 국세기본법 제90조 3항 5절에 의하여 연방재무성은 2003년 10월 28일부로 국세기본법 제90조 3항 의미의 기장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종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국세기본법에는 이제까지 제90조 2항에서 요구하는 과세당국에 대한 일반적인 협조의무 이외에 그를 넘어서는 특별한 증빙자료의 작성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동 법령의 제정과 함께 해외의 관련기업과의 사업관계에 대하여 증빙자료의 작성과 관련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90조 3항은 향후의 독일 내 납세의무

연방재정법원의 2001년 10월 17일의 판결에 따라 법률제정권자는 증빙자료작성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증빙책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2003년 5월 16일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증빙자료와 관련한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었다.

자와 해외의 관련기업 사이에 이전가격에 대한 기장 및 증빙자료 작성의무의 법적인 토대를 창설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의 관련기업과의 사업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작성의무가 EU treaty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국내거래에도 요구하지 않는 한 이는 차별적이라는 것이다[11].

가. 2003년 5월 16일의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1) 국세기본법 제90조 3항(증빙의무) 도입

동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대외조세법 제1조 2항 의미의)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관계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증빙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증빙의무는 가격설정이나 다른 조건에 대한 관련기업과의 독립기업간 원칙에 입각한 계약의 사업적 그리고 법적 기반을 포함한다.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한 증빙의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증빙의무는 또 국내적 과세의 목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국내사업 해외의 고정사업장에 분할하여야 하는 납세자와 해외사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소득을 결정하여야 하는 납세자에게도 적용된다.

동 조항은 또 동 규정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증빙자료의 형식,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재무성이 연방상원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과세당국은 세무감사의 목적으로만 동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은 뒤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2조 3항(증빙책임 불이행의 부담과 소득추정의 위험) 도입

납세의무자가 증빙자료를 만들지 않거나, 준비된 증빙자료가 내용이 부실하거나, 혹은 90조 3항 3절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되지 않는 등 위 90조 3항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증빙자료의 도움으로 계산될 독일 내의 정당한 과세소득이 그들이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12].

이러한 경우 과세당국이 소득을 추정하여야 하

11) Raedler(2004)
12) 이는 반론이 가능한 추정이다.

고, 또 상/하한선 결정만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이 추정되어야 한다면 이때 소득의 추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한도가 소진되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2조 4항(벌칙 조항) 도입

준비된 증빙자료가 내용이 부실하거나, 혹은 90조 3항 3절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증빙자료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는 5,000유로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벌칙금은 또 경정소득의 5%에서 10%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는 이 액수가 5,000유로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사용가능한 증빙자료가 기한보다 늦게 만들어지는 경우 동 벌칙금은 1백만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초과한 기간 일일당 100유로보다는 적을 수 없다.

그러나 벌칙금은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이 경미하거나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나. 2003년 10월 28일의 연방재무성 시행령에 나타난 납세의무자의 기장 및 증빙자료 작성 의무

2003년 10월 28일의 연방재무성 시행령에는 기장 및 증빙자료 마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1) 납세의무자의 기장 및 증빙자료 마련의 기본 원칙(동 시행령 제1조)

동 시행령 제1조에는 국세기본법 제90조 3항에 따라 작성되는 기장 및 증빙자료에는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자(대외조세법 제1조 2항에서 규정)와 자신이 가지는 사업관계(대외조세법 제1조 4항에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이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 사업관계에서 독립기업간 원칙(제3자 비교원칙)이 존중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조건이나 가격을 기초로 하였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기초로 하였는지가 파악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장자료는 특수관계자와의 사업관계를 독립기업간 원칙(제3자 비교원칙)을 존중하면서 수행하려는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이 기장의무는 (자회사로의) 근로자 파견이나 공동사용합의(예를 들어 비용분담계약 같은) 등에 대한 합의 같은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업관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전반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기장자료(국세기본법 제162조 3항 및 4항)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제2항에서는 위의 제1항의 기장내용이 국세기본법 제90조 3항 1절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 사업관계의 종류, 범위, 전개 및 법적 · 경제적인 틀에 대하여 기장 및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자와 자신이 가지는 사업관계에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이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 사업관계에서 독립기업간 원칙(제3자 비교원칙)이 존중되었는지 여부가 국세기본법 제90조 3항 2

국세기본법 제90조 3항에 따라 작성되는 기장 및 증빙자료에는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자와 자신이 가지는 사업관계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이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 사업관계에서 독립기업간 원칙(제3자 비교원칙)이 존중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조건이나 가격을 기초로 하였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기초로 하였는지가 파악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절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 납세의무자의 활동과 합의된 조건 등에 의미를 가지는 시장상황과 경쟁관계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기장 및 증빙자료 작성에서 그가 선택한 방식에 합당한 비교자료를 결부시켜야 한다. 단 이는 납세의무자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관계에 대한 합의 시점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른 통제되지 않은 원천으로부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자료의 작성에 요구되는 정보에는 무엇보다도 제3자간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와 납세의무자나 특수관계인이 제3자와 체결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가격과 거래조건, 비용분할, 이윤율, 총마진율, 순마진율, 이익분할 등이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합의한 이전가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업 내부적인 자료에 대한 기장 및 작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예를 들어 판매, 순익, 비용 등에 대한 전망치 계산이나 관련자료를 말한다고 보고 있다.

2) 증빙자료의 종류, 내용 및 규모(동 시행령 제2조)

제2조 제1항에서 기장 및 증빙자료 작성은 서면이나 전자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동 자료는 전문가적으로 작성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동 자료는 전문가인 제3자가 적절한 시간 내에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사업관계 속에서 특수관계인과 어떠한 사업내용을 실현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어느 정도로 제3자 비교원칙을 준수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증빙자료의 종류, 내용 및 규모는 개별적인 상황, 특히 납세자가 적용하는 이전가격방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왜 자신의 거래 종류나 기타의 관계에 비추어 그가 적용하는 이전가격방법이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하나 이상의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제3항에서는 기장은 기본적으로 개별거래별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기능과 리스크가 비교할 만한 개별거래들은 한 그룹으로 기장될 수도 있다. 단, 이때 그룹합산이 사전에 확정되고 사후에 실행 가능한 규칙에 의하여 이행되는 경우, 개별거래들이 같은 종류이거나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그룹합산이 제3자간에서도 통상적인 경우에 한한다. 그 외에 그룹합산은 본래 개별거래가 연관이 되어 있거나 전체거래의 부분인 경우에 그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개별거래보다 전체거래에 대한 판단에 보다 의존하게 될 때에도 허용된다. 개별거래들이 한 그룹으로 기장되어지는 경우 그룹합산의 기준과 합산진행의 규칙에 대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하나의 관계기업 그룹에 제3자 비교원칙을 충족하는 내부거래의 이전가격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개별기업에게 하나나 그 이상의 적절한 방법을 허용한다면 이 지침은 기장이나 증빙자료의 한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침이 가격조사를 규정하고 실제로 준수된다면 개별거래에 적용되는 개별기장은 포기되어질 수 있다.

지속되는 거래상황에서 약정된 가격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을 때 납세의무자는 거래종료 후에라도 과세당국이 제3자까지 거래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동의하였을까 혹은 어느 시점부터 동의하였을까에 대하여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기장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한 사업분야에서 제3자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세무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도록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하다(제4항).

3) 비경상적인 종류의 거래에 대한 시간적으로 적절한 기장 및 자료작성(동 시행령 제3조)

동조 1항에서는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한 기장 및 증빙자료는 거래와 밀접한 시간적 관계에서 작성되는 경우 시간적으로 적절한 기장으로 보고 있다. 동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면 시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

동조 2항에서는 비경상적인 거래는 특히 관계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의 이윤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 속의 자산의 이전, 기업 내에서 기능과 리스크의 주요한 변화, 이전가격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전략의 변화와 관련되는 개별거래들,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기적인 계약의 체결이나 변화 등이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4)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장 및 자료작성(동 시행령 제4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기장 및 자료작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분관계, 사업활동, 조직구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a) 세무조사 대상연도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그와 직 · 간접으로 사업관계를 가지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지분관계에 대한 설명 및 세무조사 대상연도의 끝 시점까지의 변화

b) 특수관계자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정황에 대한 설명

c) 고정사업장과 개인기업에의 지분참여를 포함한 연결기업의 조직상의 그리고 사업상의 구조와 그 변화에 대한 설명

d) 납세의무자의 활동범주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서비스, 재화의 생산과 판매, 연구개발 등

개별거래들이 한 그룹으로 기장되어지는 경우 그룹합산의 기준과 합산진행의 규칙에 대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하나의 관계기업 그룹에 제3자 비교원칙을 충족하는 내부거래의 이전가격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개별기업에게 하나나 그 이상의 적절한 방법을 허용한다면 이 지침은 기장이나 증빙자료의 한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② 특수관계자와의 사업관계
  a) 특수관계자와의 사업관계에 대한 설명, 이러한 거래관계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요약(예를 들어 상품구매, 서비스, 부채관계, 다른 종류의 혜택제공, 비용분담)과 사업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계약과 그 변화에 대한 요약
  b) 납세의무자에게 속하며 그가 특수관계자와의 사업관계 틀 속에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제공하는 주요한 무체자산의 목록
③ 기능과 리스크 분석
  a)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자가 각각 사업관계의 틀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짊어지는 리스크, 그리고 그 변화, 투입되는 주요 경제재, 합의된 계약들의 조건, 선택된 사업전략, 그리고 의미 있는 시장 및 경쟁상황에 대한 정보
  b) 가치창출고리에 대한 묘사와 사업관계를 가지는 특수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납세의무자의 가치창출 기여분에 대한 설명
④ 이전가격 분석
  a) 적용되는 이전가격방법에 대한 설명
  b) 적용되는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
  c) 선택된 이전가격방법의 적용에서 계산근거자료
  d) 비교를 위하여 수집한 독립된 기업의 자료
  가격이나 재무자료의 준비 및 계획한 조정계산의 자료

5)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기장 및 자료작성

특별한 상황이 납세의무자가 합의한 사업관계에 의미가 있을 경우나 납세의무자가 체결한 사업조건이 제3자간의 보편적인 것이라는 증명이 특별한 상황에 근거를 두는 경우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대한 기장이나 자료작성 의무는 위에서 언급한 동 시행령 1-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기장이나 자료작성이 요구된다.

① 사업전략의 변화(예를 들어 시장지분전략, 판매경로에 대한 선택, 경영전략)와 이점 상쇄에 대한 조처(이것이 납세의무자의 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와 같은 다른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정보
② 비용분담의 경우 계약서(필요한 경우 주석, 부록, 추가적 합의사항과 함께), 분배기준의 적용과 모든 참여자들에게 기대되는 효용의 증가에 대한 자료 및 회계감사의 종류 및 범위, 변화된 (지분)관계에 대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자료에 대한 접속권한 및 이용권의 귀속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

③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업관계와 관련된 외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승인이나 합의 혹은 외국에서 신청되거나 합의된 상호합의나 조정심판 절차에 대한 정보
④ 납세의무자의 가격조정에 대한 기장 및 자료작성(이는 이것이 이전가격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인이 속한 외국 세무당국의 사전적 안내에 기인한 것이라도 마찬가지 임)
⑤ 납세의무자가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세무상의 손실을 가지는 경우, 손실의 원인과 납세의무자나 특수관계자의 손실상황 극복을 위한 조처에 대한 기장 및 자료작성

다. 적용시점

이 증빙자료와 관련한 규정을 기업은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역년과 동일한 경우 동 규정과 관련한 의무는 이미 2003년에 수행되어야 한다.

5. 소비세 분야

소비세 분야에서는 자동차세 분야와 담배세 분야에서 세법이 개정되었다. 자동차세는 일반승용차의 경우 실린더 용량 100cm³당 매년 10.84유로에서 15.13유로로 인상되었으며 디젤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3.06유로에서 27.35유로로 인상되었다. 담배세의 경우는 2004년의 인상 이후에 또 2005년 9월 1일부터는 예정된 마지막 단계의 담배세 인상이 시행되는데 지난 번 경우처럼 개비당 1.2센트가 인상된다.

6. 대외조세법

가. 과세소득 재산정 규정의 엄격한 적용(대외조세법 제1조)

대외조세법(AStG: Aussensteuergesetz) 제1조에 국내의 납세의무자가 국외의 특수관계인과 독립기업간 원칙에 부응하지 않는 가격에 합의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소득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세소득 조정의 전제조건은 국내의 납세의무자와 국외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관계(business relationship)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조세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business relationship 성립의 조건은 단순지분관계만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기업과 해외의 자기업 사이에 흔한 보증(guarantee statement)은 규율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번의 세법개정에서 독일의 입법권자는 이를 개정하였는데 대외조세법 제1조 4항에서 향후에는 소득조정의 전제조건인 거래관계의 성립을 폭넓게 해석하도록 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거래관계는 단순한 계약적 합의 관계를 넘어서서 회사법적인 관계를 제외한 모든 민법적인 관계를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구속하는 내용을 담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규율대상이 된다[13].

13) Amann/Goettsche/Stockmann(2004)

대외조세법 제1조 4항에서 향후에는 소득조정의 전제조건인 거래관계의 성립을 폭넓게 해석하도록 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거래관계는 단순한 계약적 합의 관계를 넘어서서 회사법적인 관계를 제외한 모든 민법적인 관계를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구속하는 내용을 담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규율대상이 된다.

나. 해외발생이익에 대한 과세강화(CFC rule: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의 범위 확대

최근까지 사업소득은 재화가 국외에 소재하는 판매 혹은 구매법인에 의하여 국내의 지분소유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인도되는 경우에 혹은 그 역의 경우에만 수동적 소득으로 인정되고 CFC rule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독일 내 거래나 외국에서의 거래는 수동적 소득을 규정하는 조건에서 제외되었다.

2003년 4월 11일의 법개정으로 향후에는 수동적 소득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외국법인에 대한 지배(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통제(control))만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인도나 외국 내 인도도 수동적 소득을 구성하는 조건에서 해당될 수 있다.

2) 조세조약 규정의 무효화(overriding over tax treaties)도 성립

CFC rule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해외법인의 수동적 소득은 비율대로 독일의 지분소유자의 과세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나 최근까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규정하는 지분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조건이 성립(대외조세법 제10조 5항)되면 CFC rule의 예외가 인정되어 수동적 외국소득에서 제외되었다.

2003년 4월 11일의 법개정으로 향후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보호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구조에 변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 규범을 통하여 독일은 국제법적인 질서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독일은 이 입장이 국내의 조세회피대처규정(anti-avoidance-provisions)을 강화하려는 OECD 다수 국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4].

3) 고정사업장(PE)과 파트너십의 소득도 성립

최근까지는 해외의 PE나 파트너십의 수동적 소득에는 금융투자로부터의 수동적 소득을 제외하고는 독일의 CFC rule이 적용되지 않았다(대외조세법 제20조 2항).

그러나 2003년 4월 11일의 법개정으로 향후에는 해외의 PE나 파트너십의 수동적 소득에도

14) Amann/Goettsche/Stockmann(2004)

동 소득이 저세율국가의 PE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수동적 소득의 조건을 충족하면 독일의 CFC rule이 적용된다.

IV. 요약 및 정책시사점

최근 1~2년간 독일 세제개혁의 내용 요약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은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과세, 즉 국제조세 분야의 내용인데 이 분야에서 독일의 세법은 크게 두 가지 충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우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국제조세 분야의 규범이 매우 강화되었다. 납세의무자들에게 가장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세법개정은 국세기본법 분야의 이전가격과세 관련 납세의무자의 증빙자료 제출의무의 강화로서 이전가격 조작에 대한 증빙책임이 과세당국에서 대폭 납세의무자에게 이양됨으로써 과세당국의 활동이 훨씬 쉬워지고 강력해질 전망이다. 또 대외조세법을 통한 해외발생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되고 뿐만 아니라 국내세법(소득세 및 법인세)의 국제조세 관련규정도 외국세액공제의 제한 등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독일은 또 국제조세 분야에서 위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EU의 시장단일화 일정에 맞추어 독일뿐 아니라 EU의 회원국은 EU조약에서 결정된 규범을 수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로서 EU회원국과 독일 내 기업과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가 크게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는 독일 내에서 적용되던 연결납세제도가 독일 소재 기업과 기타 EU회원국 소재 기업 사이에서도 적용되게 되고, 독일의 과소자본세제가 EU 기업과 독일 소재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ECJ의 판결에 따라 과소자본세제가 완화되었으며, EU의 모자회사 지침 및 이자 및 사용료 지침의 수용되면서 EU회원국으로 지불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되었다.

다음으로 독일 입법부는 수 년 전 계획된 세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이는 소득세율의 지속적 인하와 담배세 및 자동차세율의 지속적인 인상을 의미한다.

또 독일 과세당국은 이자 등 자본소득과 관련한 국제적 조세경쟁의 환경에서 독일의 고율과세를 피하여 해외로 도피한 자본이 독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조세사면법을 시행하였다.

지방재정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으로 유해한 조세경쟁과 유사한 일이 국내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율을 낮게 하고 세원을 넓게 하는 제도의 단순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징수율의 최소수준을 정하였다.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최근 독일 세제개혁의 정책방향은 국제적인 세제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소득세 및 자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인하, 환경세의 강화,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세제 단순화 및 EU 규범의 수용으로 판단된다. KiPF

최근 독일 세제개혁의 정책방향은 국제적인 세제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소득세 및 자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인하, 환경세의 강화,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세제 단순화 및 EU 규범의 수용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유찬,「최근 독일의 세제개혁」,『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년 1월호.

김유찬,「독일 및 EU의 회계동향」, *FES-Information-Series*, 2003-06

R. Amann/M. Goettsche/F. Stockmann, "Summary of Changes in German International Tax Law in 2003," in: *Intertax*, Vol. 32, Issue 5, 2004, pp 223~231.

K. Gnuschke, "Recent Developments in German International Tax Law: Influence of European Law," in: International Tax Law for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pp 91~110.

KPMG, Verordnug zu Art, Inhalt und Umfang von Zeichnungen im Sinne des Artikel 90 Abs. 3 der Abgabenordnug, 28. Okt. 2003.

KPMG, Tax News Flash Germany, December 23, 2004.

A. J. Raedler, "recent Trends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taxation," In: *Intertax*, Vol. 32, Issue 8/9, 2004, pp 365~376.

E. M. Sunley, "The Pros and Cons of Formulary Apportionment," Cesifo Forum, Spring 2002, pp 36~37.

J. M. Weiner, "Formulary Apportionment and the future of company taxation in the European Union," Cesifo Forum, Spring 2002, pp 10~20.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미국, 부시 "연금개혁 위한 세금인상 없다"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언급

○ 부시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전문가들과 만난 후 "이 문제(사회보장기금 문제)를 풀기 위해 고용세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기 시작할 때 사회보장제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함

○ 그는 "194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현재 퇴직한 미국인이나 앞으로 퇴직할 미국인들에게 전혀 변함 없이 적용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이 제도는 11조 달러 가량의 단기부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

□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기금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차원에서 청년층에게 각자 인명계정에 고용세를 떼어놓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머니투데이 12/10〉

최근 중국의 조세제도 개편 추진과 그 배경

-경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조세제도의 문제점 노정

□ 중국은 1994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공상통일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및 일원화, 조세수입의 중앙정부 분배비중 상향 조정, 국내기업 소득세율 인하 및 일원화, 외자기업 소득세 일원화 등을 이루었으나 최근 IT 등 첨단 분야 기업투자의 미흡, 재정악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 최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IT 등 첨단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에 부담

○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조세기반이 약화* 된 가운데 경제개발 목적의 지방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

*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비율은 22 : 78(1993년) → 55 : 45(2003년)로 크게 변화

○ 또한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준조세 징수 등으로 지방주민과 기업의 부담이 가중

□ 소득세 징수체제 미흡 및 탈세 만연 등으로 직접세 세수비중이 낮고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변동이 심하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취약

○ 직접세(기업 · 개인소득세) 비중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4.4%(2002년)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세수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

–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기타세의 경우 전체 조세수입의 2.3%에 불과(2002년 409억위안)

○ 한편 소득세원별로 별도 과세됨으로써 다양한 소득원천을 갖는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조세수입도 감소

– 2002년 말 예금 잔고는 8조 7천억위안에 달하나 이자세를 포함한 총 개인소득세 징수규모는 1,212억위안으로 예금 잔고의 1.4%에 불과

○ 소득세 체계 및 조세우대 혜택을 악용하여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탈세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전문가들은 상당수 외자기업의 적자보고*를 탈세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유실 금액이 최소 30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중국 언론(환구시보)에 따르면 외자기업 가운데 55%가 적자를 보고하고 있다고 보도

– 특히 광동지역 외자기업 중 약 90%의 기업이 불법거래로 이익을 내고 있으며 본국 소재 모기업과의 거래가격 조작을 통한 이익축소로 상당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동 사례가 중국 탈세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가 과다하여 국내기업과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조세수입 증대에 걸림돌

〈직접세 및 간접세 비중〉

(단위: 억 위안, %)

	간 접 세			직 접 세		총조세수입
	증 치 세	영 업 세	소 비 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1999	3,882(36.3)	1,669(15.6)	821(7.7)	1,216(11.4)	414(3.9)	10,683
2000	4,553(36.2)	1,869(14.9)	858(6.8)	1,662(13.2)	660(5.2)	12,582
2001	5,357(35.0)	2,064(13.5)	930(6.1)	2,631(17.2)	995(6.5)	15,301
2002	6,718(35.0)	2,450(13.9)	1,046(5.9)	3,083(17.5)	1,212(6.9)	17,636

주 : ( )는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자료: CEIC

〈기업소득세 감면현황〉

경영기간	기 업 유 형	감 면 기 간
10년 이상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	2년 면세, 3년 50% 감면
	인프라 투자 및 농업개발부문 해남경제특구 외국인투자기업	5년 면세, 5년 50% 감면
	투자액 500만달러 이상, 경제특구 외국인투자기업	1년 면세, 2년 50% 감면
	첨단기술 개발구의 합자기업	2년 면세, 2년 50% 감면
	직접회로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5년 면세, 5년 50% 감면
15년 이상	항만 · 부두 건설기업	5년 면세, 5년 50% 감면
	상해포동개발구 소재 교통건설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기업	5년 면세, 5년 50% 감면

주 : 감면기간은 이익발생 연도부터 적용

로 작용

○ 공식적인 세율은 국내 및 외자기업 모두 33%이나 외자기업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실질적 조세부담은 국내기업의 절반에 불과

○ 또한 지방정부간 외자기업 투자유치 경쟁으로 세제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함으로써 세수감소를 초래

* 많은 개발구가 상한선을 넘어 5년 면세 이후 5년간 50%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

– 지방정부의 세제혜택 남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 강화로 일부 지방에서는 납세후 환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세금감면액을 세수감소가 아닌 세출 증가로 편법처리하는 사례도 발생

□ 소득이 높은 도시보다 농촌의 세금부담이 높은 조세체계의 불합리가 도·농간 소득격차를 확대

○ 도시 주민의 조세부담률은 7%를 하회하나 농촌의 경우 농업세(세율 7%) 및 지방정부 지출부담금(세율 1.4%), 농업용 생산재에 대한 증치세 등을 포함할 경우 실질 조세부담률이 15%에 달함

– 또한 도시 임금소득의 경우 세금납부 하한선(월 800위안)이 존재하나 농촌의 농업소득의 경우 하한선이 부재

- 최근 조세체계의 정비가 단계적으로 진행

□ 그간 투자과열 및 조세수입 감소 우려로 증치세(增値稅)의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동북 3성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동 지역에 전격 도입

○ 2004년 초 동북지역의 투자 지원을 위해 8대 산업(장비제조,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 대해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세금 일부를 감면

– 아울러 동 지역에 대해 고정자산 감가상각률 인상 및 무형자산의 상각연수 단축 등 간접적 세제혜택도 부여

○ 정부는 증치세 투자세액공제제도의 동북지역 운용성과를 본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

– 다만 투자장려산업을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며 대체로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수출증치세의 경우 2004년 1월 환급률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환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

– 수출증치세 환급률의 인하는 기업의 수출비용을 증가시키므로 경쟁상대국과 같이 수출시 전액 환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 기업소득세 부문에서는 WTO 가입에 따른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동등 대우원칙 확립 및 지역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세금우대 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종전 33% → 25~30% 범위안)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축소 및 세금탈루 단속 강화 등도 추진

○ 경제가 낙후된 서부 내륙지역에 외국인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동 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

* 2002년중에도 기업소득세 우대제도의 축소 움직임이 있었으나 FDI 유입 감소에 대한 우려로 시행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동부 연안지역의 기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제상 우대를 유지한다는 방침

□ 종합소득세 도입 및 소득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개인소득세 징수확대방안을 마련

○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징수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탈세가 많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300만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소득세 감면범위 확대*(월 800위안 → 1,200위안) 및 최고세율 인하(45*% → 40% 미만)도 추진

* 동북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올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세원확대와 납세형평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도입도 검토

□ 농업부문 전문가인 원쟈바오 총리의 취임 이후 농촌의 세부담 경감을 추진

○ 담배세를 제외한 농업특산세를 폐지하고 농업세도 2008년 말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방침

– 이를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농촌의 소비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조세제도 개편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조세제도의 개편은 국가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한편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고 경제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등 중국의 경제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첨단산업, 환경보호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서부내륙과 동북지역에 대한 세금우대 확대로 동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 민간기업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직접세 징수 증가로 조세수입이 확대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평가

– 저소득층 및 농촌의 조세부담 완화 등 소득격차 축소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가속될 전망

□ 그러나 지방세제 개편이 아직 착수되지 못하는 등 광범위한 조세제도 개편이 단기간 내에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방주민 및 기업도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과중한 세금 및 세외비용을 부담

– 이에 따라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방세 조세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

– 소득세·영업세 중심에서 재산세·소득세 위주로 전환하고 특히 현재 비중이 낮은 재산세 비중을 높이는 한편 현행 준조세(세비)를 조세로 편입하고 지방정부에 일정한 조세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준조세의 위법적 징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04-49호, 11. 28~12. 4〉

일본, 환경세 도입 관련 논란 확산

□ 최근 일본에서는 환경성이 환경세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제산업성·경단련 등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

□ 환경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6. 1부터 에너지 소비에 환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11. 6)한 데 이어, 이를 포함한 온실가스 종합대책안을 중앙환경심의회에 보고(12. 10)하는 등 추진의지를 재확인

□ 이와 관련, 정·재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세 도입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에너지·물류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 경단련 등 경제단체들은 환경세가 도입될 경우 중국·인도 등으로 생산시설이 이전되어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세계 전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총궐기대회를 개최(12. 9)

○ 또한, 자민당 세제협의회도 환경세의 온실가스 억제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세수활용 방안 등에 대한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제개정을 유보키로 결정(12. 10)

〈국정원, 『국제경제』, 12/17〉

오스트리아, 강력한 친환경 유류세 · 환경세 도입

□ 최근 실시된 환경 관련 설문에서 오스트리아 국민의 97%가 적극적인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실시를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11월 9일 오스트리아 환경부장관 요제프 프뢸(Josef Proell)은 친환경적 유류세 및 환경세 법안 변경안을 발표

○ 우선 유류세의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5년 10월 1일부터 바이오 유류(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자동차 유류) 의무사용량을 2.5%로, 2008년 10월 1일부터는 5.75%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친환경 유류(무유황이며 바이오 유류의 최소함유량을 지킨 유류)의 경우 유류세를 리터당 0.5센트를 인하시켜 디젤유의 경우 29.7센트, 휘발유의 경우 41.2센트가 되도록 하게 하며 상기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디젤유 및 휘발유의 경우 각각 리터당 0.8센트 및 1.3센트를 세금으로 징수당하게 됨

○ 바이오 유류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류세가 면제되며, 디젤유는 2005년 10월 1일부터 휘발유는 2006년 10월 1일부로 발효시점을 명기하였음

○ 휘발유의 발효시점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체유류인 바이오 에탄올의 공급량을 비축하기 위해서임

□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두 번째 대책은 환경세를 이용한 디젤승용차용 미세먼지 제거필터 장착을 유도하는 것임

○ 이러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세 부과시 인센티브 및 과징금을 부과시켜 최대한 빨리 디젤필터가 승용차량에 보급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0.005그램을 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부과된 환경세(배기량에 따라 부과율 상이) 중 300유로를 절세하게 됨

○ 그러나 상기한 기준치를 넘는 신규차량의 경우 2005년 7월 1일부터 부과된 환경세의 0.75%, 최고 150유로를, 2006년 7월 1일부터는 부가된 환경세의 1.5%, 최고 300유로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이와 같이 유류세 및 환경세를 정책수단으로 이용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친환경적인 유류보급을 확대시키는 한편,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국민생활건강을 지키고자 하고 있음

○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유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디젤자동차 산업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걷어내고 기술혁신을 통해 이 산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도 유럽에서 일고 있는 환경관련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임

〈KOTRA, 『경제무역정보』, 12/20〉

재정 정책

중국, 환율 고수땐 경착륙

□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페그)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미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세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위안(元)화 환율을 달러에 고정하는 정책이 베이징(北京) 당국이 시행중인 경기진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보고서는 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 투자증가, 물가상승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지만 중국이 대출축소 등을 통해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

□ 재무부는 "중국이 경제·재정·시장부문에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이 확고하게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들(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더욱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올해 중국과 세 차례 회의를 했다고 덧붙임

○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회견에서 "환율조작을 통해 장기적인 번영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공개적인 시장원칙에 따라 통화가치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에 대한 달러가치는 다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음

○ 유로당 달러 환율은 1.3399달러로 종전 기록(2일 1.3383달러)을 경신

○ 달러가치는 미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의 지난 달 일자리 증가(11만 2천개)가 예상치(20만개)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급락

〈중앙일보 12/04〉

러시아, 舊蘇부채 모두 갚기로

□ 고유가에 따른 석유판매대금 수입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진 빚을 갚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로이터통신은 10일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이 석유판매대금 수입증가로 예산안정화기금이 풍부해짐에 따라 내년 파리클럽에 100억달러의 부채를 조기상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

○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러시아가 과거 소비에트 시절 진 460억달러의 부채도 3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다고 말함

□ 러시아는 올 들어 계속된 유가상승으로 중앙은행의 외환 및 금보유고가 1,216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전세계 6위에 오름

○ 러시아의 올해 보유고는 지난 주 45억달러가 증가하며 지난 3일까지 5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

○ 이에 따라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홍콩을 앞질렀으며, 아시아를 제외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음

□ 막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을 늘려온 중국 등 아시아의 호랑이들과는 달리 러시아의 외환보유는 석유수출 확대와 루블화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달러화 매입에 힘입은 것임

○ 그러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러시아는 올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 목표치 8.5%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 중앙은행의 강력한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루블화는 지난 두 달간 달러화에 비해 4%나 올라 이번 주 초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서울경제신문 12/10〉

미국, 내년 긴축정책 선회

□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내년 긴축재정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출범 이후 경기 침체와 대테러전 등을 이유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

○ 이에 대해 존 스노 재무장관은 19일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하였으며 백악관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스노 장관은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6 회계연도 정부예산안이 재정지출 감축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

○ 부시 행정부는 내년 초 의회에 2006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스노 장관은 "2006 회계연도 예산은 재정지출이 억제된 긴축예산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재정지출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힘

○ 스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앞으로 수년 내에 재정적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어떤 부문의 예산이 삭감될지, 부시 대통령이 내세운 재정적자 절반 감축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아울러 백악관은 국방부에 앞으로 수년간 국방예산 수백억달러를 삭감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날 보도

○ 이는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추진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계획의 종료를 알리는 것으로 풀이됨

○ 한 소식통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난 주 국방예산을 앞으로 6년간 600억달러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고 전언

○ 부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내에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 정도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3 회계연도에 3,771억 4,000만달러, 2004 회계연도에 4,125억 5,000만달러로 연속 최대규모를 기록했음

○ 미 의회 예산국(CBO)은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가 총 2조 3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미국정부의 채무상환부담 확대와 부시 행정부의 집권 2기 과제인 사회보장제 개혁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 등이 재정적자 감축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음

〈세계일보 12/20〉

일본, 82조 1천8백억엔 규모 내년 예산안 확정

(국채 34조 3천9백억엔 신규 발행...올해보다 감소)

□ 일본정부는 82조 1천8백억엔 규모의 2005 회계연도('05.04~'06.03) 일반회계예산 정부안을 최종 확정

□ 20일 각의에서 확정된 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7백억엔(8.5%) 늘었으며 경상지출은 47조 2천8백억엔으로 올해보다 3천5백억엔 가량 감소

○ 정부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34조 3천9백억엔 규모의 국채(JGB)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계획

○ 이는 올해의 36조 5천9백억엔에 비해 2조 2천억엔 감소한 수치

○ 아울러 2004 회계연도 말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40%인 719조엔으로 산업화 이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일본 재무상은 "지난 해에는 비교적 완곡하게 일본경제가 본궤도에 들어섰음을 시사했지만 올해는 경제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오는 2010년 초반까지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임

○ 한편, 지난 주 다니가키 재무상은 "아직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힌 바 있음

○ 시장에서는 내년에 총 36조 6천억엔의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추정했었음

〈연합인포맥스 12/19〉

정책흐름

1. 종합투자계획 추진
2.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확정
3. '04년 3/4분기 말 현재 총대외채무 · 대외채권 현황(잠정)
4. 재정운용의 성과와 향후과제
5. 현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

종합투자계획 추진

※ 이 자료는 2004년 12월 29일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에서 발표한 「종합투자계획 추진」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정부는 12월 29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05년 경제운용방향'과 함께 '종합투자계획(안)'을 논의하고,

○ 내년 초부터 세부사업 결정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였음

□ 정부는 종합투자계획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 민간의 아이디어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 관리 ·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종합투자계획은 모두에게 상생(Win-Win)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 청년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 부동자금화하고 있는 금융자금,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게 될 것임

○ 무엇보다도 중요한 효과는 국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리스'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앞당겨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임

□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복지 시설로 확대하고, BTL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민간자금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내년중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② 고속도로사업의 조기 추진

–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하여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고, 3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조기 건설 추진

③ IT 및 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 DB, 교통 · 물류시스템 등 IT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추진

④ 임대주택 활성화

– 기 마련한 '임대주택활성화방안(04. 11)'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강구

⑤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확대 추진

⑥ 사립학교에 대한 임차방식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금융

관련 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민간자본 투자 확대

⑦ 05년 이후에는 기업도시 · 신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건설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 향후 종합투자계획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 05년 2월까지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 05년 상반기까지 사업자 지정절차를 거친 후

○ 하반기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유지

○ 내년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매년 40만개 이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성장이 필요

○ 건설경기의 급속한 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연계적 · 보완적 대책 긴요

□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경제사업은 감소하는 추세

→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사업의 부족분 보충 필요

* 영국은 사회기반시설의 약 11%를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중

〈재정 중 경제사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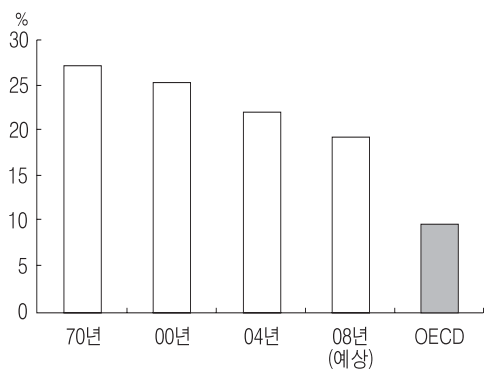

〈복지 및 삶의 질 분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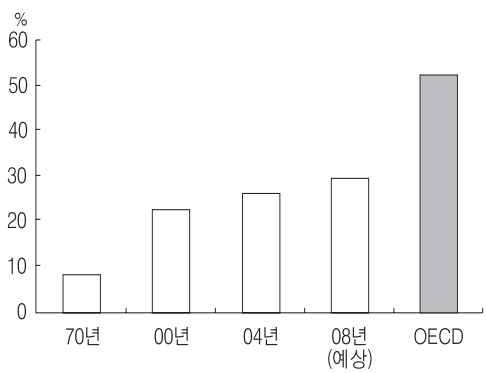

□ 민간의 아이디어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품질과 다양성 · 차별성을 요구

→ 민간 주도의 개발을 통해 연중 신규사업 발굴, 사업내용 다양화, 관리 · 운영 효율화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접목할 필요

Ⅱ. 추진전략

□ **종합투자계획은 모두에게 상생(Win-Win)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

① 청년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 실업자 수(04. 11) : (전체) 77.9만명, (청년실업) 36만명

② 부동자금화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

* 금융기관 6개월 미만 단기수신(04. 11) : 395.2조원
상장기업 · 코스닥등록기업 현금보유액(04. 6) : 43.9조원
* 연기금 여유자금(04. 6) : 200.1조원(채권투자비중 53.8%)
생보사 운용자산(04. 10) : 163.6조원

③ 국민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국가가 리스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앞당겨 제공

영 · 유아기	보육정보센터 설립 직장보육시설 확충
청소년기	초중교 校舍 · 체육관 신 · 증축 대학 기숙사 확충 공공 도서관 확충
청장년기	임대주택 활성화 박물관 · 문예회관 신축
노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Ⅲ. 추진상황

□ **단기적으로는 경제주체별 가용재원을 최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생산부문으로 유도**

① 정부투자 확대 : DB, 교통 · 물류시스템 등 IT 분야와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예산 확보 추진중

②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 사회복지시설까지 대상 확대, 새로운 방식(BTL) 도입 →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중

③ 민간투자 활성화 : 사립학교에 대한 임차방식 도입, 금융관련 펀드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④ 공공부문 투자 확대 :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 등을 통해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공기업 투자 확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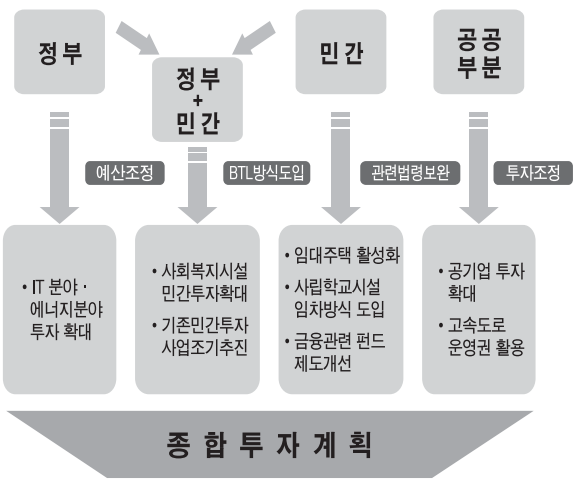

□ **중 · 장기적으로는 기업도시,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 ('기업도시특별법' 04. 12. 9 국회 통과)**

Ⅳ. 2005년중 주요 투자사업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

□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도로 · 철도 등 기존의 SOC 시설 이외에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 · 복지시설로 확대

○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 내년중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

○ 추가되는 사회 · 복지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의 BTO, BOT 방식 외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추가

* BTL :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방식

□ BTL 방식에 맞추어 사업비,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 개발

○ 수익률은 국채금리 +α로 하고, α는 시장참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

□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일괄 타당성 조사실시 등)하여 내년중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치

검토중인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부처별 제안사업)

부 처	주 요 사 업
교육부	초 · 중등학교 노후교사 증 · 개축 초 · 중등학교 체육관 신 · 증축 국립대 기숙사 시설 확충 부산대학병원 건축 등 8개 사업
환경부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거 교체 노후수도관 정비 등 4개 사업
복지부	노인의료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복지회관 확충 등 3개 사업
문광부	도서관 건축 문화 · 예술 시설 건축(박물관, 문예회관)
국방부	군 주거시설 내무반 증 · 개축
노동부	기능대학 시설확충 등 4개 사업
경찰청	경찰서 개축 등 5개 사업
여성부	보육정보센터 등 3개 사업
재경부 등 8개 부처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청사 건설

주요 대상사업별 내용

① 국 · 공립학교 시설 확충

□ 국립대 기숙사, 초 · 중등학교 校舍 등 국 · 공립학교의 시설 확충이 긴요하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

*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수용률(현재 11.3%)을 30%로 확대하는 데에 28년이 소요

* 30년 이상된 초 · 중등학교(전체 학교의 17%) 노후 교사를 증 · 개축하는 데에 20년이 소요

□ 민간투자 방식(BTL)을 활용, 국 · 공립학교 시설을 조기 공급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②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 관거 교체

□ 침수피해 방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대폭적인 하수 관거의 정비가 필요하나, 소요재원이 막대하여 사업이 지체

* 하수관거 보급률은 65.8%에 불과하고,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 꼴로 불량 발생

□ 민간투자 방식(BTL)을 활용, 조속히 정비하여 09년까지 관거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80% 이상)으로 개선

→ 동 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커서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하수관거(기타 토목)사업의 고용유발계수 : 10억원당 15.3인

③ 군인 APT 등 건설

□ 현재 군인아파트의 37%가 시설이 협소하거나 노후화되었으나, 현 예산상황(중기계획)으로 09년에야 개선 완료 전망

□ 민간투자 방식(BTL)을 활용, 당초 계획(05~09년)보다 2년 앞당겨 07년까지 완료 추진

⇒ 05~07년간 군숙소 수요의 70%인 18,000세대 건축

□ 육군통합막사 등 군부대 병영시설 증축사업에 대해서도 일부를 시범적으로 민자유치로 추진

④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 공공도서관은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보장,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 습득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나

○ 재정여건상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노후 시설도 다수

*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04. 12) : 471개관(인구 10만명당 1개관 수준)

□ BTL방식을 활용하여 최신식 공공도서관(예 : 과천도서관) 시설을 조기에 공급할 필요

* 공공도서관 건립 수요 : 총 232관(신축 173, 재건축 59)

추진 구조

① 정부는 대상 사업(사회기반시설)과 사업모델을 제시

② 민간은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출자 또는 융자를 통해 공공시설을 건설

③ 정부(지자체)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장기간 임차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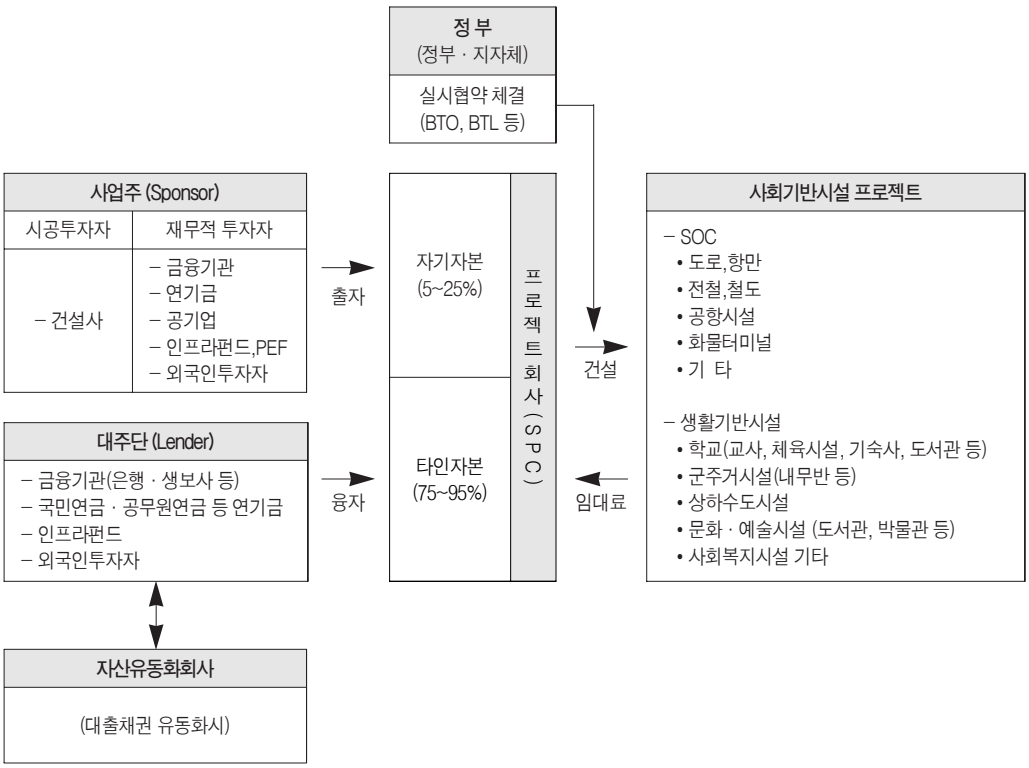

〈참고 1〉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례

① 민자역사

□ **민간투자가가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민자역사를 건설**

→ 역무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소유하고, 상업시설은 30년 점용 허가 후 국가가 소유

* 점용기간 동안 상업시설 수익에 비례하여 점용료 지급

□ **현재 9개 역사(영등포, 서울 등)가 완공 · 운영중**

② 사립대학교 기숙사(건국대)

□ **민간투자가가 대학 내에 기숙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 후 15년간 운영(대학은 연간 일정비율 만실 보장)**

○ 민간의 역할 : (건설단계) 개발 기획,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단계) 시설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 업무

〈사업 개요〉

총투자비 : 470억원

공사기간 : 05. 2 ~ 06. 8(18개월)

투자비 회수 : 기숙사비(97%) + 부대시설 임대료(3%)

③ 민영교도소 도입

□ 민간이 자기부담으로 교도소 부지 확보 · 건물 신축 후 국가로부터 수용자를 위탁받아 운영(운영경비는 예산으로 지급)

□ 01년 7월 법적 근거('민영교도소등의설치 · 운영에관한 법률')를 마련한 후 02년 3월 첫 민영교도소 설치 계약 체결 → 05년 완공 예정

〈계약내용〉
수탁기관 : (재)아가페, 계약기간 : 12년
위치 : 경기도 여주군(부지 6만4천평, 500~600명 규모)
정부지원: 매년 운영비 45억~50억원(정부예산의 90% 수준)

〈참고 2〉 해외 민간투자사업 사례

① 영국의 민자사업

□ 영국은 90년대 초반 민자사업제도(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도입

○ '03년 현재 사회기반시설의 약 11%를 PFI 방식으로 추진중

○ 총 451개의 PFI 사업이 완공되어 운영중이며, 교육 · 보건시설, 청사 등 사회 ·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

□ 영국의 PFI 사업은 공기 준수율 · 사업비 준수율 등에서 재정사업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

* 총사업비 준수율 : (PFI 사업) 88% vs (재정사업) 27%
공기 준수율 : (PFI 사업) 86% vs (재정사업) 30%

〈사례 : Hattersley 학교〉

○ 대상사업 : 초등학교 2개 개축 + 중학교 1개 신축
○ 총투자비 : 380억원(* 건설 : 98~02년)
○ 운영기간 : 30년
○ 민간의 역할 : (건설단계)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단계) 시설 유지보수, 청소, 급식, 경비 등
○ 사업시행자 : Pyramid Schools Ltd.
* 건설사+시설운영사+은행이 출자, 민간투자비의 90%를 은행이 대출
○ 정부지급액 : 시설임대료 + 운영비용보조금
* 시설임대료 : 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률을 반영한 30년 분할 상환금
* 운영비용보조금 : 협약에서 정한 성과수준과 실적 운영서비스 수준에 연동하여 지급 →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민간의 동기 부여
○ 부대사업 운영권 부여 : 체육관시설 등

② 일본의 민자사업

□ 일본은 '99년 영국의 PFI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03년 민간투자 규모는 896억엔(약 9,000억원)

* 전체 175개 사업 중 교육문화시설(58개), 폐기물 처리시설(35개)의 비중이 높음

〈사례 : 이치가와(市川)시 제7중학교〉

○ 대상사업 : 제7중학교, 문화센터, 보육소, 노인요양시설(Care House), 재가노인복지시설(Day Care Center) 등 복합시설*

* 학교시설은 용적률이 낮아 여유 용적에 해당하는 공간에 각

기반시설들을 입체적으로 건설하여 市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부담 절감

○ 총투자비 : 360억원 (* 건설 : 98~02년)

○ 운영기간 : 15년

○ 민간의 역할 : 건설, 유지관리, 운영 담당

* 다만, 제7중학교, 문화센터, 보육소는 市에서 운영

○ 사업시행자 : (주)市川七中行德후레아이施設

③ 민영 교도소

□ **미국의 경우 1984년 테네시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01년 말 현재 총 9.2만명 수용중(전체 수용자의 6.5%)**

○ 수입은 ①정부 지급액(대부분), ②재소자의 노임이며, 계약직 사용, 전자감시체계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 **브라질의 경우 종교적 교화목적의 비영리 방식으로 민영 교도소를 운영('휴마이타 모델')**

○ 주 수입원은 민간기부이며, 재소자 노임 중 일부를 기부받아 운영비용에 충당하고, 자치 운영제도를 통해 비용 절감

※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스코틀랜드, 뉴질랜드도 운영중

2. 고속도로사업의 조기 추진

①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

□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여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

○ 재원조달 방법 :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5~20년 만기 ABS를 발행하고, 이를 금융기관, 연기금 등에서 인수

○ 재원조달 규모 : 향후 6년간('05~'10년) 5조원 수준

– 조달한 재원은 전액(매년 0.6조~1조원)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 → 21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 단축

○ 대상 노선 : 투자비 회수잔액, 통행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영동선 · 서울외곽선 등을 선정(잠정)

② 고속도로 사업의 민자사업 전환 추진

□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 05년 상반기중 실시협약을 체결

③ 민간제안 도로사업 조기 추진

□ **민간이 제안한 사업(13개) 중 노선간의 경쟁을 통하여 우선추진 사업을 결정,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추진**

○ 우선추진 사업을 당초 2~3개에서 5~6개로 확대

○ 05. 2월 경 제3자제안공고(120일)를 시행하고, 7월 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3. IT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IT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대

⇒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IT 분야〉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DB사업은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단위 : 억원)

사 업 명	05년 예산(정부 추진안)
1. DB 구축	1,495
– 행정 DB	1,225
– 지식 DB	270
2.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700
3. 교통 · 물류시스템 개선	1,780
– ITS 인프라 구축	1,100
– 도시 간선도로 교통정보기반	600
– ITS 표준화 및 통합 DB구축	80
4.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58
소 계	4,233

〈 에너지 분야 〉

□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비하여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유도

(단위 : 억원)

사 업 명	05년 예산(정부 추진안)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45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2,000
신재생 에너지보급(융자)	500
소 계	2,645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기술 개발사업'

4. 임대주택 활성화

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04. 11. 12)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4분기중 법령을 제 · 개정하도록 독려

□ 재무적 투자자(대형 건설사, 연기금 · REITs) 참여 유도방안 추가 강구

○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 홍보 및 애로 · 건의사항 파악

○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 지원, 미분양 주택의 임대사업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② 국민임대주택 10만호의 차질 없는 건설

□ 소요택지 1,000만평(수도권 500만평) 중 미확보된 택지 325만평을 차질 없이 확보(1/4분기중 지구 지정)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

□ 지자체 주거복지평가 등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5. 공기업 투자 확대

□ 05년도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으로 확대 추진

* 공기업투자(조원) : (03계획) 17.3 → (04계획) 18.9

○ 04년의 실제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25.4조원)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04년 수준 이상으로 투자 확대 유도

6.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①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임차방식의 민간투자 허용

○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학재단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임차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

* 校舍·校地는 학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 타인 소유 건축물을 둘 수 없음(「대학설립·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05. 1)

□ 사립 초·중등학교의 노후 교사 증·개축 지원 강화

○ 사립학교의 경우 시설물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되지 않으므로 노후 교사 증·개축시 민간투자법의 적용이 불가능

* 사립 초·중교 노후교사 증·개축 규모 : '05~'07년간 약 1조 3천억원

→ 현 지원방식에 의할 경우 목표달성에 20년 소요

⇒ 노후 교사 증·개축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상 BTL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강구

② 금융자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투자대상 확대·다양화

○ 투자대상 확대 : 유가증권 등 → 부동산 등 실물자산, 장외파생상품

○ 방식·대상 다양화 : 사모투자펀드(PEF), 명목회사형 REITs, 선박투자회사 등 도입

Ⅴ. 2005년 이후 본격화될 주요 투자사업

◇ 05년 이후에는 기업도시·신도시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건설투자를 뒷받침

① 기업도시 건설 추진

□ '기업도시특별법' 국회 통과(04. 12. 9)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주거·레저 등의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① 원활한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수용·출자총액제한·조세감면 등 특례 부여

② 자족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 특례 부여

□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발굴·지원

○ 시범사업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유형(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별로 균형 있게 2~4개 선정

– 05. 1월중 시범사업 신청 → 05년 하반기 구역 지정

② 강북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가속화

□ 강북 재개발

○ 1차 3개 지구(은평·길음·왕십리) : 단지조성·건축공사 본격 시행

○ 2차 12개 지구(한남·아현·전농 등) : 05. 3까지 개발기본계획 확정

□ 신도시 개발 공사 본격 추진

○ 판교, 아산, 파주 : 05년내 착공 및 주택분양 시작

○ 김포, 수원 : 05년내 개발계획 승인

○ 시화 MTV(Multi-Techno Valley) : 05년내 개발사업 착수

Ⅵ. 향후 추진 계획

(* 민간투자법 국회 통과시)

종합투자계획 기본방안 발표	: 12. 29일
↓	
지자체 등에 대한 홍보	: 05. 1월중
↓	
세부 사업 확정 (기획예산처와 협의)	: 05. 2월까지
↓	
사업자 지정 절차 (사업기본계획고시, 협상, 실시협약 체결 등)	: 05. 상반기중
↓	
사업 착수	: 05.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안) 관련 문답자료

1. 현재 경제상황은 경기대책이 아니라 시장자율을 확대하고 정부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종합투자계획은 단기적 경기관리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민간 주도의 연계적 · 보완적 대책임

○ 정부는 투자 계획의 밑그림을 제공하고

○ 민간은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정부 개입에 의한 비효율을 최소화

□ 실제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재정 중 경제사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하에서

○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동 부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함으로써

○ 재정분야에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내년도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되는 종합투자계획으로는 그 효과가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 내년도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 지연,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종합투자계획을 조화롭게 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함

□ 상반기중에는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늘려 나갈 계획

○ 재정 조기집행 비율을 59% 수준으로 올려(전년 대비 12.5조원 증가) 부족한 내수를 보완

* 상반기 재정집행률(%): (02)48.7→(03)53.0→(04)55.0→(05계획)59.0
(집행금액, 조원) 73.7 83.3 87.5 100.0

○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집중 시행하여 중산 · 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

*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 : 1/4분기중 60% 이상, 상반기중 80% 이상 집행

□ 종합투자계획도 최대한 조기에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

○ DB 구축사업,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등을 1/4분기부터 추진

○ 민간투자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에도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

3. BTL 방식과 기존 BOT, BTO 방식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

□ BTL방식(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유치제도

○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perate -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직접 사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방식

* 예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신공항고속도로 등

□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임대료를 통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안정적 사업시행 방식을 주로 하나, 관련 시설의 운영 또는 부대사업에의 참여는 가능

○ 민간사업자는 사업운영 risk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 정부는 재정부담을 미래 장기간에 분산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조기 공급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 보유

* (예) 현재 예산 수준(연평균 2,500억원)으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초 · 중등학교 증 · 개축에 20년 이상 소요

4. '종합투자계획' 중 BTL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 절차는 크게 대상사업 지정절차와 사업자 지정절차로 구분되며 BTL 방식도 이에 따라 추진

① 대상사업 지정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의 타당성 검토

② 사업자 지정 : 사업고시 이후 참여 희망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협상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

□ 다만, BTL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BTO, BOT 방식과 달리 수요량 추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요시일을 단축할 계획

〈절차 간소화 방안(잠정)〉

	기존 절차	간소화 방안
대상사업 지정절차	예비타당성 검토 ⇩ 본타당성 검토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일괄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자 지정절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 검토 · 평가 ⇩ 협 상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 실시협약 체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단계에서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 → 이후 협상 등의 절차 이행기간을 대폭 축소 * 리스료 산정모델, 표준실시협약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제시

5. BTL 방식의 대상사업과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시설은 모두 BTL 방식으로 추진 가능**

○ 현재 철도·도로 등 기존의 35개 SOC 시설 이외에 학교,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추진중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추가되는 시설 : 국·공립 학교, 관사 등 군인 주거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등

□ **금번 '종합투자계획'의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

○ 내년중 즉시 시행 가능하고,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 04. 12월 현재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38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6. BTL 방식에서 리스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BTL 방식에 맞추어 사업비,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리스료 산정모델(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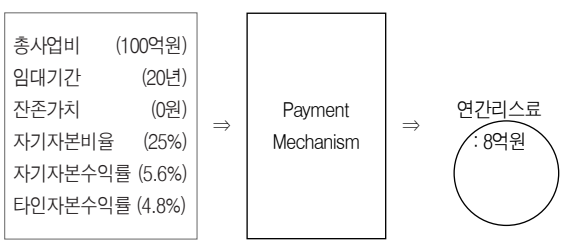

〈산정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률 \ 임대기간	10년	20년	30년
5%	12.9억원	8.0억원	6.5억원

* 원리금 균등상환 가정, 경상가격

□ **수익률은 국채금리 + α로 하고, α는 시장참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하게 됨**

○ 국채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다양한 만기의 금리를 적용하되,

○ 시장 금리가 없는 10년 초과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yield curve를 개발할 계획

7. BTL 방식에서 민간사업자(건설사, 재무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설계·시공(건설사), 자금조달(재무투자자)을 담당하게 되며,**

○ 대상사업 유형에 따라 시설운영에도 직접 참여 가능

〈BTL 사업 유형〉

	유형 Ⅰ	유형 Ⅱ
■ 민간사업자 참여범위	■ 기획·설계 + 자금조달 + 건설 * 운영은 주무관청 담당	■ 기획·설계 + 자금조달 + 건설 + 운영
■ 대상시설	■ 민간의 시설운영담당이 어려운 사업 예) 학교, 군막사 등 ※ 민간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대사업(예 : 학교내 매점)운영은 가능	■ 민간의 시설운영으로 운영비 경감, 서비스질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 예) 공연장 등 문화시설

□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단계별로 민간의 창의 · 효율을 최대한 활용 가능

◆ 기획 · 설계 : 복합시설개발, 창의적 부대사업 발굴
◆ 자금조달 :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조달 유도
◆ 건설 :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목표공기 내 완공 유도
◆ 운영 : 시설이용률과 이용자의 만족도 극대화

* (예) 기숙사 운영시 숙소 제공뿐 아니라 학교급식, 방학중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8. 수익성이 없는 국책사업에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자칫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간의 투자만 위축(Crowding-Out Effect)되는 것이 아닌가?

□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동자금이 400조원이 되고 연기금에도 막대한 여유자금이 있는 만큼 민간투자 구축(Crowding-out effect)을 우려할 상황이 아님

○ 오히려,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합리적 소비수요를 자극하고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유휴자본을 Crowding-in해야 할 시점임

□ 특히, 이자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 현재 연기금 등이 국채 투자에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연기금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악순환 현상을 우려해야 할 상황
○ 종합투자계획이 이들 연기금에 안전하고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

9.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자본에 새로운 투자처만 제공하여 일부 재벌기업과 건설회사, 금융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의 수익성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양책이 아닌가?

□ 금번 종합투자계획은 투자 분야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임

* 과거 공급자 위주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로 전환

○ 노인시설, 보육시설 확충
○ 초중교 교사, 대학 기숙사, 공공도서관 확충
○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서민주택 공급 확충 등

□ 또한 이를 통해 모두에게 상생(Win-Win)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
○ 부동자금에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활성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국가가 리스를 통해 빨리 높은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10. 민간투자법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 대책은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 현재 여야가 민간투자법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중에 있는 만큼

○ 연내에 관련 법률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부도 관련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

□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 종합투자계획 내용 중 법 통과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 고속도로사업 조기 추진(운영권 활용 등), IT · 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공기업 투자 확대 등

○ 나머지 사업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법 통과 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확정

※ 이 자료는 2004년 12월 24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확정」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재정경제부는 12. 24(금) 07:30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 휘발유 대비 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확정하였음

□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① **적정 상대가격비⇒100 : 85 : 50(휘발유 : 경유 : LPG부탄)**

○ 1차 개편 목표('06. 7) ⇒ 100 : 75 : 60

○ '04년 하반기 평균(현재) ⇒ 100 : 70 : 53

※ 휘발유 1,382원/ℓ, 경유 962원/ℓ, LPG부탄 728원/ℓ

② **개편기간 : 3년('05. 7~'07. 7)**

○ 경유 : 향후 3년간 매년('05. 7, '06. 7, '07. 7) 휘발유가격 대비 5%p(60~70원/ℓ)씩 인상

○ LPG부탄 : '05. 7월 3%p 인하(△30원/ℓ 내외)

③ **유류 상대가격비 조정에 따른 업계 지원방안**

○ 유가보조금 지급방안

– 유가보조금을 현재 수준*(인상시에는 인상분 포함)으로 3년간 지급

* '01·'02년 인상분 50% + '03·'04년 인상분 100%

– 택 시 : 3년간 현수준 유가보조금 지급

'05. 7 LPG세율인하시 인하분만큼 보조금 인하

–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 3년간 '현수준+향후 경유세율 인상분 전액' 유가보조금 지급

○ 기타 제도개선 검토사항

– 택시 : 지역별 택시대수 총량제 실시,

일부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방안

– 화물차 :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세분화

(현재 12톤 초과 화물차 월 4,308ℓ 한도)

– 전세버스 : 차령제한 완화 등

□ 세제개편의 기대효과

○ 차종별 자동차 등록비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차종별 자동차 등록비율

	현 행		개편후		미개편시
• 휘발유 차량 :	48.5%	→	42.3%	↔	32.2%
• 경 유 차량 :	37.7%	→	41.6%	↔	62.5%
• LPG 차량 :	13.8%	→	16.1%	↔	5.3%

○ 1차 개편안에 비하여 연간 총 1.4조원의 환경오염비용 감소 추정(2015년)

□ **향후 추진일정**

○ '05년 상반기중 관련세법(교통세·특소세) 개정

'04년 3/4분기 말 현재 총대외채무 · 대외채권 현황(잠정)

"우리나라의 대외 순채권 1,000억불 넘어"

※ 이 자료는 2004년 12월 18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에서 발표한 「'04년 3/4분기말 현재 총대외채무 · 대외채권 현황(잠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주 요 내 용

□ '04. 3 /4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대외채무는 전분기 말보다 36억불 감소한 1,667억불, 대외채권은 분기중 111억불 증가한 2,687억불로 집계됨

○ 장기외채는 1,138억불로서 정부의 공공차관 순상환(3억불), 은행의 차입 및 외화증권발행(14억불) 등으로 분기중 9억불 증가하였고

○ 단기외채는 529억불로서 은행의 해외차입금 및 미결제대금 상환(34억불), 비거주자의 통안증권 및 은행예수금 감소(10억불) 등으로 분기중 45억불 감소하였음

○ 한편, 순채권은 '04. 2/4분기 말보다 147억불 증가한 1,020억불로서 외채통계를 편제한 이후 처음으로 1,000억불을 넘어서게 됨

□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지표는 안정수준을 유지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4.0%p 하락한 30.3%, 유동외채비율은 4.4%p 하락한 42.0%로서 안정수준(각각 60%, 100%미만)을 견지하고 있음

(단위: 억불)

	'97 말	'98 말	'99 말	'00 말	'01 말	'02 말	'03 말	'04. 6 말	'04. 9 말	분기증감
대외채무(A)	1,742	1,638	1,529	1,485	1,308	1,440	1,589	1,703	1,667	△36
장 기	1,105	1,249	1,105	991	889	939	1,062	1,129	1,138	9
단 기	637	389	424	494	419	501	527	574	529	△45
대외채권(B)	1,061	1,293	1,461	1,674	1,655	1,861	2,311	2,576	2,687	111
순채권(B-A)	△681	△345	△68	189	347	421	722	873	1,020	147

이번 통계치는 '03년 말 잠정통계치를 실사하여 확정된 '03년 말 확정통계를 기준으로 시계열에 따라 작성된 것임.

1. 총대외채무 현황

□ '04. 3/4분기 말 현재 총대외채무는 전분기 말 대비 36억불 감소한 1,667억불을 시현

○ 부문별로는

– 일반정부·통화당국은 IBRD 등 공공차관 순상환(3억불), 비거주자의 외화표시 외평채 및 통화안정증권투자 감소(4억불) 등으로 분기중 7억불 감소['04. 9월 말 현재 152억불, 총외채의 9.1%]

– 은행부문은 비거주자의 예수금 감소(8억불), 외화차입금 감소(2억불), 현물환 미결제 대금 상환(19억불) 등으로 분기중 28억불 감소['04. 9월 말 현재 723억불, 총외채의 43.4%]

– 기타부문은 기업의 선박관련 수출선수금 증가(12억불), 기업 등의 대외채무 순상환(14억불) 등으로 분기중 1억불 감소['04. 9월 말 현재 792억불, 총외채의 47.5%]

○ 장·단기별로는

– 장기외채는 1,138억불로서 정부의 공공차관 순상환(3억불)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차입 및 외화증권발행(14억불) 등으로 분기중 9억불 증가['04. 9월 말 현재 총외채의 68.3%]

– 단기외채는 529억불로서 은행의 해외차입금(16억불) 및 현물환 미결제 대금(19억불) 상환, 비거주자의 통화안정증권 및 은행예수금 감소(10억불) 등으로 분기중 45억불 감소하였음['04. 9월 말 현재 총외채의 31.7%]

□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지표들은 안정수준을 지속 유지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전분기 말보다 4.0%p 하락한 30.3%, 유동외채비율은 4.4%p 하락한 42.0%로서 안정수준(각각 60%, 100% 미만)을 견지

* 유동외채 : 단기외채 + 1년 이내 만기도래하는 장기외채

(단위: %)

	'97 말	'98 말	'99 말	'00 말	'01 말	'02 말	'03 말	'04. 6 말	'04. 9 말
단기외채/외환보유액[1]	716.6	80.3	57.3	51.4	40.7	41.2	33.9	34.3	30.3
유동외채/외환보유액[2]	973.4	156.1	88.5	73.0	59.3	56.9	46.9	46.4	42.0
외환보유액(억불)	89	485	740	962	1,028	1,214	1,554	1,670	1,745

주: 1) 안정수준(60% 미만), 경계수준(60~100%), 위험수준(100% 초과)

2) 안정수준(100% 미만), 경계수준(100~200%), 위험수준(200% 초과)

2. 대외채권 및 순채권

□ '04. 3/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권은 2,687억불로 전분기말보다 111억불 증가

○ 일반정부·통화당국은 외환보유액 등 증가로 분기중 84억불 증가['04. 9월말 현재 1,816억불, 총대외채권의 67.6%]

○ 은행부문은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한 국외본지점 대여금 증가(34억불) 등으로 분기중 24억불 증가['04. 9월말 현재 614억불, 총대외채권의 22.8%]

○ 기타부문은 민간기업의 수출신용 감소(4억불),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증권투자 증가(6억불) 등으로 분기중

3억불 증가['04. 9월 말 현재 257억불, 총대외채권의 9.6%]

□ '04. 3/4분기 말 현재 순채권은 전분기 말 대비 147억불 증가한 1,020억불로서 외채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1,000억불을 넘어서게 됨

〈총 대외채무 · 채권 현황〉

(단위: 억불)

		'97 말	'98 말	'99 말	'00 말	'01 말	'02 말	'03 말p	'04. 6 말p (A)	'04. 9 말p (B)	증감 (B-A)
총대외채무		1,742	1,638	1,529	1,485	1,308	1,440	1,589	1,703	1,667	△36
외 화		1,739	1,627	1,499	1,440	1,261	1,374	1,502	1,595	1,568	△27
원 화		3	11	30	45	47	66	87	108	99	△9
부문별	일반정부	112	159	198	192	183	176	116	103	100	△3
	통화당국	115	220	128	113	49	49	53	56	52	△4
	은행부문	911	725	676	618	534	610	690	751	723	△28
	기타부문	604	534	527	562	542	605	730	793	792	△1
장단기별	장기외채	1,105	1,249	1,105	991	889	939	1,062	1,129	1,138	9
	단기외채	637	389	424	494	419	501	527	574	529	△45
	통화당국	1	3	12	11	13	14	14	18	16	△2
	은행부문	492	311	337	377	324	406	434	471	428	△43
	기타부문	144	75	75	106	82	81	79	85	85	–
총대외채권		1,061	1,293	1,461	1,674	1,655	1,861	2,311	2,576	2,687	111
외 화		1,057	1,287	1,452	1,666	1,645	1,846	2,288	2,551	2,661	110
원 화		4	6	9	8	10	15	23	25	26	1
부문별	일반정부	10	9	8	8	10	11	13	39	48	9
	통화당국	210	535	767	989	1,053	1,238	1,575	1,693	1,768	75
	은행부문	665	579	510	488	423	424	450	590	614	24
	기타부문	176	170	176	189	169	188	273	254	257	3
순 채 권		△681	△345	△68	189	347	421	722	873	1,020	147
외 화		△682	△340	△47	225	384	472	786	956	1,093	137
원 화		1	△5	△21	△36	△37	△51	△64	△83	△73	10

* p는 잠정치(Preliminary)

재정운용의 성과와 향후과제

※ 이 자료는 2004년 12월 31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에서 발표한 「재정운용의 성과와 향후과제」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요 약〉

□ 2004년도 재정운용 성과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도입, 성과관리 및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등 재정운영시스템을 50년 만에 완전히 바꾸는 재정혁신 추진

○ 재정조기집행,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 '05년 적자예산 편성 등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 수행

○ 기금 수익성 제고 등 운용효율화와 민간자금의 공공투자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공공부문 경영혁신을 본격 추진

□ 2005년도 재정운용 과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본격 추진

○ 재정운영시스템 혁신의 정착으로 정부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낭비를 예방

○ 정부혁신을 공기업, 출연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무문 전체로 확산하여 경영혁신을 유도

□ "참여하는 재정운영, 신뢰받는 기획예산처"(혁신비젼)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금년 말 정부업무평가 결과 혁신선도부처로 선정

○ '05년에는 혁신의 확산과 성과 가시화에 역점 추진

1. 2004년도 재정운용 성과

□ 재정운영시스템을 50년 만에 완전히 바꾸는 재정혁신을 추진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규모를 사전에 정하고, 세부내역은 부처가 자율편성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 48개 부처 중 37개 부처가 지출한도를 준수, 전체 예산은 5% 수준 증액 요구(예년에는 통상 20~30% 증액),

지출구조의 자율적 조정 등 성과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22개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4개 부처에 추가 시행, 성과목표·지표 개발

○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전과정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업무전략계획(BSP) 수립

□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 수행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당초계획을 초과 달성

(집행률)

'03년 상반기(A)	'04년 상반기(A)		증감(B-A)
	당초	실적(B)	
53.0%	54.0%	55.0%	2.0%p

○ 하반기중 4.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예산 1.8조원, 기금 2.0조원, 공기업 투자확대 등 0.7조원)

○ '04년중 목표인원 41만명보다 많은 42.9만명(04. 1~11월)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직업훈련·연수기회 등을 제공

○ '05년도 재정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

-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9.5% 증가
-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 : GDP 대비 △0.9%→△1.0%

□ 기금운용과 민자사업 관련 시스템을 개선

○ 연기금 자산운용의 투자다양화, 전문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식·부동산 투자원칙 금지조항 삭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위원회·전담부서 설치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
- 연기금 투자풀에 주가지수 연계펀드, Call MMF, 개별기금에 대한 맞춤형 단독 펀드 등 도입

○ 기금운용평가단의 존치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금정비 방안 추진중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존치평가 결과 현행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토록 권고

- 현재 정부혁신위 주관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 마련 계획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기반시설로 대상범위 확대, 시중여유자금 활용 유도, 민간제안사업 경쟁촉진 등 종합개선방안 마련·시행

□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을 본격 추진

○ 사후평가 중심의 선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기틀 마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 및 88개 관리대상기관 확정,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등
- 산하기관 경영평가 기준 마련

○ '03년도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최우수/최하위 기관간 차등폭 : ('03)142%p → ('04)278%p

○ 기관장 및 감사연찬회, 테마별 토론회 등을 통해 우수혁신사례 전파

- 특히, 혁신우수사례집 『변화를 선택한 리더들』은 공공부문 혁신의 텍스트북으로 활용되고 있음

2. 2005년도 재정운용 과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역량을 집중

○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 '05년 예산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여 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방지

- 상반기중 연간 예산의 59% 수준을 집행하고,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

○ 종합투자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시행 방안 및 연차별 재정계획 마련

- 새로운 민간투자방식(BTL)의 시행 모델 구체화

•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규모 및 재정소요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재정운영시스템 혁신의 정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과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정착을 통해 한정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유도

• 지출한도 설정 이전에 실질적인 국무위원 토론회를 통해 국가정책과 재정운영이 전략적으로 결합되도록 운영

• 자율적 세출구조조정 노력, 성과관리 내실화 등 우수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국민들이 재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금·특별회계정비 등 재정구조의 단순화,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추진, 국회 제출자료 개선, 재정혁신 홍보 등

○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화

•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 단계별로 낭비요인 제거

□ **정부혁신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207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을 확산(인력 17만명, 예산 147조원)

• 혁신수준 진단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혁신 전략 마련

○ 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성과관리시스템 본격 구축

○ 16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고객만족도 조사를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개

○ 정부부처에 의한 과잉 사전규제를 발굴하여 정비

3. 기획예산처 혁신 활동

□ **'04년중 "참여하는 재정운영, 신뢰받는 기획예산처"(혁신비전)를 구현하기 위해 혁신활동을 강력하게 추진**

○ 전직원 토론회(1·2월, 10월)를 통해 혁신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혁신의지를 모든 직원들이 공유

• Jump-7(직급별 혁신 보드), 학습 동아리 등 다양한 토론모임을 운영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추진방법을 확산

○ 혁신인사담당관실, 혁신T/F 등 혁신전담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 회의운영 간소화, 보고체계 개선 등 일하는 방식도 개선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획예산처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

○ '03년 말 낮은 단계이던 혁신수준이 '04. 7월 중간단계로 개선되고, '04년 말에는 혁신 선도부처로 평가

○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평가 결과에 걸맞는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책임감 부여

□ **'05년에는 혁신의 확산과 성과 가시화에 역점을 두고 혁신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

○ 4대 재정혁신 등 정책품질을 제고하여 업무고객(부처) 및 최종고객(국민)의 만족도를 제고

○ 일하는 방식의 지속 개선, 서로 돕는 조직문화 형성 등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직장(HWP : Happy Work Place)을 구현

〈참고 1〉 2004년 주요정책 추진경과

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방안 국무회의 보고(2. 24)

○ 분야별·부처별 잠정지출한도 결정·통보 및 각 부처 자율편성지침 통보(4. 30)

○ 국무위원토론회(6. 19) 및 10개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6. 28)

○ 당정협의, 재정운용혁신 중앙·지방 토론회 및 부처별 장관 방문협의(7~9월)

○ 재정운용계획 국무회의 보고(9. 14), '05예산안 국무회의 의결(9. 24)

○ '05예산안 국회 제출(10. 2),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10. 12)

② 성과관리제도

○ 성과관리제도 세미나 개최(2. 27, 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 주관)

○ '04년도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통보(5. 11)

○ 중앙성과관리자문단 간담회(5. 28) 및 성과지표개발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8. 12, 8. 27)

○ 성과관리제도 교육훈련 실시(8. 31~12. 21, 총 11회)

③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 재경부, 행자부, 예산처, 감사원 등 유관부처 공무원과 CPA, IT전문가로 기획단 구성(5. 3)

○ 현행 중앙 및 지방 재정정보시스템 실태조사(6월)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안) 마련(7월)

○ 업무전략계획(BSP : Business Strategy Planning) 수립(8~12월)

④ 재정조기집행

○ '04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1. 12~12. 24, 총 15회 실시)

⑤ 추경 편성(4.5조원)

○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방안 국회 통과(7. 15)

○ 재정지출 확대분 집행계획 확정(7. 27)

⑥ 기금존치평가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매3년마다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제도 도입('03. 12월)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04. 3월) 및 기금존치평가 실사(4~7월)

○ 기금존치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8. 31) 및 국회 제출(9. 1)

○ 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여론수렴(9~12월)

⑦ 기금관리기본법 및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

○ 기금법 개정안 마련(4월),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4. 22~5. 14)

⇨ 국회제출(6. 3)→운영위 상정(7. 6)→법안소위 14회(8. 25~12. 28)

○ 연기금을 이용한 공공투자 확대방안 검토(대통령 보고, 8. 16), 민투법 개정안 마련(9. 2),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9. 4~23), 공청회(9. 23)

⇨ 개정안 국회제출(10. 29) 및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상정(11. 26)

⑧ 산하기관 경영혁신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정, 법적용 대상기관(88개) 지정(4월) 및 운영위원회(위원장:기예처 장관) 구성 완료(6월)

○ 기관 유형별 특성 감안, 기관별 '04년도 사업 평가지표 확정(7월)

○ '0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75개 기관) 확정, 내년초 조사를 목표로 표준모델 개발(9~11월)

〈참고 2〉 2004년 혁신활동 추진경과

① 혁신활동 제1기 ('04. 1~'04. 8)

◇ '03. 11월 변화 마인드 진단 결과, 예산처는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혁신비전 수립혁신공감대 형성 등 혁신기반 마련에 주력

○ 과장급(1. 10) 및 직원(1. 19)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리처 혁신상황에 대한 반성과 혁신 공감대 형성

○ 우리처 혁신 비전("참여하는 재정운영, 신뢰받는 기획예산처")을 수립하여 혁신의 기본방향 제시(4월)

○ '04년 혁신 종합계획, 혁신지침 등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4월·5월)

- 구체적인 혁신활동 추진을 위해 108개 혁신과제를 선정
- 기획예산처 5대 혁신수칙, 예산·기금 편성기간 중 특별복무지침 시행

⇒ '04. 7월 부처 혁신활동 진단 결과, 예산처는 5단계 중 중간 수준인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② 혁신활동 제2기 ('04. 9~'04. 12)

◇ 혁신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체계 재정립, 혁신활동의 확산, 혁신성과의 가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장·차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추진체계 재정립(9월)

- 직급별 혁신 추진팀(Jump-7), 혁신업무 실무전담조직(혁신 T/F), 혁신 자문단(혁신 서포터즈) 등 혁신 선도·지원그룹 구성·운영

○ 학습과 토론을 통해 혁신활동을 강력하게 추진(10월)

- 간부 연찬회(10. 1~2), 직원 혁신 대토론회(10. 16), 토요학습의 날(1·3주 토요일) 등을 실시하여 혁신 마인드 확산
- 학습 동아리(12개) 활동, 브라운백 미팅(11회), Hope & Hof Day(16회) 등 토론 모임을 통해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방법 모색
- 문광부·KOTRA 등 혁신 우수부처 초청 특강, 실·국 혁신 성공사례 발표대회(10월) 등을 통해 혁신 성공사례 공유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노력

- 현안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지식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정책현안을 빠짐 없이 관리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활용
- 회의운영 간소화, 보고체계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 업무 추진
- 민원사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민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

⇒ '04. 12월 200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예산처는 혁신선도부처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

현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

※ 이 자료는 2005년 1월 6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에서 발표한 「현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05. 1. 1 현금영수증 제도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현황 등과 시행 초기의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을 분석하고 현금영수증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함**

□ **본격 시행일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 업체수는 61만여개이며 총 117천여명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61만여개는 '04년 말까지 목표치였던 45만개에서 16만여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117천여명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중 19세 이상 성인이 115천여명, 18세 이하 청소년은 2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시범운영 기간부터 제도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해 마련된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는 12월 31일까지 약 3만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 특히 업무개시일인 '05. 1. 3 하루에만 5천7백여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상담원과의 직접 전화상담이 4천3백여건으로,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기간 평균 7백여건 대비 814%로서 본격 시행과 함께 상담이 쇄도하고 있음을 보임

□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를 보면 '05. 1. 1 본격 시행후 3일간 71만여건으로 일일 평균 24만여건이 발급되었으며**

○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기간중 일일 평균 발급건수 78천여건 대비 307%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고 있음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및 가맹점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 소비자에게는 발행금액의 20% 소득공제혜택과

– 19세 이상 현금영수증복권 245백만원(월 1회, 1등 1억원)과 18세 이하 주니어복권 39백만원(매월 2회, 1등 3백만원)으로 연간 36억원의 복권혜택 등을 부여하였고

○ 또한 가맹점의 경우 발행금액의 1% 세액공제, 단말기 무상설치, 결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마련하였으며

○ 가맹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를 신설하여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의 세액감면

–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을 20%로 적용

–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05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업체수를 100만개 이상 확보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현금영수증 관련 현황〉

□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건)

1. 1	1. 2	1. 3	누 계
211,080	247,991	252,907	711,978

□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황

(단위: 개)

04. 12. 31	05. 1. 1~1. 3	누 계
616,295	57,333	673,628

□ 현금영수증 상담 현황

(단위: 건)

구 분		'04. 12. 31	'05. 1. 1~1. 3	누 계
계		29,535	7,526	37,061
전화 상담	상담원	19,344	4,646	23,990
	자동응답(ARS)	8,370	1,959	10,329
인터넷 상담		1,821	921	2,742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가입 현황

(단위: 명)

'04. 12. 31	'05. 1. 1~1. 3	누 계
117,335	33,744	151,079

재정통계

• 부가가치세 Ⅰ편

• 부가가치세 Ⅱ편

1.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인원(개인)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 부가가치세 Ⅲ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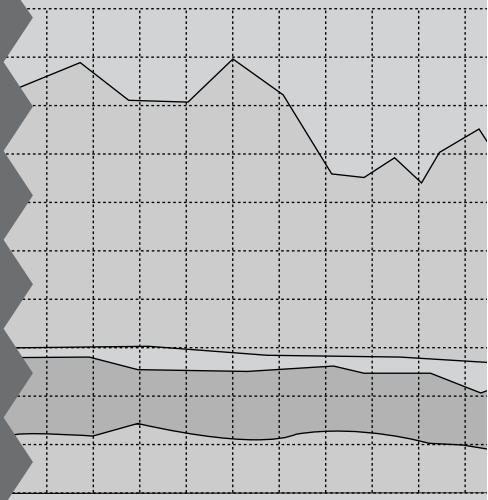

1.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1	1,988,821	94,579	626,974	–	1,267,268	350,551	17,599	156,591	–	176,361	217,431	3,295	74,511	–	139,625
1992	2,102,203	107,073	672,723	–	1,322,407	417,948	18,751	144,922	–	254,275	267,785	3,965	86,718	–	177,102
1993	2,253,105	117,374	778,854	–	1,356,877	440,072	16,301	178,487	–	245,284	287,882	7,265	95,884	–	184,733
1994	2,388,044	133,911	933,335	–	1,320,798	520,207	25,154	217,811	–	277,242	343,002	7,780	134,686	–	200,536
1995	2,526,198	150,023	1,103,567	–	1,272,608	509,784	25,874	249,081	–	234,829	339,524	7,868	144,238	–	187,418
1996	2,580,113	169,512	926,841	273,197	1,210,563	486,069	28,841	221,646	47,395	188,187	346,350	8,010	150,469	21,020	166,851
1997	2,930,116	192,333	1,004,852	490,034	1,242,897	706,320	34,497	236,736	205,562	229,525	340,673	9,812	124,011	60,890	145,960
1998	2,855,369	197,185	979,285	546,161	1,132,738	580,880	32,639	207,082	194,060	147,099	646,270	20,552	252,307	166,827	206,584
1999	2,998,956	232,474	1,059,109	586,800	1,120,573	990,480	60,027	345,880	282,678	301,895	635,859	22,747	218,725	187,978	206,409
2000	3,390,772	278,657	1,442,987	1,669,128	–	1,015,424	73,020	470,850	460,887	10,667	715,087	27,793	294,433	303,379	89,482
2001	3,709,035	321,204	1,573,217	1,814,614	–	1,072,489	72,845	476,905	522,739	–	709,580	25,148	308,527	375,905	–
2002	3,963,454	345,292	1,774,268	1,843,894	–	1,239,370	72,463	581,468	585,439	–	800,261	31,952	353,368	414,941	–
2003	3,994,665	359,154	1,861,707	1,773,804	–	1,006,779	61,187	499,122	446,470	–	857,033	41,295	409,490	406,248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인원(개인)

(단위: 명)

연도	합 계	농업, 임업, 어업	광 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업종
1987	746,419	51,339	2,101	4,906	4,699	25,852	415,459	190	21,733	19,093	192,134	1,865	7,048
1988	755,144	51,367	1,676	5,242	4,741	25,026	430,048	181	24,699	20,227	180,014	2,645	9,278
1989	777,720	53,606	1,681	5,689	4,988	24,410	418,659	231	27,522	21,765	205,321	2,792	11,056
1990	838,922	55,346	1,596	6,197	6,038	26,623	424,421	234	39,457	23,539	238,891	2,773	13,807
1991	881,048	59,044	1,546	6,489	7,566	29,782	414,717	300	45,034	25,908	270,654	2,770	17,238
1992	990,379	60,951	1,708	7,142	8,418	32,004	405,937	302	48,133	27,762	371,842	3,167	23,013
1993	1,080,462	64,130	1,629	7,735	9,343	36,036	420,300	317	53,000	29,433	428,516	3,524	26,499
1994	1,121,705	65,790	1,588	8,445	10,664	39,912	416,332	335	54,658	31,568	461,350	3,843	27,220
1995	1,265,931	65,275	1,368	8,384	11,298	44,778	425,581	285	56,869	33,225	580,610	4,694	33,564
1996	1,319,051	63,807	1,343	8,125	11,652	44,560	378,291	323	56,467	34,727	583,998	5,136	130,622
1997	836,709	62,813	1,086	8,288	11,584	51,066	378,762	422	55,386	36,519	150,034	6,741	74,008
1998	873,879	56,393	788	9,908	7,796	59,333	374,863	922	50,022	39,061	223,219	8,777	42,797
1999	637,113	46,507	657	11,022	6,323	53,049	217,357	1,120	47,322	41,929	189,687	10,216	11,924
2000	725,720	47,771	681	11,215	8,085	57,458	219,740	1,442	52,600	44,552	253,927	13,057	15,192
2001	875,095	50,060	598	12,142	16,167	66,111	208,536	1,747	64,061	49,653	354,185	16,735	35,100
2002	975,209	47,252	547	11,871	25,763	72,278	203,753	1,801	66,715	53,788	418,496	17,585	55,360
2003	959,632	46,567	399	12,907	24,006	77,105	181,118	2,097	71,076	54,985	415,269	30,037	44,06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시 도	과세기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1995	합계	1기	2,446,864	141,540	1,009,885	–	1,295,439	254,938	14,450	120,980	–	119,508	170,034	3,662	70,999	–	95,373
		2기	2,526,198	150,023	1,103,567	–	1,272,608	254,846	11,424	128,101	–	115,321	169,490	4,206	73,239	–	92,045
	서울특별시	1기	731,415	54,167	354,559	–	322,689	62,814	5,378	35,688	–	21,748	41,301	1,078	21,239	–	18,984
		2기	741,246	57,292	375,913	–	308,041	53,819	3,876	31,891	–	18,052	43,373	1,385	22,297	–	19,691
	부산광역시	1기	231,344	12,223	108,303	–	110,818	28,619	1,744	13,784	–	13,091	23,628	581	9,056	–	13,991
		2기	239,156	13,008	118,739	–	107,409	30,588	1,362	16,295	–	12,931	23,892	704	9,628	–	13,560
	대구광역시	1기	142,110	6,338	66,152	–	69,620	16,361	393	8,153	–	7,815	9,244	84	4,396	–	4,764
		2기	144,920	6,410	68,726	–	69,784	17,055	491	9,599	–	6,965	9,745	190	4,539	–	5,016
	인천광역시	1기	142,379	9,660	69,672	–	63,047	16,596	789	8,933	–	6,874	14,484	198	6,376	–	7,910
		2기	150,229	10,270	76,298	–	63,661	20,738	799	10,719	–	9,220	15,235	278	7,040	–	7,917
	광주광역시	1기	83,776	4,646	26,762	–	52,368	9,040	587	2,660	–	5,793	4,497	189	1,411	–	2,897
		2기	85,990	4,942	29,855	–	51,193	9,150	244	3,426	–	5,480	5,814	60	1,809	–	3,945
	대전광역시	1기	77,502	3,446	26,628	–	47,428	8,573	400	3,652	–	4,521	7,866	172	1,520	–	6,174
		2기	81,505	3,764	30,719	–	47,022	7,017	343	3,163	–	3,511	6,547	97	3,007	–	3,443
	시계	1기	1,408,526	90,480	652,076	–	665,970	142,003	9,291	72,870	–	59,842	101,020	2,302	43,998	–	54,720
		2기	1,443,046	95,686	700,250	–	647,110	138,367	7,115	75,093	–	56,159	104,606	2,714	48,320	–	53,572
	경기도	1기	286,832	16,893	124,395	–	145,544	32,522	2,031	17,696	–	12,795	21,279	321	9,918	–	11,040
		2기	300,443	17,972	140,810	–	141,661	41,206	1,415	21,540	–	18,251	21,564	393	9,880	–	11,291
	강원도	1기	87,466	3,226	24,596	–	59,644	13,831	259	4,872	–	8,700	8,939	63	3,459	–	5,417
		2기	91,200	3,400	28,307	–	59,493	11,005	454	5,522	–	5,029	5,826	98	2,646	–	3,082
	충청북도	1기	85,059	4,091	23,844	–	57,124	7,020	294	2,967	–	3,759	1,891	70	927	–	894
		2기	90,028	4,255	27,422	–	58,351	7,138	212	2,989	–	3,937	3,502	70	1,228	–	2,204
	충청남도	1기	97,462	4,232	24,312	–	68,918	10,138	312	3,534	–	6,292	2,510	72	1,167	–	1,271
		2기	99,954	4,588	26,861	–	68,505	8,905	308	2,913	–	5,684	3,292	42	821	–	2,429
	전라북도	1기	103,518	4,308	28,477	–	70,733	8,356	435	2,691	–	5,230	4,859	38	1,321	–	3,500
		2기	105,141	4,605	31,669	–	68,867	8,059	265	3,079	–	4,715	4,523	121	1,574	–	2,828
	전라남도	1기	86,470	3,622	22,401	–	60,447	9,349	281	2,766	–	6,302	4,425	22	1,352	–	3,051
		2기	90,193	3,882	25,528	–	60,783	7,332	166	3,116	–	4,050	3,822	38	1,059	–	2,725
	경상북도	1기	124,110	5,839	39,128	–	79,143	13,779	483	4,832	–	8,464	7,867	134	2,813	–	4,920
		2기	128,952	6,291	43,449	–	79,212	13,317	618	5,283	–	7,416	6,435	133	2,233	–	4,069
	경상남도	1기	143,463	7,628	61,710	–	74,125	16,397	990	7,861	–	7,546	15,582	614	5,436	–	9,532
		2기	153,562	8,035	69,213	–	76,314	17,892	750	7,616	–	9,526	15,188	572	5,458	–	9,158
	제주도	1기	23,958	1,221	8,946	–	13,791	1,543	74	891	–	578	1,662	26	608	–	1,028
		2기	23,679	1,309	10,058	–	12,312	1,625	121	950	–	554	732	25	20	–	687
	도계	1기	1,038,338	51,060	357,809	–	629,469	112,935	5,159	48,110	–	59,666	69,014	1,360	27,001	–	40,653
		2기	1,083,152	54,337	403,317	–	625,498	116,479	4,309	53,008	–	59,162	64,884	1,492	24,919	–	38,47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 명)

연도	시 도	과세기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1996	합계	1기	2,550,731	157,206	1,153,395	–	1,240,130	238,398	14,789	119,163	–	104,446	174,628	3,915	81,638	–	89,075
		2기	2,580,113	169,512	926,841	273,197	1,210,563	247,671	14,052	102,483	47,395	83,741	171,722	4,095	68,831	21,020	77,776
	서울특별시	1기	740,694	59,348	384,102	–	297,244	52,345	5,793	27,335	–	19,217	43,026	1,448	24,167	–	17,411
		2기	773,465	63,289	306,450	89,928	313,798	63,769	5,066	29,607	14,682	14,414	52,477	1,299	24,866	9,702	16,610
	부산광역시	1기	215,755	11,530	111,315	–	92,910	20,379	1,270	11,373	–	7,736	17,985	420	7,605	–	9,960
		2기	222,279	12,333	87,436	32,127	90,383	22,919	1,171	7,206	5,322	9,220	12,853	454	5,203	1,272	5,924
	대구광역시	1기	146,740	6,876	71,029	–	68,835	16,015	571	8,462	–	6,982	14,370	137	8,078	–	6,155
		2기	148,257	7,172	60,399	13,619	67,067	19,000	611	8,960	1,846	7,583	11,701	288	5,640	648	5,125
	인천광역시	1기	151,828	10,736	80,374	–	60,718	11,467	571	7,194	–	3,702	7,587	161	4,322	–	3,104
		2기	100,705	7,650	42,596	10,670	39,789	10,445	546	4,643	1,998	3,258	8,978	192	4,621	856	3,309
	광주광역시	1기	75,271	4,382	28,696	–	42,193	7,296	348	3,181	–	3,767	3,228	55	1,406	–	1,767
		2기	75,712	4,831	25,006	5,475	40,400	6,080	335	1,834	928	2,983	4,728	146	1,652	294	2,636
	대전광역시	1기	83,550	3,795	32,324	–	47,431	10,830	307	5,875	–	4,648	8,744	64	4,428	–	4,252
		2기	80,885	4,521	26,009	9,009	41,346	8,294	338	2,492	2,801	2,663	7,196	36	3,375	507	3,278
	시계	1기	1,413,838	96,667	707,840	–	609,331	118,332	8,860	63,420	–	46,052	94,940	2,285	50,006	–	42,649
		2기	1,401,303	99,796	547,896	160,828	592,783	130,507	8,067	54,742	27,577	40,121	97,933	2,415	45,357	13,279	36,882
	경기도	1기	304,815	19,312	151,499	–	134,004	37,081	2,658	20,020	–	14,403	29,021	669	14,741	–	13,611
		2기	341,738	25,109	135,640	36,790	144,199	38,280	1,585	20,462	8,236	7,997	24,782	709	8,833	2,896	12,344
	강원도	1기	93,623	3,531	31,367	–	58,725	11,345	265	4,267	–	6,813	4,975	25	1,660	–	3,290
		2기	91,462	3,884	23,384	10,606	53,588	7,185	371	2,698	1,916	2,200	6,131	102	1,396	621	4,012
	충청북도	1기	92,716	4,947	29,548	–	58,221	8,266	278	4,089	–	3,899	4,423	61	1,753	–	2,609
		2기	88,992	4,811	24,625	6,188	53,368	4,680	308	1,735	401	2,236	3,167	35	900	221	2,011
	충청남도	1기	103,740	4,340	29,964	–	69,436	11,809	298	5,159	–	6,352	4,224	95	1,180		2,949
		2기	103,664	4,959	26,190	5,470	67,045	6,639	329	2,188	482	3,640	3,944	54	1,336	278	2,276
	전라북도	1기	105,863	4,839	34,519	–	66,505	9,822	405	3,656	–	5,761	4,840	60	1,721	–	3,059
		2기	105,440	5,155	29,051	7,185	64,049	10,906	457	3,585	991	5,873	6,421	142	2,302	144	3,833
	전라남도	1기	103,923	5,134	29,480	–	69,309	10,232	303	4,676	–	5,253	6,459	112	2,359	–	3,988
		2기	102,538	5,604	24,964	5,682	66,288	10,498	767	2,544	1,124	6,063	5,905	29	1,624	526	3,726
	경상북도	1기	132,111	6,531	45,650	–	79,930	13,037	629	5,260	–	7,148	7,055	164	2,530	–	4,361
		2기	135,481	7,211	38,429	12,292	77,549	12,978	590	6,076	1,722	4,590	7,656	33	2,426	1,557	3,640
	경상남도	1기	177,188	10,554	83,442	–	83,192	17,403	1,079	8,053	–	8,271	16,382	427	4,919	–	11,036
		2기	184,089	11,457	68,446	24,323	79,863	23,814	1,544	7,244	4,528	10,498	14,908	537	4,431	1,382	8,558
	제주도	1기	22,914	1,351	10,086	–	11,477	1,071	14	563	–	494	2,309	17	769	–	1,523
		2기	25,406	1,526	8,216	3,833	11,831	2,184	34	1,209	418	523	875	39	226	116	494
	도계	1기	1,136,893	60,539	445,555	–	630,799	120,066	5,929	55,743	–	58,394	79,688	1,630	31,632	–	46,426
		2기	1,178,810	69,716	378,945	112,369	617,780	117,164	5,985	47,741	19,818	43,620	73,789	1,680	23,474	7,741	40,894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 명)

연도	시 도	과세기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1997	합계	1기	2,672,987	180,758	959,250	372,542	1,160,437	336,908	16,099	110,276	96,100	114,433	189,404	6,009	69,731	28,876	84,788
		2기	2,930,116	192,333	1,004,852	490,034	1,242,897	369,412	18,398	126,460	109,462	115,092	151,269	3,803	54,280	32,014	61,172
	서울특별시	1기	762,020	67,031	295,800	106,662	292,527	77,412	4,553	26,506	26,254	20,099	53,534	2,413	26,547	9,774	14,800
		2기	802,574	69,639	303,602	123,400	305,933	103,595	5,361	37,610	28,319	32,305	36,527	1,109	15,468	7,516	12,434
	부산광역시	1기	232,866	12,997	89,040	39,599	91,230	28,016	1,244	9,042	7,997	9,733	18,730	726	6,103	3,083	8,818
		2기	254,474	13,731	92,986	53,480	94,277	26,619	1,505	9,734	9,623	5,757	15,002	408	5,555	4,013	5,026
	대구광역시	1기	151,098	7,580	62,191	22,996	58,331	16,530	763	6,759	4,543	4,465	10,625	345	3,901	1,671	4,708
		2기	163,928	7,942	63,807	32,494	59,685	18,991	693	6,613	6,932	4,753	8,822	178	3,674	1,798	3,172
	인천광역시	1기	110,645	8,249	44,815	15,092	42,489	19,512	809	6,596	5,070	7,037	9,758	217	4,475	1,479	3,587
		2기	122,546	8,626	46,335	21,013	46,572	19,710	900	6,131	6,973	5,706	7,799	140	3,053	1,635	2,971
	광주광역시	1기	78,914	5,066	25,770	8,433	39,645	8,489	539	2,773	1,859	3,318	5,162	159	1,004	281	3,718
		2기	85,394	5,555	27,244	11,027	41,568	10,430	750	4,050	2,510	3,120	4,945	92	1,760	843	2,250
	대전광역시	1기	80,258	4,724	25,993	12,338	37,203	10,190	519	3,955	3,336	2,380	4,756	150	797	1,113	2,696
		2기	85,276	4,955	27,136	14,942	38,243	10,395	553	3,019	3,794	3,029	4,272	82	1,230	808	2,152
	울산광역시	1기	46,329	2,936	17,422	9,932	16,039	7,330	247	1,546	2,552	2,985	4,395	94	1,365	600	2,336
		2기	54,557	3,212	18,545	15,214	17,586	7,237	349	2,214	3,312	1,362	3,400	133	1,175	1,109	983
	시계	1기	1,462,130	108,583	561,031	215,052	577,464	167,479	8,674	57,177	51,611	50,017	106,960	4,104	44,192	18,001	40,663
		2기	1,568,749	113,660	579,655	271,570	603,864	196,977	10,111	69,371	61,463	56,032	80,767	2,142	31,915	17,722	28,988
	경기도	1기	404,290	27,508	159,914	60,158	156,710	72,301	2,766	23,796	22,076	23,663	33,397	893	12,000	4,171	16,333
		2기	457,504	29,608	170,378	82,056	175,462	72,442	3,022	24,793	19,615	25,012	26,108	716	9,619	6,102	9,671
	강원도	1기	89,899	3,958	24,054	13,766	48,121	9,615	529	2,811	2,951	3,324	4,910	105	1,194	662	2,949
		2기	100,792	4,515	24,943	18,008	53,326	10,851	537	3,656	3,202	3,456	4,281	101	912	902	2,366
	충청북도	1기	81,739	5,067	25,482	9,040	42,150	11,303	622	2,707	2,635	5,339	4,991	167	1,485	512	2,827
		2기	92,954	5,394	26,927	13,190	47,443	10,721	403	3,373	3,713	3,232	4,950	96	1,616	957	2,281
	충청남도	1기	100,743	5,388	28,182	7,738	59,435	13,757	682	5,499	2,165	5,411	5,100	103	1,674	403	2,920
		2기	108,457	5,887	30,061	9,371	63,138	10,325	597	3,986	1,905	3,837	4,439	96	1,195	406	2,742
	전라북도	1기	106,211	5,534	29,980	9,674	61,023	12,764	480	4,356	2,770	5,158	8,015	178	2,160	934	4,743
		2기	118,804	6,020	32,087	13,059	67,638	13,490	835	4,626	2,947	5,082	6,798	111	2,027	984	3,676
	전라남도	1기	106,528	6,136	26,651	7,755	65,986	9,632	481	3,072	1,703	4,376	5,587	163	1,046	636	3,742
		2기	124,451	7,017	30,690	10,626	76,118	13,621	970	4,500	2,405	5,746	7,029	125	1,956	808	4,140
	경상북도	1기	136,137	7,655	40,670	18,365	69,447	13,544	861	4,697	3,673	4,313	6,444	32	1,953	1,157	3,302
		2기	143,696	8,073	42,095	27,487	66,041	15,738	733	4,625	5,814	4,566	5,559	163	1,376	1,205	2,815
	경상남도	1기	155,022	9,242	54,657	23,155	67,968	24,582	770	5,848	5,474	12,490	12,403	247	3,614	2,080	6,462
		2기	179,321	10,382	59,112	33,557	76,270	20,842	1,063	6,565	6,204	7,010	9,032	222	3,068	1,951	3,791
	제주도	1기	30,288	1,687	8,629	7,839	12,133	1,931	234	313	1,042	342	1,597	17	413	320	847
		2기	35,388	1,777	8,904	11,110	13,597	4,405	127	965	2,194	1,119	2,306	31	596	977	702
	도계	1기	1,210,857	72,175	398,219	157,490	582,973	169,429	7,425	53,099	44,489	64,416	82,444	1,905	25,539	10,875	44,125
		2기	1,361,367	78,673	425,197	218,464	639,033	172,435	8,287	57,089	47,999	59,060	70,502	1,661	22,365	14,292	32,184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 명)

연도	시 도	과세기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1998	합계	1기	2,852,249	189,020	976,553	521,047	1,165,629	274,514	14,623	98,742	90,838	70,311	320,716	9,993	125,595	81,716	103,412
		2기	2,855,369	197,185	979,285	546,161	1,132,738	306,366	18,016	108,340	103,222	76,788	325,554	10,559	126,712	85,111	103,172
	서울특별시	1기	785,852	68,393	295,731	129,284	292,444	71,025	5,904	30,664	20,163	14,294	84,190	3,318	37,117	20,157	23,598
		2기	766,320	70,635	290,736	127,279	277,670	75,242	6,343	30,964	22,436	15,499	81,705	3,378	35,526	19,891	22,910
	부산광역시	1기	245,056	13,233	89,877	57,326	84,620	22,869	1,192	9,066	8,381	4,230	29,724	986	11,925	8,786	8,027
		2기	246,809	13,764	86,569	61,796	84,680	26,659	1,447	9,453	10,204	5,555	30,046	983	11,615	9,672	7,776
	대구광역시	1기	157,971	7,690	62,173	36,410	51,698	15,110	555	5,539	6,478	2,538	24,195	629	9,204	6,904	7,458
		2기	160,334	7,987	62,519	40,907	48,921	16,081	780	5,962	6,534	2,805	17,386	358	8,282	5,556	3,190
	인천광역시	1기	116,066	8,354	44,074	21,519	42,119	10,312	257	3,875	4,748	1,432	20,719	573	7,184	7,021	5,941
		2기	117,697	8,593	44,018	24,284	40,802	14,027	819	5,112	5,251	2,845	12,260	498	5,410	3,275	3,077
	광주광역시	1기	85,413	4,775	26,131	13,483	41,024	9,110	393	3,010	2,770	2,937	10,525	161	3,735	2,321	4,308
		2기	73,307	4,755	24,236	11,825	32,491	8,311	483	2,844	2,736	2,248	8,639	293	3,306	1,437	3,603
	대전광역시	1기	82,746	4,655	25,812	15,106	37,173	8,727	423	2,955	3,604	1,745	9,304	270	3,337	2,437	3,260
		2기	90,184	5,170	26,950	13,716	44,348	6,616	328	1,909	2,756	1,623	13,643	389	4,759	3,140	5,355
	울산광역시	1기	53,163	3,062	17,603	16,589	15,909	7,251	401	2,789	2,762	1,299	6,028	172	1,971	2,549	1,336
		2기	51,775	3,191	17,047	17,333	14,204	6,696	445	2,413	3,105	733	5,431	170	1,826	2,486	949
	시계	1기	1,526,267	110,162	561,401	289,717	564,987	144,404	9,125	57,898	48,906	28,475	184,685	6,109	74,473	50,175	53,928
		2기	1,506,426	114,095	552,075	297,140	543,116	153,632	10,645	58,657	53,022	31,308	169,110	6,069	70,724	45,457	46,860
	경기도	1기	442,908	29,750	166,509	84,563	162,086	41,492	1,410	15,620	16,265	8,197	43,669	1,694	20,301	10,492	11,182
		2기	463,681	31,259	171,365	89,024	172,033	55,604	3,061	21,232	17,114	14,197	44,908	1,486	18,185	12,167	13,070
	강원도	1기	95,436	4,593	24,199	18,730	47,914	9,283	346	2,545	3,569	2,823	8,351	170	2,095	2,276	3,810
		2기	97,637	4,779	24,662	20,572	47,624	9,955	372	2,382	4,298	2,903	8,922	256	2,782	2,698	3,186
	충청북도	1기	88,867	5,400	26,087	12,922	44,458	9,903	531	3,085	3,283	3,004	9,110	200	3,334	1,715	3,861
		2기	95,171	5,768	26,590	13,613	49,200	10,317	500	3,035	3,803	2,979	13,381	438	4,412	2,322	6,209
	충청남도	1기	106,415	6,082	30,349	9,231	60,753	10,293	481	3,247	1,690	4,875	6,664	198	2,516	897	3,053
		2기	109,473	6,299	30,801	9,169	63,204	14,424	703	4,639	3,385	5,697	11,673	419	4,012	710	6,532
	전라북도	1기	117,689	5,898	31,414	13,625	66,752	11,700	513	3,624	2,795	4,768	14,052	207	4,494	2,337	7,014
		2기	105,135	6,258	30,996	13,393	54,488	11,787	578	3,331	3,436	4,442	11,970	340	4,287	1,982	5,361
	전라남도	1기	120,365	7,370	29,534	10,934	72,527	11,426	606	3,402	2,240	5,178	13,917	247	4,220	1,873	7,577
		2기	107,172	7,930	29,248	10,129	59,865	11,215	634	3,621	1,881	5,079	12,535	314	4,503	1,754	5,964
	경상북도	1기	142,598	8,152	41,530	30,396	62,520	13,407	683	2,522	3,030	7,172	11,972	275	3,712	3,367	4,618
		2기	147,302	8,612	43,994	35,583	59,113	15,625	631	4,834	6,363	3,797	18,724	426	6,104	5,943	6,251
	경상남도	1기	176,700	9,838	56,975	38,495	71,392	18,491	836	6,000	6,641	5,014	22,883	638	8,728	6,275	7,242
		2기	189,089	10,352	61,304	45,075	72,358	19,923	784	5,855	7,673	5,611	27,666	612	9,557	9,054	8,443
	제주도	1기	35,004	1,775	8,555	12,434	12,240	4,115	92	799	2,419	805	5,413	255	1,722	2,309	1,127
		2기	34,283	1,833	8,250	12,463	11,737	3,884	108	754	2,247	775	6,665	199	2,146	3,024	1,296
	도계	1기	1,325,982	78,858	415,152	231,330	600,642	130,110	5,498	40,844	41,932	41,836	136,031	3,884	51,122	31,541	49,484
		2기	1,348,943	83,090	427,210	249,021	589,622	152,734	7,371	49,683	50,200	45,480	156,444	4,490	55,988	39,654	56,312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 명)

연도	시 도	과세기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1999	합계	1기	2,905,482	211,709	1,009,578	587,026	1,097,169	485,327	28,070	166,047	137,778	153,432	335,905	12,798	113,777	95,383	114,547
		2기	2,998,956	232,474	1,059,109	586,800	1,120,573	505,153	31,957	179,833	144,900	148,463	299,954	10,549	104,948	92,595	91,862
	서울특별시	1기	787,090	75,924	303,520	138,728	268,918	119,309	10,156	49,999	31,931	27,223	84,031	4,351	33,773	21,258	24,649
		2기	817,029	84,135	315,462	142,980	274,452	123,665	12,486	50,814	30,621	29,744	75,915	3,591	30,732	21,543	20,049
	부산광역시	1기	250,972	14,390	88,661	66,532	81,389	39,124	1,794	13,515	14,800	9,015	27,396	879	9,631	10,341	6,545
		2기	252,500	15,234	92,146	68,146	76,974	38,089	1,942	14,127	14,581	7,439	24,384	780	8,628	9,929	5,047
	대구광역시	1기	159,921	8,329	63,176	44,004	44,412	25,769	945	9,183	11,331	4,310	19,209	473	6,745	7,702	4,289
		2기	164,531	9,108	66,005	44,975	44,443	28,029	1,239	10,756	11,490	4,544	16,457	371	6,069	7,248	2,769
	인천광역시	1기	121,257	9,314	46,032	26,825	39,086	23,625	1,444	8,927	7,604	5,650	16,075	666	6,007	4,829	4,573
		2기	150,975	12,526	59,977	30,082	48,390	27,539	1,449	10,445	8,114	7,531	14,223	495	5,312	4,799	3,617
	광주광역시	1기	80,304	5,842	24,149	10,568	39,745	13,746	766	4,550	4,509	3,921	10,242	405	3,145	2,860	3,832
		2기	80,587	6,292	26,848	15,705	31,742	16,649	898	5,688	4,208	5,875	9,725	319	3,223	3,033	3,150
	대전광역시	1기	86,684	5,585	27,780	14,440	38,879	15,946	743	4,931	4,329	5,943	12,023	309	3,469	2,859	5,386
		2기	95,726	6,101	29,218	13,245	47,162	17,473	851	5,155	4,114	7,353	10,687	299	3,150	2,656	4,582
	울산광역시	1기	53,651	3,445	17,938	18,922	13,346	9,723	462	3,088	1,902	1,271	6,838	178	2,050	3,239	1,371
		2기	54,590	3,730	18,863	18,474	13,523	10,102	492	3,245	5,269	1,096	6,376	178	2,021	3,312	865
	시계	1기	1,539,879	122,829	571,256	320,019	525,775	247,242	16,310	94,193	76,406	57,333	175,814	7,261	64,820	53,088	50,645
		2기	1,615,938	137,126	608,519	333,607	536,686	261,546	19,357	100,230	78,397	63,582	157,767	6,033	59,135	52,520	40,079
	경기도	1기	467,244	34,119	177,066	90,903	165,156	84,374	4,749	30,884	19,306	29,435	54,606	2,046	19,063	15,280	18,217
		2기	487,554	35,951	184,641	88,900	178,062	96,275	5,349	36,358	23,048	31,520	50,864	1,707	18,469	14,573	16,115
	강원도	1기	97,315	5,165	24,975	21,472	45,703	16,876	694	4,020	4,248	7,914	11,829	316	2,935	3,488	5,090
		2기	99,761	5,572	25,604	20,776	47,809	16,300	747	3,847	5,957	5,749	10,987	257	2,955	3,591	4,184
	충청북도	1기	98,485	6,160	27,544	14,537	50,244	16,593	853	4,441	3,166	8,133	11,364	404	3,196	2,304	5,460
		2기	95,713	6,680	27,155	10,044	51,834	15,457	854	4,614	4,107	5,882	10,022	378	2,971	1,951	4,722
	충청남도	1기	113,837	6,528	31,445	9,666	66,198	17,828	876	5,244	2,111	9,597	13,920	357	3,970	1,537	8,056
		2기	109,548	7,179	31,758	8,150	62,461	17,629	920	5,192	2,114	9,403	10,919	425	3,425	1,188	5,881
	전라북도	1기	107,849	6,682	29,477	14,031	57,659	20,097	779	5,259	3,489	10,570	13,769	402	3,865	2,467	7,035
		2기	107,286	7,069	32,380	12,006	55,831	20,323	907	5,922	3,689	9,805	11,916	334	3,568	2,450	5,564
	전라남도	1기	100,898	7,804	32,241	15,854	44,999	18,138	998	4,426	2,424	10,290	12,749	362	3,369	1,643	7,375
		2기	103,466	8,601	29,598	10,247	55,020	17,347	958	5,122	2,517	8,750	10,943	381	3,188	1,583	5,791
	경상북도	1기	153,040	9,334	45,494	39,002	59,210	27,307	1,219	7,245	10,046	8,797	17,407	416	5,250	6,406	5,335
		2기	150,773	10,099	47,134	40,346	53,194	24,650	1,219	7,602	10,787	5,042	15,311	488	4,708	6,143	3,972
	경상남도	1기	192,127	11,159	61,694	48,117	71,157	30,772	1,415	9,017	10,570	9,770	20,425	533	6,527	6,877	6,488
		2기	192,894	12,112	63,540	48,893	68,349	29,469	1,410	9,660	10,883	7,516	17,550	469	5,774	6,373	4,934
	제주도	1기	34,808	1,929	8,386	13,425	11,068	6,100	177	1,318	3,012	1,593	4,022	101	782	2,293	846
		2기	36,023	2,085	8,780	13,831	11,327	6,157	236	1,306	3,401	1,214	3,675	77	755	2,223	620
	도계	1기	1,365,603	88,880	438,322	267,007	571,394	238,085	11,760	71,854	58,372	96,099	160,091	4,937	48,957	42,295	63,902
		2기	1,383,018	95,348	450,590	253,193	583,887	243,607	12,600	79,623	66,503	84,881	142,187	4,516	45,813	40,075	51,783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 명)

연도	시 도	과세기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2000	합계	1기	3,231,274	255,840	1,136,159	614,219	1,225,056	531,571	39,042	259,147	222,715	10,667	395,388	14,114	145,926	145,866	89,482
		2기	3,390,772	278,657	1,442,987	1,669,128	–	483,853	33,978	211,703	238,172	–	319,699	13,679	148,507	157,513	–
	서울특별시	1기	849,665	95,100	329,548	142,695	282,322	133,160	17,450	71,505	42,224	1,981	97,552	5,108	42,983	30,484	18,977
		2기	885,376	104,309	417,632	363,435	–	112,473	13,448	57,684	41,341	–	78,426	5,042	42,781	30,603	–
	부산광역시	1기	265,292	16,193	98,168	71,432	79,499	40,215	2,110	22,306	15,288	511	30,985	939	12,041	13,502	4,503
		2기	270,132	17,301	129,630	123,201	–	37,511	1,963	18,977	16,571	–	25,406	832	14,003	10,571	–
	대구광역시	1기	176,418	9,772	70,647	49,271	46,728	29,114	1,221	16,371	11,245	277	22,287	466	8,848	10,307	2,666
		2기	192,899	10,478	93,392	89,029	–	29,423	1,143	12,599	15,681	–	17,607	572	8,889	8,146	–
	인천광역시	1기	164,468	13,425	65,237	33,027	52,779	28,056	1,577	15,088	10,938	453	19,144	676	7,602	6,972	3,894
		2기	171,794	14,352	82,540	74,902	–	26,767	1,440	12,758	12,569	–	18,699	909	9,413	8,377	–
	광주광역시	1기	85,845	6,761	28,466	15,807	34,811	17,727	998	8,491	7,701	537	13,354	432	4,813	4,755	3,354
		2기	91,245	7,643	39,128	44,474	–	14,664	890	6,814	6,960	–	9,241	293	4,816	4,132	–
	대전광역시	1기	105,223	6,803	32,533	12,763	53,124	17,846	1,000	8,288	7,957	601	15,620	451	5,053	5,111	5,005
		2기	117,416	7,562	44,145	65,709	–	16,357	973	6,639	8,745	–	11,167	483	4,706	5,978	–
	울산광역시	1기	59,054	4,031	20,310	21,530	13,183	10,450	505	5,795	4,089	61	8,101	266	2,788	4,257	790
		2기	60,061	4,314	27,325	28,422	–	10,669	494	4,419	5,756	–	6,031	296	2,897	2,838	–
	시계	1기	1,705,965	152,085	644,909	346,525	562,446	276,568	24,861	147,844	99,442	4,421	207,043	8,338	84,128	75,388	39,189
		2기	1,788,923	165,959	833,792	789,172	–	247,864	20,351	119,890	107,623	–	166,577	8,427	87,505	70,645	–
	경기도	1기	537,277	39,621	203,906	91,740	202,010	101,336	6,375	49,754	43,018	2,189	63,993	2,427	24,666	20,286	16,614
		2기	558,724	43,737	253,791	261,196	–	91,516	5,891	41,937	43,688	–	49,865	1,722	22,949	25,194	–
	강원도	1기	105,319	5,867	27,042	20,651	51,759	16,895	773	5,948	9,715	459	13,764	372	3,685	5,579	4,128
		2기	107,194	6,405	33,827	66,962	–	16,530	779	4,774	10,977	–	13,059	507	3,995	8,557	–
	충청북도	1기	104,438	7,410	29,565	10,199	57,264	16,590	899	6,422	8,810	459	14,394	441	4,296	4,817	4,840
		2기	117,793	8,121	37,511	72,161	–	15,328	908	5,164	9,256	–	9,736	369	3,543	5,824	–
	충청남도	1기	112,979	7,729	33,482	8,120	63,648	17,928	1,049	6,676	9,694	509	15,968	432	4,396	6,266	4,874
		2기	131,529	8,731	41,030	81,768	–	16,734	967	5,456	10,311	–	12,037	454	3,842	7,741	–
	전라북도	1기	125,584	7,659	35,954	12,335	69,636	19,985	939	7,567	10,634	845	16,649	422	4,692	5,665	5,870
		2기	126,453	8,227	41,064	77,162	–	18,157	1,004	6,554	10,599	–	13,412	436	4,591	8,385	–
	전라남도	1기	128,115	9,288	32,652	11,622	74,553	18,967	1,032	6,716	10,440	779	14,425	437	4,300	4,144	5,544
		2기	128,047	9,465	39,074	79,508	–	16,170	990	5,538	9,642	–	11,843	444	3,916	7,483	–
	경상북도	1기	175,372	10,929	52,804	50,972	60,667	26,217	1,253	12,022	12,684	258	20,434	438	6,555	10,071	3,370
		2기	184,917	11,628	68,166	105,123	–	26,691	1,323	9,040	16,328	–	18,847	588	8,237	10,022	–
	경상남도	1기	199,423	13,017	66,616	49,307	70,483	30,588	1,599	13,769	14,656	564	23,536	713	7,970	10,565	4,288
		2기	209,190	13,953	81,660	113,577	–	28,963	1,458	11,302	16,203	–	20,709	724	8,432	11,553	–
	제주도	1기	36,802	2,235	9,229	12,748	12,590	6,497	262	2,429	3,622	184	5,182	94	1,238	3,085	765
		2기	38,002	2,431	13,072	22,499	–	5,900	307	2,048	3,545	–	3,614	8	1,497	2,109	–
	도계	1기	1,525,309	103,755	491,250	267,694	662,610	255,003	14,181	111,303	123,273	6,246	188,345	5,776	61,798	70,478	50,293
		2기	1,601,849	112,698	609,195	879,956	–	235,989	13,627	91,813	130,549	–	153,122	5,252	61,002	86,868	–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 명)

연도	시 도	과세기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2001	합계	1기	3,574,467	297,790	1,469,009	1,807,668	-	513,890	36,337	231,032	246,521	-	376,324	13,939	164,635	197,750	-
		2기	3,709,035	321,204	1,573,217	1,814,614	-	558,599	36,508	245,873	276,218	-	333,256	11,209	143,892	178,155	-
	서울특별시	1기	909,289	109,951	418,050	381,288	-	118,297	13,590	61,752	42,955	-	91,411	5,324	48,254	37,833	-
		2기	946,001	117,208	444,139	384,654	-	132,908	13,876	68,139	50,893	-	80,222	3,958	41,185	35,079	-
	부산광역시	1기	300,159	18,503	135,100	146,556	-	38,068	2,111	19,315	16,642	-	29,240	1,017	14,925	13,298	-
		2기	306,198	20,425	137,405	148,368	-	38,642	2,174	17,626	18,842	-	23,464	661	11,200	11,603	-
	대구광역시	1기	209,895	11,212	95,834	102,849	-	26,758	1,118	12,626	13,014	-	19,838	556	9,310	9,972	-
		2기	197,433	11,855	94,213	91,365	-	28,490	1,223	13,397	13,870	-	17,132	436	7,582	9,114	-
	인천광역시	1기	178,584	15,320	82,802	80,462	-	28,434	1,658	13,613	13,163	-	20,176	641	9,390	10,145	-
		2기	194,276	16,649	91,020	86,607	-	30,286	1,496	14,124	14,666	-	19,454	591	8,813	10,050	-
	광주광역시	1기	93,129	7,792	38,765	46,572	-	16,232	913	7,121	8,198	-	11,612	408	5,151	6,053	-
		2기	104,137	8,579	43,593	51,965	-	18,147	1,028	7,992	9,127	-	11,874	368	5,036	6,470	-
	대전광역시	1기	118,312	8,308	45,312	64,692	-	17,451	999	7,340	9,112	-	12,668	336	5,160	7,172	-
		2기	124,523	8,768	47,175	68,580	-	19,096	1,076	7,447	10,573	-	12,115	366	4,904	6,845	-
	울산광역시	1기	72,997	4,765	29,399	38,833	-	11,449	539	5,017	5,893	-	7,959	231	3,464	4,264	-
		2기	75,627	5,009	30,823	39,795	-	11,995	618	4,824	6,553	-	7,434	199	3,272	3,963	-
	시계	1기	1,882,365	175,851	845,262	861,252	-	256,689	20,928	126,784	108,977	-	192,904	8,513	95,654	88,737	-
		2기	1,948,195	188,493	888,368	871,334	-	279,564	21,491	133,549	124,524	-	171,695	6,579	81,992	83,124	-
	경기도	1기	591,655	47,077	262,803	281,775	-	103,740	6,469	49,745	47,526	-	68,259	2,227	30,321	35,711	-
		2기	632,657	52,247	302,360	278,050	-	120,036	6,614	60,339	53,083	-	60,612	1,750	27,263	31,599	-
	강원도	1기	110,703	6,781	33,260	70,662	-	17,416	939	5,405	11,072	-	12,979	318	3,761	8,900	-
		2기	116,243	7,496	36,260	72,487	-	18,257	858	5,003	12,396	-	12,158	349	3,663	8,146	-
	충청북도	1기	122,977	8,720	38,833	75,424	-	16,353	1,021	5,757	9,575	-	13,088	385	4,102	8,601	-
		2기	120,309	9,395	40,179	70,735	-	16,404	923	5,321	10,160	-	10,794	363	3,652	6,779	-
	충청남도	1기	139,855	9,603	42,743	87,509	-	18,470	1,226	6,344	10,900	-	14,068	442	4,645	8,981	-
		2기	138,461	10,184	43,938	84,339	-	18,873	1,157	5,783	11,933	-	10,661	328	3,180	7,153	-
	전라북도	1기	130,298	8,739	42,559	79,000	-	19,193	1,174	7,309	10,710	-	14,435	429	4,904	9,102	-
		2기	137,151	9,820	46,678	80,653	-	20,109	1,085	7,168	11,856	-	11,705	267	3,864	7,574	-
	전라남도	1기	130,011	10,202	39,072	80,737	-	16,859	1,195	5,758	9,906	-	12,707	415	4,184	8,108	-
		2기	138,387	11,019	43,735	83,633	-	17,623	1,135	5,549	10,939	-	11,593	391	3,907	7,295	-
	경상북도	1기	196,897	12,503	66,983	117,411	-	26,340	1,386	9,663	15,291	-	19,773	523	6,894	12,356	-
		2기	201,112	13,736	68,971	118,405	-	27,558	1,367	8,869	17,322	-	18,067	511	6,687	10,869	-
	경상남도	1기	223,419	15,492	82,965	124,962	-	32,309	1,671	12,041	18,597	-	23,144	592	8,800	13,752	-
		2기	231,110	15,779	88,189	127,142	-	33,327	1,615	12,309	19,403	-	21,071	584	8,234	12,253	-
	제주도	1기	46,287	2,822	14,529	28,936	-	6,521	328	2,226	3,967	-	4,967	95	1,370	3,502	-
		2기	45,410	3,035	14,539	27,836	-	6,848	263	1,983	4,602	-	4,900	87	1,450	3,363	-
	도계	1기	1,692,102	121,939	623,747	946,416	-	257,201	15,409	104,248	137,544	-	183,420	5,426	68,981	109,013	-
		2기	1,760,840	132,711	684,849	943,280	-	279,035	15,017	112,324	151,694	-	161,561	4,630	61,900	95,031	-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 명)

연도	시 도	과세기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2002	합계	1기	3,833,195	329,233	1,665,208	1,838,754	-	608,909	38,624	300,458	269,827	-	420,148	16,934	184,433	218,781	-
		2기	3,963,454	345,292	1,774,268	1,843,894	-	630,461	33,839	281,010	315,612	-	380,113	15,018	168,935	196,160	-
	서울특별시	1기	975,704	120,291	468,625	386,788	-	149,532	14,880	84,444	50,208	-	100,859	6,264	51,491	43,104	-
		2기	1,013,969	125,026	500,799	388,144	-	150,088	12,809	81,188	56,091	-	88,768	5,853	46,125	36,790	-
	부산광역시	1기	316,219	20,947	141,394	153,878	-	41,298	2,429	20,608	18,261	-	31,314	1,211	14,785	15,318	-
		2기	317,842	21,719	146,180	149,943	-	38,308	2,011	19,307	16,990	-	27,347	879	13,650	12,818	-
	대구광역시	1기	198,564	11,984	97,140	89,440	-	29,585	1,306	13,755	14,524	-	22,347	661	10,268	11,418	-
		2기	196,653	11,371	97,625	87,657	-	28,240	1,158	12,860	14,222	-	19,956	533	9,053	10,370	-
	인천광역시	1기	207,779	17,022	98,358	92,399	-	33,858	1,769	17,675	14,414	-	22,559	760	10,342	11,457	-
		2기	211,508	17,824	106,114	87,570	-	36,203	1,572	17,331	17,300	-	23,618	904	11,434	11,280	-
	광주광역시	1기	100,959	8,944	42,361	49,654	-	17,978	1,057	8,238	8,683	-	13,902	473	6,512	6,917	-
		2기	109,719	9,396	44,919	55,404	-	19,964	1,002	7,676	11,286	-	14,620	679	7,150	6,791	-
	대전광역시	1기	125,084	8,973	48,950	67,161	-	19,683	1,044	8,630	10,009	-	15,176	498	6,086	8,592	-
		2기	135,777	9,279	50,679	75,819	-	23,505	976	7,486	15,043	-	15,846	702	6,682	8,462	-
	울산광역시	1기	76,689	5,069	30,347	41,273	-	11,645	485	5,319	5,841	-	9,441	276	4,389	4,776	-
		2기	78,412	5,282	31,309	41,821	-	13,544	477	4,974	8,093	-	9,975	319	4,352	5,304	-
	시계	1기	2,000,998	193,230	927,175	880,593	-	303,579	22,970	158,669	121,940	-	215,598	10,143	103,873	101,582	-
		2기	2,063,880	199,897	977,625	886,358	-	309,852	20,005	150,822	139,025	-	200,130	9,869	98,446	91,815	-
	경기도	1기	683,463	54,905	339,831	288,727	-	139,785	7,159	78,996	53,630	-	79,373	2,674	36,766	39,933	-
		2기	728,964	58,745	378,238	291,981	-	143,413	6,396	73,621	63,396	-	66,506	2,061	32,099	32,346	-
	강원도	1기	122,897	7,709	38,235	76,953	-	18,450	893	6,004	11,553	-	14,246	416	4,311	9,519	-
		2기	120,562	8,419	40,043	72,100	-	18,870	833	5,437	12,600	-	15,884	492	4,819	10,573	-
	충청북도	1기	125,088	9,073	42,241	73,774	-	18,091	961	7,046	10,084	-	14,218	535	4,802	8,881	-
		2기	130,471	9,646	43,955	76,870	-	19,505	916	6,172	12,417	-	11,091	328	3,633	7,130	-
	충청남도	1기	131,411	10,290	44,862	76,259	-	20,019	1,127	7,369	11,523	-	14,833	551	4,966	9,316	-
		2기	139,648	10,724	47,844	81,080	-	23,259	997	6,413	15,849	-	12,461	327	3,883	8,251	-
	전라북도	1기	140,093	9,900	48,199	81,994	-	20,453	1,053	7,849	11,551	-	15,795	491	5,803	9,501	-
		2기	142,767	10,257	49,981	82,529	-	23,671	851	6,462	16,358	-	12,496	359	4,505	7,632	-
	전라남도	1기	144,101	11,068	46,721	86,312	-	17,932	931	6,608	10,393	-	15,044	543	4,816	9,685	-
		2기	148,731	11,898	48,776	88,057	-	21,094	872	5,870	14,352	-	14,184	271	4,167	9,746	-
	경상북도	1기	193,501	13,724	69,936	109,841	-	28,537	1,424	10,979	16,134	-	20,959	635	7,603	12,721	-
		2기	192,193	15,550	74,531	102,112	-	29,185	1,154	9,963	18,068	-	19,702	495	7,097	12,110	-
	경상남도	1기	243,124	16,309	92,718	134,097	-	34,318	1,798	14,192	18,328	-	24,748	796	9,616	14,336	-
		2기	246,813	17,109	97,107	132,597	-	33,596	1,541	14,022	18,033	-	20,636	658	7,654	12,324	-
	제주도	1기	48,519	3,025	15,290	30,204	-	7,745	308	2,746	4,691	-	5,334	150	1,877	3,307	-
		2기	49,425	3,047	16,168	30,210	-	8,016	274	2,228	5,514	-	7,023	158	2,632	4,233	-
	도계	1기	1,832,197	136,003	738,033	958,161	-	305,330	15,654	141,789	147,887	-	204,550	6,791	80,560	117,199	-
		2기	1,899,574	145,395	796,643	957,536	-	320,609	13,834	130,188	176,587	-	179,983	5,149	70,489	104,345	-

3.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 명)

연도	시 도	과세기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2003	합계	1기	3,949,410	352,224	1,801,107	1,796,079	–	542,494	33,367	259,436	249,691	–	436,589	19,587	205,396	211,606	–
		2기	3,994,665	359,154	1,861,707	1,773,804	–	464,285	27,820	239,686	196,779	–	420,444	21,708	204,094	194,642	–
	서울특별시	1기	1,021,808	126,310	505,784	389,714	–	126,352	12,968	64,717	48,667	–	94,856	8,367	52,027	34,462	–
		2기	1,036,044	128,296	521,266	386,482	–	104,895	11,281	58,356	35,258	–	90,579	8,784	54,107	27,688	–
	부산광역시	1기	315,246	22,587	144,281	148,378	–	35,235	1,896	19,383	13,956	–	33,517	1,238	17,001	15,278	–
		2기	309,264	21,114	149,696	138,454	–	30,894	1,587	16,653	12,654	–	31,879	1,570	16,850	13,459	–
	대구광역시	1기	196,139	11,458	96,125	88,556	–	28,369	1,107	13,254	14,008	–	24,357	759	11,897	11,701	–
		2기	197,831	12,015	97,558	88,258	–	23,049	841	11,567	10,641	–	24,508	879	11,781	11,848	–
	인천광역시	1기	228,878	20,110	117,610	91,158	–	30,900	1,309	15,200	14,391	–	23,666	767	12,038	10,861	–
		2기	231,302	20,588	126,589	84,125	–	24,823	1,111	13,245	10,467	–	24,115	1,017	11,467	11,631	–
	광주광역시	1기	100,420	9,123	43,598	47,699	–	16,678	984	7,371	8,323	–	14,735	465	7,006	7,264	–
		2기	103,628	9,405	44,099	50,124	–	14,187	745	6,855	6,587	–	13,084	696	6,272	6,116	–
	대전광역시	1기	130,792	13,314	50,255	67,223	–	18,065	838	8,082	9,145	–	16,114	578	6,977	8,559	–
		2기	136,192	9,699	53,269	73,224	–	15,783	644	7,082	8,057	–	15,984	629	6,792	8,563	–
	울산광역시	1기	78,396	5,700	34,222	38,474	–	12,172	490	5,317	6,365	–	10,169	286	4,202	5,681	–
		2기	74,254	5,897	33,691	34,666	–	10,177	349	4,632	5,196	–	9,802	271	4,240	5,291	–
	시계	1기	2,071,679	208,602	991,875	871,202	–	267,771	19,592	133,324	114,855	–	217,414	12,460	111,148	93,806	–
		2기	2,088,515	207,014	1,026,168	855,333	–	223,808	16,558	118,390	88,860	–	209,951	13,846	111,509	84,596	–
	경기도	1기	711,953	59,458	378,954	273,541	–	116,086	6,232	63,587	46,267	–	82,519	3,236	43,332	35,951	–
		2기	728,623	60,458	389,569	278,596	–	109,100	5,499	66,005	37,596	–	86,694	3,427	44,522	38,745	–
	강원도	1기	127,866	8,569	43,598	75,699	–	17,068	705	6,132	10,231	–	16,417	305	4,975	11,137	–
		2기	139,006	10,247	49,170	79,589	–	15,573	587	5,263	9,723	–	14,060	432	4,652	8,976	–
	충청북도	1기	132,748	13,448	44,148	75,152	–	16,101	878	6,529	8,694	–	15,470	447	5,912	9,111	–
		2기	125,736	9,621	44,559	71,556	–	13,698	614	6,222	6,862	–	12,633	485	5,309	6,839	–
	충청남도	1기	131,678	3,259	47,853	80,566	–	19,833	915	8,236	10,682	–	17,500	519	5,813	11,168	–
		2기	141,713	11,311	50,795	79,607	–	17,761	771	6,931	10,059	–	15,820	555	5,630	9,635	–
	전라북도	1기	138,464	10,159	49,771	78,534	–	19,320	1,055	7,349	10,916	–	17,181	547	6,908	9,726	–
		2기	132,419	10,698	50,698	71,023	–	16,239	668	6,379	9,192	–	15,196	580	6,030	8,586	–
	전라남도	1기	143,585	12,569	48,363	82,653	–	18,502	929	6,427	11,146	–	15,338	567	5,306	9,465	–
		2기	138,628	11,969	50,436	76,223	–	14,006	756	5,452	7,798	–	14,394	723	5,256	8,415	–
	경상북도	1기	199,975	15,914	77,962	106,099	–	24,133	1,090	10,522	12,521	–	22,591	534	8,767	13,290	–
		2기	208,895	15,856	80,179	112,860	–	21,516	984	9,397	11,135	–	21,782	679	8,743	12,360	–
	경상남도	1기	245,538	17,025	103,025	125,488	–	35,887	1,717	14,858	19,312	–	25,108	730	10,996	13,382	–
		2기	239,507	18,569	100,369	120,569	–	26,096	1,172	13,336	11,588	–	24,587	832	10,489	13,266	–
	제주도	1기	45,924	3,221	15,558	27,145	–	7,793	254	2,472	5,067	–	7,051	242	2,239	4,570	–
		2기	51,623	3,411	19,764	28,448	–	6,488	211	2,311	3,966	–	5,327	149	1,954	3,224	–
	도계	1기	1,877,731	143,622	809,232	924,877	–	274,723	13,775	126,112	134,836	–	219,175	7,127	94,248	117,800	–
		2기	1,906,150	152,140	835,539	918,471	–	240,477	11,262	121,296	107,919	–	210,493	7,862	92,585	110,046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국민연금을 활용한 뉴딜적 종합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정부부처 간에 입장 표명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져 일부 네티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선정적인 글들을 게재하거나 유포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첫째, 지금 받는 돈이 대학생 용돈 수준인데 더 내고 고등학생 용돈만큼 받게 한다는 불만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기여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체제하에서는 물론, 제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연금을 지급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형평성 있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처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만 받으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한다는 데 따른 불만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소득보장제도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반환일시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장기 실직자, 저소득 생계곤란자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가입기간 축소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해 노후에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환일시금 제도를 폐지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셋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의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났다는 불신이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04년 10월 말 현재 129조원에 누적수익률 8.19%를 실현하였으며, 그 중 운영수익금이 46조원에 이른다. 세계은행이 2000년 미국, 일본 등 세계 22개국 공적연금의 기금운용실적을 분석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평가에서도 지난 1999년부터 자산운용 부문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한 번 정해진 틀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고 사회환경에 맞추어 부단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우리의 국민연금이 세계 각국에 자랑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년 12월 9일자 한겨레 칼럼

윤우용/국민연금관리공단 언론홍보팀장

重과세만으론 경제 못 살린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어제 회의를 갖고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重)과세 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연내 통과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양도세 중과세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참모들이 한 달 가까이 이견(異見)을 드러내면서 시장 혼선을 키웠던 사안이다. 이 부총리는 중과세 연기를 철회함으로써 리더십과 위상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게 됐다. 경제 운용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경제부총리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음을 보여준 이상 그의 말에 무게를 둘 경제주체는 드물 것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카드로 중과세 연기를 거론했다가 필요성이 없어지자 철회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 부총리를 믿고 집 팔 시점을 늦춘 사람들은 공연히 세금을 더 내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과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 필요보다 투기억제라는 '외눈 원칙'에만 매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는 잡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시기가 있고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이 부총리가 지적한 대로 주택 투기는 진정됐고 거래마저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면 주택시장은 더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마저 있다.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라 보유세는 내버려둬도 오르게 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인하하고 양도세 중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최소한 빙하(氷河) 상태에서는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거둘 행정적 준비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종부세 도입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

2004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 사설

부동산, 규제 풀어도 살 사람 없다면

서울 중랑구, 대전 유성구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11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액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성격은 다르지만 국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애초의 내년 7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를 타개하고자 한다면 재정·금융정책만으로는 힘겨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시장에서 정부측 조치를 부동산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에서 안정기조는 불변이라고 새삼 강조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의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안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다. "양도소득세 인하 효과 때문에 팔 사람은 늘어나겠지만 살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다. 이번 조치가 갖고 있는 허점을 정확히 찌른 셈이다. 사실 부동산 규제완화의 초점은 투기지역이니 과열지구 등의 해제가 아니라 과다하게 오른 취득·등록세나 재산세 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세표준이 내년부터 기준시가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모든 세금의 인상효과는 엄청나다. 그러니 내년부터 집을 사는 사람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고 결국 거래 활성화는 그만큼 더 멀

어질 상황이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실거래가 신고는 모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다. 이중계약서는 매매가격을 거짓 신고하고 결과적으로 탈세에 악용돼 왔다. 이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그러나 실거래가에 따른 세금부담이야말로 정부의 모든 투기억제 정책을 합한 것에 버금가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 적용이라는 완충단계를 마련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2006년 이후로의 유예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04년 12월 24일자 문화일보 사설

확대재정정책 과감히 실시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내년도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성장률이 올해 4.7%보다 낮은 4.0%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반기에 3.7% 치솟는 등 '저성장 고실업'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박승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 점에서도 볼 수 있듯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서민생활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콜금리를 동결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경기부양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는 설명에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은 스스로 전망한 것처럼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금리인하의 당위성 또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은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발표를 봐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나타난다.

특히 통계청과 전경련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나 기업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총체적인 무력감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통계청의 11월 소비자전망 조사를 보면 6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86.6으로 외환위기때보다 더 악화되었다.

매출 6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의 기업체감경기 조사에서도 경기실사지수(BSI)가 78.7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기업들이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훨씬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과감한 조세감면과 재정확대정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비진작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만들어줘 사회전반의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해소시켜주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내년 세계 경제는 긴축정책을 구사하는 중국의 성장률이 8%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가 반짝 회복기미를 보였던 미국과 일본 경제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에 하나 우리 정부가 대책마련에 실기한다면 앞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2004년 12월 10일자 한국경제 사설

연기금 자산운용 다양화 바람직

국내주식 및 해외증권 투자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1백22조원에 달

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나게 돼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자산운용 전략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채권 위주로만 투자하는 지금의 자산운용 패턴이 정말 효율적인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국민연금의 총자산 중 81.8%가 국내채권에 투자되고 있고 또 그 중 3분의 2 가량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편중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투자비율이 유지된다면 그 부작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수익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의 물량은 한정적인데 수요만 크게 늘어나는 까닭이다. 실제 최근 들어선 금리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나아가 금융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과다한 채권투자는 금리를 왜곡시킬 가능성마저 없지 않고, 결과적으로 정부부문이 시중통화를 흡수하는 사태를 낳으면서 소비위축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다.

때문에 국내채권투자 비중을 오는 2009년엔 74.7%로 축소하고, 대신 주식투자 비중을 7.0%에서 10.7%로, 해외증권투자 비중을 2.1%에서 11.7%로 각각 확대하는 등 투자패턴을 대폭 바꾸겠다는 계획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는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늘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수단 다양화가 긍정적 효과만 낳는 것은 결코 아니다.

리스크가 큰 주식 등에 투자했다 엄청난 손실을 볼 경우 연금지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국민노후생활 보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주식매입을 늘릴 경우 기업경영이 국민연금의 입김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주식투자 확대와 병행해 이에 대한 합리적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은 반드시 자체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자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은 물론 금융시장과 기업경영권 문제 등에서도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4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 사설

재정포럼

2005년 1월호 통권 제103호

■발 행 처 / 한국조세연구원
■발 행 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 집 위 원 /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편 집 간 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편집 · 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인 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월간 재정포럼 / 2005년 1월 15일 발행 / 제10권 제1호(통권 제10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7859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E-mail : pub@kipf.re.k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